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12 5·6 vol. 100

칼럼 정치와 관료를 다시 생각하다
초점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KTX민영화와 한미 FTA
사법제대로보기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대법원확정판결에 대하여
법률바로세우기 위치정보보호법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법률창고 한미FTA투자자 국제 분쟁(ISD)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특별기고 MBC,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2/5/6/VOL.100

1	2
3	4

1.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중단 국민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 MBC파업에 동참하는 PD, 기자들이 사내에서 열린 집회에서 환호하고 있다.
3.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008년 촛불 당시 정부 측의 광고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4. 김진숙 지도위원이 월례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CONTENTS

칼럼 정치와 관료를 다시 생각하다 – 공익변호사로 살아가기 _송병춘 2

인사말 신임 회장의 변 _장주영 6

초점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KTX민영화와 한미 FTA _김종우 10
되돌아보는 2008년도 광우병 논란–미국을 위해 자국민과 대립한 정부 _우희종 20

사법 제대로 보기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대법원확정판결에 대하여 _문현웅 42
어떤 집회가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 6294 판결에 대하여 _장종오 52

법률 바로 세우기 위치정보보호법 법률개정안에 관한 의견서 _이혜정 62

시론 한국의 보수, 그리 만만하지 않다 _구영식 65

법률창고 한미FTA 투자자국제분쟁(ISD)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_민변 외교통상위원회 68

특별기고 MBC,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2년간 MBC에서 일어난 일 _강지웅 76

위원회 소개 소수자인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_염형국 96

민변의 활동 김진숙 지도위원과 함께 하는 월례회 _최현오 100
공부 모임, 아름다운 집 – 손석춘. 들녘(2009) _좌세준 126

성명 및 논평 성명/논평 136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표지의 제자는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삽화는 김규정·안세호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치와 관료를 다시 생각하다

- 공익변호사로 살아가기 -

글 _**송병춘** 회원

늦은 나이에 변호사로 개업한 지 7년째, 다행히 법정에 가는 것이 지겨워질만한 시기에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으로 임명되어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2년 가까이 일하고 있다.

변호사 개업 초기에는 사건이 적어 어려웠지만, 주로 교원의 신분 관련 소송에서 변론을 맡았고, 그밖에도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런 저런 사건들에 자문하거나 변론을 맡았다. 교육법과 법교육 학회, 그리고 교육시민단체에도 두루 참여했다. 시민단체의 활동가도 아니었지만 관심 가진 분야에서 일하면서 돈까지 받았으니, 호사를 누린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계파 나눠먹기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진보당이 당내 패권주의와 경선 부정으로 와해 상태에 빠진 것은, 정치활동을 정당이 독점하고 정당 밖에서의 시민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든가 정상적인 정치자금의 흐름까지 틀어막고 있는 공직선거제도의 후진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공직선거 제도의 개혁은 금융개혁, 재벌개혁, 세제개혁 등에 앞서 선결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한동안은 승승장구했지만 법정에서의 변론만으로 풀 수 없는 한계가 금세 느껴졌다. 법원이 소통 불능의 벽처럼 느껴졌다. 특히 2007년경부터 교육관련 소송에서 기득권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한 판례 흐름이 두드러졌다. 교육청에 들어 와서 다시 이러저러한 소송에 말려들면서 역시 법원은 보수기득권 세력의 보루라는 생각이 더욱 절실하게 들었다. 결국 '관건은 정치다'라는 오래 된 화두 앞에 다시 서게 된다.

성장과 복지, 평화 등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할 것인데, 보수기득권 세력은 일자리 없는 성장, 인권 없는 복지, 화해 없는 평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진보개혁 세력과 선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정치세력과 정당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아니, 그런 정치세력이 없다기보다는, 보수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제압할 수 있을 만한 도덕성과 선명한 비전, 정책능력 등을 갖춘 정치세력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고인 물이 썩게 마련이듯이 참신한 정치세력이 정치권에 계속 충원될 수 있는 공직선출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계파 나눠먹기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진보당이 당내 패권주의와 경선 부정으로 와해 상태에 빠진 것은, 정치활동을 정당이 독점하고 정당 밖에서의 시민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든가 정상적인 정치자금의 흐름까지 틀어막고 있는 공직선거제도의 후진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공직선거 제도의 개혁은 금융개혁, 재벌개혁, 세제개혁 등에 앞서 선결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정치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는 관료조직의 개혁이다. 진보개혁 세력이 집권하게 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1조가 표방하듯이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일하게 만들지 못하면 개혁은 물건너가기 때문이다. 흔히 관료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다'거나 '영혼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 관료조직의 주인은 관료들 자신이다. 특히 교육계에서 관료주의의 폐해가 더욱 자심한데, 학교의 주인은 학생·학부모도 아니고 지역 주민도 아니고 오로지 교사 자신들인 것 같다. 교사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아동의 학습활동을 도와주는 보조자에 불과한 데도 말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기관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한다. 관료조직은 기획, 예산 부서와 각 사업부서, 그리고 각 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감사 부서 등으로 구성된다. 즉, 관료조직은 국민의 대표기관을 보조하거나 보좌한다.

교육청에 들어와 관료사회를 보고 가장 심각하게 느낀 문제점은, 돈과 승진만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관료 사회의 '복지부동'이다. 또한 관료사회는 거의 자족적이라고 할 만큼 폐쇄적이고 업자들과의 유착관계도 예상한 대로였다. 성실, 근면, 공정과 같은 관료의 미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교직원단체의 활동 역시 신분안정, 처우개선, 업무경감 등 직업적 이기주의에 경도되어 교육감의 학교혁신과 인사에까지 제동을 거는 등 관료조직의 개혁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정당 밖에서의 시민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든가 정상적인 정치자금의 흐름까지 틀어막고 있는 공직선거제도의 후진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공직선거 제도의 개혁은 금융개혁, 재벌개혁, 세제개혁 등에 앞서 선결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수업 시수를 줄여달라면서도 추가 수당을 받으며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고, 잡무를 줄여달라면서도 승진 가산점을 받기 위해 각종 연구학교, 중점학교 등 근무를 선호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체벌을 금지하고, 두발, 복장 등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학생인권조례를 맹렬히 비난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교권 추락'만을 한탄하는 언동은 또 어찌 볼 것인가. 무려 교사의 70% 정도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

진보교육감의 교육개혁 의지는 학교혁신 지원 사업으로 집약된다. 그러나 교육청의 각 사업 부서에는 일상적으로 해 오던 기존 사업들이 있고, 사업 관행들이 있어 새로운 사업이 끼어들거나 기존 사업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려면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인력과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고, 기존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인력과 예산을 짜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로운 사업을 기획, 집행하게 되더라도 관료들이 복지부동하거나 관행적 사업 방식을 고수

한다면,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시설공사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시민참여형 현장실사단을 구성했지만, 위촉된 외부위원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형식적으로 실사를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관료에게는 영혼이 없다, 봉급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라는 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맞는 말이 아닐까 한다.

사실 선출된 기관장이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관료조직은 잘 돌아간다. 관료조직의 꽃은 각 부서의 장이라고 할 것인데, 국·실장, 과장들은 사업의 기획과 집행 단계에서 막강한 전결권을 위임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감사관은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결과 징계 이외의 행·재정적 처분을 전결로 처리한다. 교육복지특별지사업의 경우 교육복지담당관은 대상학교의 선정, 예산 배분, 실무 연수, 평가 등을 직접 수행한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서 100억 원 이상은 국장이, 100억 원 미만은 학교지원과장이 허가 여부를 전결로 처리하며, 과장이 기본재산 관리 실태를 조사, 지도·감독한다. 계약관리에 있어서 추정가격 20억 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는 국장이, 20억 원 이하는 과장이 전결로 처리한다.

따라서 관료들의 재량권 행사에 치명적 이해관계가 걸린 업자들은 치열한 로비를 하게 마련이고, 오랜 기간 이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는 대를 물려 이어지게 된다. 특히 계층제, 승진서열제가 잘 정비된 관료조직은 업계, 정계와 연결되어 관료마피아를 형성하게 된다.

관료들의 재량권 행사에 치명적 이해관계가 걸린 업자들은 치열한 로비를 하게 마련이고, 오랜 기간 이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는 대를 물려 이어지게 된다. 특히 계층제, 승진서열제가 잘 정비된 관료조직은 업계, 정계와 연결되어 관료마피아를 형성하게 된다.

물론 권력은 관료조직이 아니라 투표함에서 나온다. 대의제를 대체할 정치체제는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대의제의 역설이다.(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력도 있다. 사법권력!)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도 로비의 대상이 된다. 의원들이 업계와 관료 마피아를 연결시켜 주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다. 특히 예산 편성 시에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끼워 넣기'가 관행화되어 있고, 인사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관료사회의 복지부동은 조직의 폐쇄성에서 비롯된다. 입직해서 정년을 마칠 때까지 신분이 보장되며, 근속 연수와 상급자가 주는 근무평정에 따라 승진 서열이 결정된다. 힘 있는 보직에 있을 때 주변 동료들을 잘 보살펴주고, 상급자에게 충성하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다. 승진 경쟁은 조직 내부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관료조직의 근간은 정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워져야 안정성과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료조직이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기존의 관료조직 외부에서 끊임없이 참신한 전문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사회의 전문가들과 경쟁하면서 분발하도록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다.

교직사회도 마찬가지다.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공모제 교장이 될 수 있어야 하며, 교원임용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곧장 정년을 보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계약제 교장, 계약제 교원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제도적 제약이 있긴 하지만 관료조직의 개방은 기관장 또는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물론 비서관 등의 보좌진과는 달리 사업부서의 국·실장이나 과장급을 외부인사로 채용하려면 위험부담이 따른다(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많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공직에 진출하였지만, 진출 분야는 비서 등 대부분 보좌진이었다. 보좌진은 관료들을 움직이는 데 훨씬 용이한 위치에 있지만, 사업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시민사회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행정 경험이 없는 외부인사가 일상적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실책을 범할 수 있고, 관료조직을 장악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드인사'라는 보수언론의 비난 앞에서 선출직 기관장들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관료조직에 거의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보다 과감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인력풀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데, 시민사회운동의 확장과 민관거버넌스 구축의 경험이 쌓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분야에 구성되는 시민참여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이 바로 그것인데, 여태껏 장식품처럼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정책의제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사업을 기획, 집행하고, 평가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료와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물론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전문가집단 역시 업계의 로비 통로로 쓰일 수 있으므로 업계의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NPO 소속 전문가집단에 한정한다든가, 취업이나 용역 업무의 수주를 제한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다.

관료조직이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기존의 관료조직 외부에서 끊임없이 참신한 전문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사회의 전문가들과 경쟁하면서 분발하도록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학자, 교수 등이 거버넌스 참여 전문가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들이 큰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외부인사가 인사위원회, 소청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일상적인 업무에 참여하는 것 외에 20여개의 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거의 모든 정책사업 분야에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고, 대학교수, 예술가, 언론인, 전문직 종사자, 현장 교사들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물론 전문직 종사자 중에는 변호사들이 많다.

교육청 관료조직 내에도 이미 3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계약직이고 2명은 공무원 아닌 계약직으로서 팀장급 사무관, 장학관 아래 배속되어 있다. 앞으로는 변호사도 상당한 경력이 없으면, 초임 시부터 관리·감독적 사무나 직위를 받기 어렵다고 본다.

민변은 나에게 공익변호사로서의 활동에 근거지가 되어 주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 당시에는 물론이고, 특히 교육청에 들어온 이후로 동료 변호사들과 더 폭 넓게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민변 회원들이 법정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변호하는 데 머물렀다면 이제는 시민단체에서, 정부기관·자치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장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로스쿨 교수들을 중심으로 공익변호사의 양성과 사회 진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다. 민변이 앞으로도 공익변호사의 요람이자 공익법 활동의 근거지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신임 회장의 변

글 _**장주영** 회원

회장 출마 결심

변호사를 개업한 해에 민변에 가입하고 21년이 지났다. 그 동안 민변이 의뢰한 시국사건 변론, 악법 개폐 작업, 정보기구 개혁 활동 등에 참여하였다. 미국 유학을 갔다 온 후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을 거쳐, 사무총장,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민변이 하라는 일은 꾸준히 맡았고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대과 없이 임무를 수행해 온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내가 민변으로부터 받은 자극과 혜택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느낀다. 선배 회원들로부터 지도와 격려, 질책을 받으면서 분발하였고 개혁방향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벌이면서 개인적으로나 법률전문가로서 단련되고 성장한 것 같다.

회장 출마를 권유받고 고민했다. 평소 민변 회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장직을 맡아야 할 상황이 되면 피할 생각은 없었다. 회장직을 권유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으나 나의 부족한 자질과 능력이 감당할 수 있을 지 우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배운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거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민변을 둘러싼 상황 변화

일단 회장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이상 회장 후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일 것이다. 차기 집행부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2012년은 로스쿨 1기생과 사법연수생들이 함께 배출되면서 대량의 법조인들이 사회에 진출한 첫 해이다. 민변에도 100명이 넘는 신입회원들이 가입하였고 앞으로 신입회원들의 숫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젊은 회원들을 민변의 후속세대로 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그동안 민변을 이끌어온 창립세대의 시대를 이어서 창립 이후에 가입한 세대가 민변의 지도부가 된다면 과거 선배들이 세운 훌륭한 전통을 후배들에게 충실히 계승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외부적인 상황 변화로는 4월에 있었던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연말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있다. 아쉽게도 지난 총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이 국민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18대 국회에 비해 의석수가 증가함으로써 지금과는 다른 입법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법과 제도에 담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연말 대선결과에 따라서 민변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변의 활동 방향

차기 집행부가 직면하게 된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민변의 운영 및 활동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워보았다.

첫째, 민변의 전통적인 시국사건 변론경험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탄압받는 사회적인 약자와 시민들을 위한 변론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야겠다. 표현의 자유 기금과 공익소송 기금을 활용하여 공익변론 및 공익소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과 접촉을 늘려나가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단체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민생개혁, 법조개혁에 도움이 되는 법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두뇌집단(think tank)이자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추진력 있는 단체가 되어야겠다. 민변에게는 전문가단체의 특성상 단순히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

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셋째, 시국사건 변론과 개혁추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민변 회원들의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존 회원들에 대한 변호사 연수와 신입회원 연수를 충실히 시행함으로써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야겠다. 이 과정에서 선배 회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충실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젊은 회원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법조 직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 민변이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사무실 운영, 변론 기술, 향후 진로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신입회원들이 급증하는 현실은 조직 운영상 부담이 되는 면도 있지만 진보적 법률가들의 토대를 튼튼히 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 신입 회원들이 변호사로서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이들이 민변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차기 집행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다.

넷째, 본부 회원은 물론 지부 회원과도 늘 소통하고 함께 하는 집행부가 되어야겠다. 회원수가 늘어나고 조직이 커지면서 다양한 요구가 분출될 수 있는 만큼 열린 자세로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변 활동이 늘어나면서 재정 상태에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 민변의 역량에 비해 과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유념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고려해야겠다. 가급적 민변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과 잘 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주력할 필요가 있다. 민변은 그동안 순수하게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만으로 운영해왔고 독립성이 조금이라도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의심되는 외부 지원은 일체 받지 않았다. 재정의 독립성이 외부의 간섭이나 공격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해온 원동력이었음에 틀림없다. 회원들이 증가하고 사업도 다양하게 펼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재정운용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 그러나 민변이 외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민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독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전제임은 분명하다.

민변의 조직운영과 활동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임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민변 발전 전략 보고서'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차기 집행부는 위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실현가능한 부분을 취사선택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회장 선출 및 다짐

정기총회에서 개표결과 회장에 당선되었다. 부회장과 사무총장,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았고 사무차장 임명보고를 하였다. 민변이 그 동안 펼친 시국 사건 변론, 악법 개폐 작업, 공안 탄압 기구 개혁 활동을 지속해나가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여러 민생개혁 과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다. 민변은 전문가단체로서 회원의 활동과 참여가 모여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끌어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요청하였다. 차기 집행부는 참여와 소통의 민변을 만들어 회원과 함께 인권 옹호와 민주사회 건설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김선수 회장과 전직 임원들께도 감사드렸다.

인사말을 마치면서 정연순 총장은 임기가 3시간 남아서 기쁘다고 했는데 나는 임기가 2년이 남아서 기쁘다고 말했다. 아마도 민변 회장이 된 것이 기쁜 일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민변활동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온 회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대규모 단체로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조직운영의 어려움과 내부 역량 부족으로 민변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느끼는 한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실제 기쁘다기보다는 설령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농담처럼 한 말이었다. 회원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헤쳐 나갈 생각이다.

[초점1]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KTX민영화와 한미 FTA

글 _김종우 회원

최근 지하철9호선이 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공고하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동시에 지하철9호선은 서울시를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지하철9호선의 운임 인상 공고

△지하철9호선의 사과 표명

1. 서론

최근 지하철9호선이 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공고하면서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철도법 및 민간투자법에 의거, 협상 없는 요금인상은 불법이라며 시정조치를 하였고, 지하철9호선의 사장은 사과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지하철9호선은 서울시를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 사업을 인수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방식 전반에 대한 우려가 벌써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과 함께, KTX민영화로 상징되는 공공부문 민영화의 위험성 우려, 그리고 그 위험성을 한미 FTA, 특히 투자자-국가 강제중재제도(ISD)가 증폭시킨다는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2. 지하철9호선의 문제점과 그 해결

가. 지하철9호선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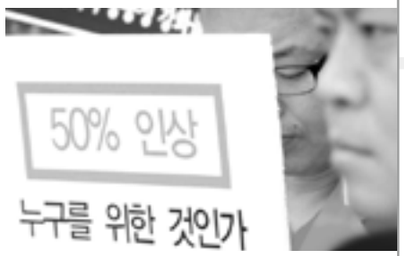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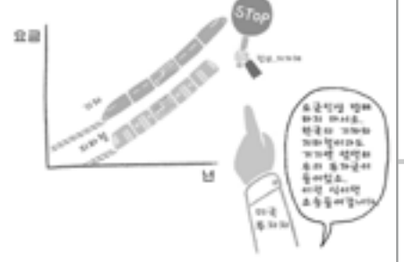

지하철9호선은 적자가 지속되어 자본잠식상태까지 이르고 있으므로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요금을 징수하여 그 돈으로 지하철을 운영하는 사업의 성격상 적자 누적은 치명적이고, 시민사회의 관심은 지하철9호선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하다면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적자 원인의 99%가 이자비용이라는 점(지하철9호선의 2011년 손익현황에서 이자비용 461억 원, 당기순손실 466억 원), 그 이자는 투자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고리(15%)로 돈을 빌리고 지급하는 '자기착취'의 산물이라는 점(후순위채권이기에 고리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최소운영수입 보장약정이 있으므로 사실상은 물론이고 법리상으로도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0%이므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을 알게 된다면, 이렇게 좋은 투자처에 미처 돈을 빌려주지 못한 시민들은 분노를 참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위 선진금융기법(맥쿼리는 이를 '정부의 수입보장과 자본보장이 되는 매력적인 자산포트폴리오'라고 광고하고 있다)에 의한 기형적인 수

지하철9호선은 적자가 지속되어 자본잠식상태까지 이르고 있으므로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탈적 상황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만 적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자. 설사 사정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요금 인상은 쉽게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하철은 공공운송수단이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적자를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의 재분배기능을 통하여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 사회적 강자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무임승차손실 지원금으로 2011년에도 30억 원 이상 지하철 9호선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하철과 같은 공공부문 사업이 단지 효율성의 논리만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좋은 사회적 의미가 있더라도 공기업이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 지하철9호선 분쟁의 해결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사회적 의미가 있더라도 공기업이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정으로 인하여 손해나 손실을 입게 되면 이는 당연히 권리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하철9호선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비난을 할 일은 아니다. 다만 이것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개입하게 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위험, 즉 공공부문 민영화의 위험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다만 현재의 행정소송이라는 분쟁해결의 형식은 공공성 확보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이제 법원은 취소소송을 심리하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지하철 9호선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시민사회는 지하철 9호선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여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고, 검찰은 부정부패나 배임여부를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며, 학자들은 간과되어온 SOC 사업에 대한 민간참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여러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러한 법원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법원에 의한 공공부문 공공성 확보의 2차적 안전망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다.

여러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러한 법원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다. 용인경전철 사건과 중재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와 경전철 사업 계약을 맺고, 분쟁에 대해서는 ICC(프랑스 파리에 있는 상사중재기관)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다. 이 사업의 경우도 잘못된 수요예측에 기반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조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용인시는 용인경전철과의 계약을 해지한다. 이에 용인경전철은 용인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고, ICC 중재판정부는 공사대금에 대한 일부판단으로 5천억 원을 용인시가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후속 중재판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2조 5천억 원의 손해배상 판정이 나올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적당한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중재에 의한 SOC 사업의 분쟁해결과정(특히 외국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서는 시민사회의 여론전, 검찰의 공소제기 등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 이보다 더욱 난처한 것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사익간의 비교형량으로 나름 정교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분쟁을 해결해 온 법원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점이다. 이는 공사익 형량의 관점이 배제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2차적인 안전망마저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라. 소결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할 공공부문에 효율성 보완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사업자가 개입하게 되면 결국 공공성의 후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다만 민간자본이 투입된 공공사업의 경우에 법원이 분쟁해결의 주체로 개입하는 경우 공공성 확보의 2차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재 형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되면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하철9호선 사례를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과연 민영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홍보자료

△시민사회의 KTX민영화 반대(참세상 자료사진)

3. 공공부문 민영화와 한미 FTA

가. 공기업 민영화 추진

민영화란 공기업을 사기업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전력, 한국통신, 철도공사 등이 이미 주식회사로 변환되어 민영화되었거나 민영화를 예정하고 있다. 민영화 추진의 근거는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이론일 것이다. 이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용을 창출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지하철9호선 사업은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시행하도록 나누어 준 것으로 넓은 의미의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하철9호선 사례를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과연 민영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해 반대가 심한 이유는, 물론 효율성조차도 각종 수탈적 투자의 우려로 목표달성이 요원해 보이지만, 효율성 원리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공공부문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외딴 시골집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손해만 보는 것이므로 전기공급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기사업 운용일 것이다. 계약자유의 원칙 중 계약체결 '거부'자유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은 굳이 논증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공동체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역무제공의무를 부과한다. 사회적 의무를 부과한 만큼, 적자 발생은 제도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고, 이는 정부의 각종 지원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든 것은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사회적 타협을 확인한 것이다.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명성, 공개성이 생명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고민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반영하여 국회가 입법으로 타협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명성, 공개성이 생명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나. KTX민영화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KTX 제2사업자 도입으로 요금이 15,000원이 인하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가장 긴 거리인 서울-부산 주말노선 요금이 57,300원이므로 약 26% 요금인하가 된다. 이게 가능하다는 계산의 전제는 아마도 비정규직화, 인력감축 등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들이 기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점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서도, 과연 정부의 홍보처럼 얻을 것은 오직 국민의 이익뿐이므로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인가?

이미 시민사회와 언론들은 정부의 KTX 제2사업자 도입 사업 홍보 내용이 왜곡 과장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 발표, 간담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이는 투명성, 공개성과는 거리가 있는 태도이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장애가 된다. 정부는 KTX 제2사업자 도입에 대한 비판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데, 설사 사실을 오인한 비판이 일부 있더라도 이는 정부의 비공개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KTX 제2사업자 도입 사업은 기반사업(철도설비)은 정부가 담당하고 운영사업(열차운행)만 민간이 담당하는 사업구조이므로 시설투자비를 운영비로 회수하여야 하는 지하철9호선과는 구조가 다르고, 따라서 이른바 선진금융기법의 위험성이 조금은 덜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결국 KTX 운영사업을 민간이 담당하게 되므로 이는 또다른 유형의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공공부문 민영화 일반의 비판 지점과 다를 바가 없다.

'효율성'만을 목표로 하여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것은 결국 공공사업의 '공공성'을 희생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 민영화는 가벼이 추진할 것이 아니다. 단지 '효율성'만을 목표로 하여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것은 결국 공공사업의 '공공성'을 희생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공공부문의 효율성 추구는 보다 폭넓은 공공성 확보 목적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단으로 인하여 목적이 훼손되는 역설적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민영화를 하더라도 2차적 안전망으로 법원의 공공성 확보 보완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다. 한미 FTA와 민영화

한미 FTA는 투자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각종 공공부문에 대하여도 미국의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민영화를 하지 않는 이상 투자할 도리가 없으나, 민영화가 되는 순간 미국인의 투자를 막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꾸준히 민영화를 요구받아왔고, 민영화가 되면 외국인이 주식시장을 통하여 한국의 과거 공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건전한 투자보다는 수탈적 투자로 연결되어 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개별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공공부문에 미국인이 투자하게 되는 경우 일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자.

미국인 투자자는 한미 FTA로 인하여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투자자-국가 강제중재제도(ISD)이다. 용인경전철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중재는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이다. 그런데 한미 FTA는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의 위법(투자계약 위반이나 한미 FTA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면 중재를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가 된다.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미국인 투자자가 KTX 제2사업자의 주식 단 한 주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지하철9호선 사건에서 정부는 지하철9호선의 미국인 투자자가 현재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국가 강제중재제도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는 만약 그 미국인이 계속 주주의 지위를 유지했다면 투자자-국가 강제중재제도가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능성은 곧 위험성이고, 이는 중재 형식의 위험성(법원의 기능 약화로 인한 2차적 안전망 붕괴)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이미 검토한 바 있다.

그런데 실제 더 큰 위험성은 공공부문의 공공성 후퇴에 있다. 정부는 투자자-국가 강제중재제도의 중재신청 위험성이 사실상 크지 않다고 홍보한다. 실제 통계를 보면 투자중재를 통하여 판정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중재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을 극도로 축소하게 될 위험성이다. 중재신청의 위험성은 작을지 몰라도, '패소'는 차치하고 '피소' 자체에 대한 걱정에 따라 공공부문의 정책 후퇴의 위험성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효율성'만을 목표로 하여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것은 결국 공공사업의 '공공성'을 희생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더구나 한미 FTA의 래칫조항에 의해 한 번 낮추어진 공공부문의 공공성 확보 수준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민영화된 공기업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대책이 될 것이다. 투자자가 투자수익을 확보하는데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투자자-국가 강제중재제도에 회부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지하철9호선의 최후대책으로 거론되는 서울시의 사업권 인수 방안도 과거처럼 쉽지는 않고, 투자자-국가 강제중재제도의 중재신청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치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 소결

공공부문에의 민간자본 참여는 효율성 담보는 커녕 공공성의 후퇴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기업 민영화도 이와 동일한 공공성의 후퇴가 예상된다. 이러한 공공성의 후퇴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강제중재제도로 인하여 2차적 안전망인 법원 개입 차단으로 보완이 어렵고, 더 위험하게는 정부 스스로 투자자-국가 강제중재제도 의식과 래칫 조항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공공부문 공공성의 완전한 후퇴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 더 큰 위험성은 공공부문의 공공성 후퇴에 있다. 통계를 보면 투자중재를 통하여 판정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중재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을 극도로 축소하게 될 위험성이다.

4. 결론

한미 FTA가 규범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이상, 결국 공공성의 후퇴를 막기 위한 수단은 공공부문 민영화 '자체'의 저지라는 가장 어렵지만 문제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 집중되어야 한다. 우리가 공적 관심사를 해결해온 과거의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식들은 민영화와 한미 FTA의 화학적 결합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작동할 수 있을지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지 못하면 어렵고 복잡한 길을 돌아가야 다시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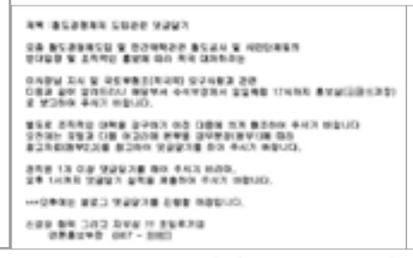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 지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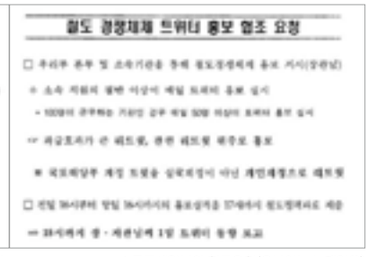

△국토해양부의 협조요청(오마이뉴스 재인용)

5. 전망

한미 FTA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선해하면, 체질개량을 통해 부강한 나라가 되자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낮은 차원에서는 선진금융기법으로, 높은 차원에서는 국제통상규범으로 여러번 당하다보면 대응력이 높아지고, 이렇게 키운 맷집으로 투자강국, 통상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장한 비전인지도 모르겠다.

당한만큼 되갚아주자는 구상이 올바른 방향인지도 의심스럽지만, 이보다 더 큰 걱정은 그 폐쇄성과 비밀주의다.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나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개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부터 투명성과 공개성 원칙을 지켜왔다면 한미 FTA 협정문 번역 오류라는 치욕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엘리트주의의 연장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처럼 전문성과 헌신성이 높은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21세기는 더 이상 과거의 엘리트 공무원주의에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 KTX 제2사업자 도입은 요금 15,000원 인하를 의미할 뿐이라는 식의 수준 낮은 설명, 그 뛰어난 공무원들을 동원한 댓글달기/리트윗 강요와 같은 여론조작으로 누구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정부를 지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투명성과 공개성 원칙을 지키고, 시민사회의 비판을 수렴하며 동반자로 생각할 때 진정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한 나라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일 것이다.

정부가 투명성과 공개성 원칙을 지키고, 시민사회의 비판을 수렴하며 동반자로 생각할 때 진정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되돌아보는 2008년도 광우병 논란

- 미국을 위해 자국민과 대립한 정부

글 _**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교수

남의 이야기로 들려오던 저 먼 유럽에서의 광우병이란 용어가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군 것은 지난 2008년도다.

1. 들어가며

그저 남의 이야기로 들려오던 저 먼 유럽에서의 광우병이란 용어가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군 것은 지난 2008년도다. 이제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인이 아니라면 생물학이나 의학 분야에서도 지극히 일부 전문가들에게나 관심의 대상이던 이 질병이 한국민이면 누구나 들어 본 질병이 되었다. 광우병의 원인체인 프리온은 기존 멸균 조건에서도 병원성이 유지되는 특수 단백질이어서 초기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과 검증과정이 필요했다. 특히 이 질병이 인간광우병(vCJD)을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반인의 우려는 극대화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99% 발생을 감소시킬 정도로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기에 그렇게 위험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단지 이 특이한 질병이 우리에게 그렇게 문제된 것은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를 수입 하는 상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8년도 당시 촛불사태로 지칭되는 백만이 넘는 시민들의 시위가 질병 및 환경 위험에 대한 불안 및 우려로 인해 시작된 것은 확실하지만, 단순과학

논란이었다면 공공사안에 대한 무관심과 비참여로 규정되는 후기 산업사회의 시민들에게 그만한 동원력을 유도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직도 당시의 논란이 과학의 문제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당시 사태를 이해하는 데에는 과학 외의 고려해야할 많은 요인들이 있다.

국가 간의 쇠고기 수출입은 1980년대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 식품 위생의 과학적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WTO 체제 속의 통상과 경제라는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겪은 혼란스러움은 과학 자체보다는 그러한 양 측면이 교차하면서 발생했던 복합적이자 총체적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사회를 분열과 갈등을 불러왔던 당시 상황에 있어서 과학적 진실과 바른 국제 기준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해 졌고, 그 외의 정치경제적 상황 역시, 지난 해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http://wikileaks.org)를 통해 공개된 미국 비밀외교문서에 의해 밝혀졌다.

2008년도 현 정권의 집권 초기에 보여준 쇠고기 협상 졸속 타결은 한미 FTA 체결의 선결 조건이라는 명분으로 쇠고기 수입 타결을 강력히 주장했던 미국에 대하여 보여준, 당시 새로이 정권을 인수한 정부의 애정 어린 몸짓이었다. 신자유주의 신봉자로서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한미 FTA를 통한 국익창출이라는 커다란 그림 속에서 정권 출발 전부터 미국 요구를 전폭 수용하기로 결심하고 있었고, 이를 2008년 4월 9일의 총선 결과에 영향 없도록 4월 9일 이후, 그러나 캠프데이비스 방문 예정의 4월 15일 이전이라는 구체적 제안과 함께 미국 측에 이미 통보를 끝낸 상황이었다. 따라서 집권하자마자 전문가 회의도 없이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이 급속히 타결된 것은 현 정권의 초기구상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그 결과 미국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지나친 양보가 이루어졌고, 국민의 식품 안전은 물론 수입하는 측이 당연히 확보해야

2008년도 현 정권의 집권 초기에 보여준 쇠고기 협상 졸속 타결은 한미 FTA 체결의 선결 조건이라는 명분으로 쇠고기 수입 타결을 강력히 주장했던 미국에 대하여 보여준, 당시 새로이 정권을 인수한 정부의 애정 어린 몸짓이었다.

할 검역에서의 주체적 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굴욕적 수입조건으로 협상은 마무리되었다. 이미 정부 스스로도 예상하고 있었던 국민 저항에 부딪혔을 때 현 정권은 단순한 소통 부재의 차원을 넘어 의도적인 진실 왜곡과 강압적 국민 탄압을 시도하였다. 식품안전성은 무시된 채 정치경제적 측면만으로 이미 타결해버린 내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생정부는 총체적 노력을 기울인다,

한편, 이 과정에서 언론계, 과학계, 검찰은 물론 사법부마저 신생정권과의 유착이라는 퇴행적 모습을 보여준 것은 훗날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조중동이라고 하는 주류 언론사들은 사회의 공기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포기한 채 과학적 사실 왜곡을 위한 정부의 대국민 세뇌기구로 전락했고, 국내 학계는 정부의 국내과학연구에 대한 폄훼와 과학적 사실 왜곡 시도에 대하여 정확한 과학의 제시는커녕 정부의 잘못된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기에 급급했던 허울 좋은 정부 측 전문가에 대하여 아무 지적도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고, 검찰은 PD수첩이라는 일반인 대상 방송에서 사용된 어휘와 표현에 대하여 전문학술회의 수준의 잣대를 들이대며 법정 싸움을 진행할 정도로 의도적이었다. 심지어 사법부에서는 재판의 독립성마저 훼손시킨 판사가 등장하고,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위헌 소송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마저 충분한 절차도 생략한 채 결론을 내리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

이제 만 4년의 시간이 경과되면서 신생권력 집단에 의한 이러한 총체적이자 퇴행적 행태는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과정 중에 국론 분열과 더불어 우리사회에 극단적 대립과 갈등을 보다 흔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하였고, 특히 정당한 주장을 하며 촛불을 든 무고한 일반 시민을 범법자로 만든 것은 국민에게 상처로 남아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각 분야별로 언급하자면 몇 권의 책이 나오겠지만 본 글에서는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고 상황의 본질을 무엇인지 간략히 요약하고자 한다.

결론을 남긴다면 2008년도 미국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혼란은 결코 광우병 과학 논쟁이 아니라 단지 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조건의 문제'이며, 이같이 혼란스러워진 것은 국민의 안전이 배제된 채 정치경제적 이유로 타결한 미국과의 졸속 협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적 행태로 야기된 상황이고, 이 과정 중에 무고한 국민만이 희생된 것이다. 이는 '국가 권력의 맹목적 신념이야말로 진실을 막는 가장 큰 적이다.(Blind Belief in Authority is the Greatest Enemy of Truth)'라는 아인슈타인의 말로 요약된다.

정부 스스로도 예상하고 있었던 국민 저항에 부딪혔을 때 현 정권은 단순한 소통 부재의 차원을 넘어 의도적인 진실 왜곡과 강압적 국민 탄압을 시도하였다.

2. 미국쇠고기 수입과 사회 혼란

1) 경과 요약

2003년 12월 미국 워싱턴 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었고 한국 정부는 즉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후 미국은 수입재개를 위한 끊임없는 협상 노력을 기울여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수차례의 미국 쇠고기 관련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2005년도에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됨으로서 쇠고기 금수는 유지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FTA 협상을 위한 4개 선결 조건 중의 하나로써 미국산 쇠고기 금수 해제를 끈질기게 요구했고, 2006년 3월 미국에서의 세 번째 광우병 소가 보고되었으나 같은 해 6월 한미 FTA 1차 본 협상 개시되는 흐름 속에 8월 미국 상원의원 30여명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쇠고기 수입 경고 서한까지 보낸다. 같은 해 9월 6일 제 3차 한미 FTA 협상이 개시되었고 이틀 후인 9월 8일 한국의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최종 승인하게 된다.

그 후 수입 쇠고기 중에 뼛조각, 다이옥신 등이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면서 수입은 일시 중단되었으나 2007년 5월에 갈비뼈, 8월에는 광우병 위험 물질인 SRM에 해당되는 척추 뼈마저 발견되면서 검역 중단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검역 중단 발표 다음날 즉시 한국정부에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요청하였다. 농림부는 3주 후인 2007년 8월 말에 미국 쇠고기 검역중단을 다시 해제하고 수입 재개를 발표하게 되나, 9월과 10월에 다시 검역 중에 등뼈 등이 발견되면서 검역을 중단하여 미국쇠고기 수입을 차단하게 된다.

한편 미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 획득을 빌미로 끊임없이 개방 요구를 하였으나 2007년 당시 농림부 축산국 당국자는 "협의 과정에서 뼈 수입 조건에는 변화가 있더라도, 연령 제한은 '마지노선'인 만큼 폐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고, 이는 본인도 참석했던 참여정부의 최종 전문가 회의에서 재확인되었던 내용이었다.

그러나 2007년 12월에 있었던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미국 USTR의 Schwab 대표는 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30개월 미만 뼈있는 쇠고기, 모든 연령의 살코기, 특정위험물질(SRM)은 OIE 수준으로 수입을 개시하는 수입위생조건 입법예고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김종훈 통상본부장은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발표만으로 OIE 수준의 완전수용도 어려우며, 처음부터 살코기 연령제한 철폐는 수용 불가함'을 밝혀 협상 타결이 결렬되었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을 위한 4개 선결 조건 중의 하나로써 미국산 쇠고기 금수 해제를 끈질기게 요구했고, 미국에서의 세 번째 광우병 소가 보고되었으나 한국의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최종 승인하게 된다.

2) 정권 교체와 입장 변화

연령제한 철폐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던 정부는 2008년 정권이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쇠고기 수입협상 내용이 미국의 요구조건을 전면 수용하는 것으로 타결되었고, 이에 따라 그동안의 국내 전문가 회의 결과 및 내장을 식용하는 한국인의 식생활 문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던 김종훈 통상본부장과 농림부 축산공무원들의 입장도 서너 달 만에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 미국 요구는 과학적이고 국제기준에 부응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게 된다.

또한 노무현 정부 때 미국쇠고기에서 뼛조각만 발견되어도 수입중단을 요구했던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주류언론 역시 2008년도 초의 정권 교체에 따라 그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 정부와 미국의 요구조건은 무조건 옳다는 주장을 함으로서 2008년도 봄, 많은 국민이 느낀 혼란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2008년도 촛불을 든 국민 저항으로 인해 열린 국회 청문회 등에서 이명박 정부의 수입타결 조건이 타당하다고 강변하던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던 몇 달 전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 한나라당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SRM 등 뼛조각이 검출된 것은 한국 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하며, 미국에 시정요구 등 금수조치를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생략) 박순자 여성위원장도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할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 2007년 8월 3일 한나라당 인터넷뉴스팀

광우병과 관련하여 정부 측 전문가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본인 역시 2007년도에 야당인 한나라당 측 증인으로 국회에 참석하여 뼛조각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수입쇠고기에 그런 이물질의 오염이 있다는 것은 도축 처리 과정에서 SRM의 유입이 가능함을 암시하는 것이기에 수입자 측에서는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방역이나 검역과정 중에 질병 확산 방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입각한 것이었다.

2008년도 봄, 이렇게 정부나 여당, 그리고 주요 언론사들은 몇 달 만에 새로운 미국쇠고기 협상타결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협상은 과학과 국제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포장하면서 완전히 뒤바뀐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학과 국제기준이란 것이 서너 달 만에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기에 국민들의 혼란은 극대화 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정부 주장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수입조건에 대한 과학적 사실 논란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학적 내용에 근거한 국제기준만 밝히면 될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은 상기한 바와 같이 정부의 의도적인 정치적 대응으로 인해 과학의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3) 혼란의 형태와 내용

2008년도 봄의 혼란을 유도시킨 정부 주장의 왜곡은 정리해 보면 정부가 국제기준이라고 주장한 OIE 규정에 대한 왜곡, 검역에 중요한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대한 왜곡, 과학(science)과 연구(research)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라고 크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적 왜곡을 포장하기 위한 정부의 괴담 수준인 거짓 발언이 이어진다.

가. OIE 규정에 대한 왜곡

OIE는 자유무역을 위한 국제기구가 아니라, 교역을 통한 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로써 통상 중의 생길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0여 모든 회원국이 지켜야 ‘최소필요조건’으로서의 권고 규정이 있다. 미국과 한국정부는 이 통상 권고 규정만이 국제 기준이자 충분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OIE가 광우병 발생 상황이 매우 다양한 여러 회원국의 실제 상황을 다 파악하고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통상에 있어서 모든 회원국이 공통적으로 지킬 기본적인 내용을 권고한 것일 뿐 실제 교역 상황에서는 각 교역국의 특성(customs and cultural practices)을 고려해서 질병 확산 방지의 ‘충분조건’으로 협상 타결할 것을 OIE Article 2.1.4에 명기해 놓고 있다.

다시 말하면 2008년도에 정부는 내장 섭취의 국민 식생활 관습 등을 무시하고 OIE의 반쪽 규정만을 충분조건이라고 속인 셈이다. 이는 최근 ‘OIE 조건은 권고사항일 뿐 최종 수입위생조건은 당사국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힌 베르나드 발라 OIE 사무총장의 입장 표명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두 나라가 서로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면 그것이 OIE 규정과 다르더라도 서로가 만족한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2012. 5. 1. MBC 뉴스, 박상권 파리 특파원)."라고 밝히고 있다.

2008년도 당시 식품안전은 보장되지 않고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졸속 협상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정부는 언제나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당시 식품안전은 보장되지 않고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졸속 협상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나 김종훈 통상본부장을 포함하여 정부는 언제나 'OIE 기준은 국제기준이기에 그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OIE 회원국으로서 OIE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그러나 미국도 자국 업체에 OIE 기준만이 아니라 자국 내의 규제도 동시에 고려하고 지시를(The agency should reference both OIE guidelines and US regulations in determining internal classifications of BSE status - Docket No. 04 - 021 A NPR, USDA)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국제프리온 학회에서 만난, EU의 과학기준을 설정하는 EFSA(BIOHAZ)의 상급과학관인 Dr. Goossens에게 OIE와 EU의 SRM 규정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직접 질문했을 때, 그는 즉시 'EU의 기준은 과학적인 것이고, OIE는 국제간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라고 명쾌히 답변했다. 실제적으로 광우병 발생의 99% 감소를 미룬 것은 EU의 엄격한 기준과 정책에 의한 것이지 미국이나 정부가 주장한 내용으로 광우병 발생이 통제되었다는 증거는 여전히 그 어디에도 없다.

실제적으로 2003년도 미국 광우병 발생하자 OIE의 규정은 2004년도에 대대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진다. 5개의 광우병 국가 지위가 '광우병 발생이 경미한 나라', '광우병위험 통제국', '광우병 미확인국'의 세 가지 등급으로 변경되었고, SRM 기준도 OIE의 공식 규정에서 사라졌다. 일본도 정식 항의한 이러한 무의미한 개정으로 '광우병위험통제국'이란 단지 광우병 발생국의 의미일 뿐 광우병위험통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그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이는 통제

국 지위 획득 이후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나 최근의 미국 경우에서 잘 볼 수 있다.

당시 오직 허술한 미국기준만이 국제기준이라고 주장한 정부 입장이 편향된 왜곡이었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증명되었다. 주변국은 여전히 우리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수입하고 있으나 정부 주장과는 달리 그 어느 나라도 그 조건 때문에 국가 간의 통상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WTO에 피소되지도 않았다. 알고 보면 오히려 이들 주변국들이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OIE의 권고사항을 잘 준수하는 것이다. 이를 본다면 4년 전 미국쇠고기 전면개방 수입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을 우려한 시민들의 주장이야말로 국제적이고 과학적이었음을 새삼 증명해 준다.

당시 오직 허술한 미국기준만이 국제기준이라고 주장한 정부 입장이 편향된 왜곡이었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증명되었다.

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왜곡

정부의 졸속 협상에 대한 반대 입장은 검역에 적용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에 의거한 과학적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에 호소하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실적 위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전예방 원칙의 입장이란 의도적으로 과장된 것이라고 매도하였다. 벼락 맞을 확률 등을 언급하면서 사전예방 원칙을 폄훼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하지만 구제역 발생 시 발생 농장 주변의 모든 건강한 돼지를 살처분하고, 혹은 국내에서 1985년 이후 소아마비 발생은 보고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폴리오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사례, 또 아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HO에서의 전자파에 의한 뇌질환 가능성 공식 경고등을 생각해 보면 사전예방원칙의 잠재성 위험에 대한 정책이나 정부 입장이 유독 광우병에 있어서만은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우병과 관련해서 심지어 미국은 지금껏 단 한 사례도 없는 정자에 의한 vCJD 전염을 우려해서 불임부부의 인공수정을 위해 해오던 유럽으로부터의

정자수입마저 금지했다.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만에 하나라도 위험을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 이 조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한 미국의 제이콥 마이어(Meyer) 교수는 과학계가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는 과학(regulatory science)에서의 잠재적 위험을 대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또한 한국인들은 잘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중독에 대한 가능성만으로 최근 한국으로부터의 어패류 수입을 중단한 미국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과장된 것이라고 항의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2008년도 당시 미국은 강화시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도 않았고(실시하겠다는 공표만 한 상태), '광우병고위험군'이기에 국제적으로 식용 도축이 금지된 다우너소(기립불능소)도 도축되고 있어서 훗날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개선되었으며, 미국과 동일한 축산 환경의 캐나다에서 여전히 광우병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무책임했던 것인지 말해주고 있다.

미국과 동일한 축산 환경의 캐나다에서 여전히 광우병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무책임했던 것인지 말해주고 있다.

다. 과학과 연구에 대한 의도적 왜곡

우리가 사용하는 과학연구라는 말이 있듯이 과학(science)과 연구(research)는 다른 말이다. 과학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진행되는 부단한 연구' 활동을 통해 발전해 나간다. 따라서 당대의 과학을 이루고 있는 과학적 사실이란 많은 연구를 통해 그 시대의 과학자 집단에서 인정된 결과를 말한다. 한편, 연구란 과학적 사실을 밝히기 위해 과학자 집단 내에서 진행 중인 실험 과정을 말한다.

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 결과는 전문 학술지에 실리는 것이기에 자연과학에서 전문 학술지에 실려 있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 사실은 아니다. 전문 학술지에는 과학적 사실과 더불어 아직 그 내용이 인정되지 못했지만 여러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의 연구 결과가 같이 실려 있다. 과학자 집단에서 인정된 과학적 사실은 교과서에 실릴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라면 모르지만 단지 학술지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마치 그 내용이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일반대중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는 2008년도 협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광우병 실험연구와는 전혀 거리가 있는 이들을 정부 측 전문가로 둔갑시킨 후 오래된 학술지에 있는, 그러나 이미 학계에서 검토되어 별로 의미가 없는, 낡은 내용을 들어 수입조건에 대한 광우병 연구가 여전히 논쟁 중인 것처럼 호도하였다. 광우병 발생을 99% 감소시킨 EU의 기준과 정책의 바탕이 된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오직 미국의 입장에 가까운 것이라면 이미 학계에서 부정된 내용마저 전문학회지에 있다는 것만으로 마치 과학적 사실처럼 일반인들에게 제시했다.

정부가 미국쇠고기의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하버드 위해성 평가'는 이미 그 이후의 연구에 의해 매우 부실함이 규명되었으나 정부는 정부 주장에 맞는 과거 연구결과인 '하버드 위해성 평가'만을 반복해서 대중에게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한국인에게 높은 129번 MM 유전자형에 대한 왜곡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미 학계에서 과학적 사실로 되어 있는 MM 유전자형과 vCJD 발생의 높은 상관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현재 연구되고 있는 219EK 유전자를 거론하면서 그 의미를 희석하고자 했다. 219EK등은 vCJD보다는 주로 sCJD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vCJD와 관련하여 219번 코돈을 언급하려면 학계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167DG, 202DD 등도 모두 대등하게 언급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미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과학적 사실로써 129번 MM을 제외하고는 이들 모두 연구 대상이지 아직 과학적 사실은 아니다. 이런 오류는 이와 관련되어 제시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서에서도 발견된다.

이렇게 굴욕적인 수입조건의 문제점을 감추고 싶었던 정부는 주요 내용에 있어서 과학 논란이 있다는 식의 전략을 취함으로서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마치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측은 논란이 있는 내용에 대하여 특정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데에 성공한다. 다시 말하면 당시 국민들은 99% 광우병 발생 감소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EU 기준에 비해서 결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정부의 수입조건에 대한 문제 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제의 초점을 과학논쟁의 형태로 유도하였다. 그런 점에서 굳이 전문적이고 세세한 내용까지 따져서 과학적 사실이 무엇인지 보여주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촛불측 일부 전문가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전략에 휩쓸린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오직 미국의 입장에 가까운 것이라면 이미 학계에서 부정된 내용마저 전문학회지에 있다는 것만으로 마치 과학적 사실처럼 일반인들에게 제시했다.

라. 괴담과 고정관념

수입 미국쇠고기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면서 정부는 반전을 위하여 과학 논쟁과 더불어 소위 괴담 논란으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동시에 말장난에 가까운 교묘한 수사적 어법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된다. 이런 목적으로 정부가 시위자들의 괴담으로 비난한 것은 '라면 스프 오염으로 인한 사망'이거나 '화장품에 의한 감염'과 같은 이야기였고, 동시에 국무총리가 국회와 대중 매체에서 당당히 주장한 정부의 괴담으로는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라 전달병' 그리고 '3-5년 내로 사라질 병' 등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시민 측의 괴담이라고 지적한 식품재료나 화장품등의 위험성

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써 어느 나라나 식재료나 화장품 원료에 SRM 유입 방지를 위하여 공식적으로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시위가 한창인 2008년 6월 27일 국내 식약청도 '미국산 쇠고기 추가 수입에 따른 의약품등, 화장품 안전관리 지시'를 한국제약협회 및 대한화장품협회 등에 발송하여 SRM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한편, OIE나 국내법에 법정전염병으로 규정되어 있는 광우병을 국민들에게 전염병이 아니라고 공공연하게 말한 것이나, 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광우병 발생국에서 광우병 청정국으로 재평가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2008년도 정부의 광우병이 3-5년 내로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과학적 근거에 의하지 않은 소설에 가까운 괴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괴담 논란 외에도 당시 정부가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을 이용한 의도적 발언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왜곡시킨 대표적인 것만을 간략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후추알 크기나 0.001g의 위험물질로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은 괴담이다. vCJD와 같이 특정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만으로 질병과 연계해서 말하는 것은 오류이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프리온 유전자 129번의 MM 형이 비율이 높다고 해서 한국인이 vCJD에 취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SRM만 제거하면 살코기는 먹으면 안전하다 등이 있다.

후추알 크기라는 표현은 2001년 영국 국회보고서에 있는 표현이고, 0.001g의 수치 등은 엄밀한 조건 속에서 행한 영국 수의과학검역원의 실험을 통해 보고된 수치이다. 더욱이 사전예방원칙에 의거하여 감염 양에 있어서 비록 사람과 소의 종간 장벽(species barrier)을 없다고 간주하여 동일한 양을 사람에게도 적용하여 모든 정책과 기준을 작성하라는 것이 EU EFSA의 공식 입장이 있다.

또한 '다우너 소의 증상은 다른 여러 요인으로 발생' 및 'vCJD등 특정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여러 요인에 의한 것'라는 정부 주장은 타당한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이 '특정 유전자와 질병 발생 간의 상관관계'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상반되지도 않는 프리온 유전자 129번의 MM 형이 비율이 높은 한국인이 vCJD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유전자와 특정 질병과의 상관관계는 이미 많은 사례가 연구되어 유전자 진단법 개발이나 질병 내성 축종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129번 MM형 유전자와 vCJD와의 상관관계는 이미 학계에서 합의되고 인정된 과학적 사실로서 교과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두 표현 모두 타당하고 서로를 배척하는 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의 표현이 옳으니 상대방의 표현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선전하였다. 일반인들에게 인식적 오류를 유도하여 과학적 주장을 왜곡시킨 매우 교묘한 수사적 왜곡이었고, 이런 정부의 전략은 성공하여 심지어 PD수첩 관련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이와 같은 잘못된 논리가 등장하게 된다.

한편, 광우병에 걸린 소는 국제적으로 사체 전체를 폐기하지 결코 식용여부를 고려하거나 도축하지 않는다. 광우병에 걸린 소는 사체 전체가 SRM이고 즉시 폐기처분해야 한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SRM만 제거하면 살코기는 먹으면 안전하다는 주장은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비과학적 내용이다.

이처럼 정부는 방역이나 검역 현장에서 적용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이라는 과학적 입장을 일반인의 고정 관념을 이용하여 괴담이라고 몰아가는 전략을 취한 셈이다. 일부시민들 중에 떠돌던 내용들은 결코 근거 없는 괴담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정부 괴담은 국가 고위 공무원에 의해 대중매체에서 공공연하게 일반대중에게 전파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중이나 파급 효과는 시위대중에 떠돌던 과장된 이야기에 비할 바 아니었다. 전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정부 괴담에 비해서 차라리 대중에서의 과장된 이야기가 전염병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나름 근거한 주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 미국쇠고기 검역

정부가 촛불요구에 마지못해 응해 진행했던 수입위생조건 재논의에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부칙을 넣음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대대적으로 국민 기만에 나선다. 미국 광우병 발생 시, "GATT 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여기서 GATT 및 WTO의 전제 조건과 더불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가 아니라 '조치를 취할 권리'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상문에서 그러한 권리 행사조건을 보면 광우병 발생 시,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BSE위험통제국가'지위에 변동이 생길 경우 수입중단"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가 지위가 변경될 수 없음이 분명한 상황이기에 이런 추가 부칙이 얼마나 국민을 현혹시키는 수사적 행태에 불과함을 잘 알

광우병 발생국에서 광우병 청정국으로 재평가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2008년도 정부의 광우병이 3-5년 내로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과학적 근거에 의하지 않은 소설에 가까운 괴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방역이나 검역 현장에서 적용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이라는 과학적 입장을 일반인의 고정 관념을 이용하여 괴담이라고 몰아가는 전략을 취한 셈이다.

수 있다. 또한 당시 촛불의 내장 수입의 위험성 지적에는 재논의 부칙에 '수입업자의 요청이 없는 내장 발견시 즉시 반송'이라는 있으나마나한 문구를 (수입요청이 없는 것이 발견된다면 반송은 당연하다) 넣고서는 말의 뒷부분만을 강조하면서 내장 수입이 차단된 듯이 선전을 했다. 당시 정부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당시 마장동 쇠고기 수입업자들로부터 내장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도 발표하게 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는 광우병 발생을 99% 차단한 EU의 기준으로 보면 사료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폐기 처분되어야 하는 SRM에 해당되는 소의 대창부위를 2010년부터 수입 허가해 국내 소비되고 있으니 현 정부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국민의 식품안전성 권리가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 지 잘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수입 측에서 당연히 확보해야 할 수출국에 대한 검역 권리를 완전히 미국에 넘겨주었다. SRM을 포함하여 수입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있어서도 수입국으로서의 검역 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는 취할 수 없으며, 미국의 해당 작업장에 대한 선별과 문제 작업장에 대한 검사권리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국민들에 대하여 정부는 재논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고 했으나 실효성은 전혀 없는 수사적 언급에 불과했다. 수입되는 쇠고기 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일본과 같이 수입국으로서의 자체 현지조사는커녕 한국은 미국과 공동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역시 미국 측과 협의하는 것으로만 되어있다.

지적하는 국민들에 대하여 정부는 재논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고 했으나 실효성은 전혀 없는 수사적 언급에 불과했다.

바. 무의미한 정부의 약속

돌이켜보면 당시 모든 문제제기에 대한 최종 답변으로서 정부는 언제나 국제기준으로서의 OIE의 권고 규정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미국쇠고기 수입에 있어서 한국이 받아들인 OIE의 기준은 국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과학 기준이기 때문에 조만간 한국 주변국도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미국쇠고기를 수입하게 될 것임을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 주변국 모두 WTO에 제소당할 것이며, 만일 주변국이 한국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미국과 수입타결을 한다면 한국 정부도 즉시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재협상을 할 것임을 굳게 약속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회의 여야 정당대표들이 모여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에 대하여 자신감을 표명하였다. 정부의 이런 자신감 있는 주장은 실제로는 한국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미국정부의 입장을 단순히 대변한 것임이 후에 Wikileaks의 비밀문서 공개로 드러나게 되었지만, 최소한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자신 있는 태도로 인해 과학적 진위를 떠나 정부 주장에 대하여 신뢰를 보이게 되었고, 국내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과 더불어 미국과의 추가 논의를 통해 한시적으로나마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결과를 수용하게 된다.

하지만 대만은 2010년에 한국보다 훨씬 엄격한 30개월 미만 미국쇠고기 수입조건으로 협상을 공식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에게 그토록 자신 있게 약속했던 미국과의 재협상을 지금도 의도적으로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Wikileaks에서 공개된 비밀문서를 보면 정부가 당시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만이 한국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미국쇠고기 수입을 결정하자, 정부는 국민들과 약속했던 미국과의 재협상을 추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총기 당시 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이 오히려 미국대사관을 찾아가 국민들이 이제 정부 약속에 따라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할 것 같으니 대만에 압력을 넣어 한국과 유사한 조건으로 쇠고기 협상을 해달라고 미국에 하소연하는 행태가 보고되어 있다. 2008년도에 졸속 협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지킬 의사도 없는 대국민 거짓 약속을 당당하게 했던 현 정부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욱이 촛불의 요구에 응해 재 논의된 수입조건은 '미국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한국국민의 인식 변화'에 따라 언제고 다시 원래의 수입조건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 한미 FTA 타결과 발효가 진행된 2012년 4월에 미국은 공식적으로 지난 4년간의 한시적 조건은 철폐하고 이제 한국 정부가 미국과 맺고 있는 공식 수입조건인 전 연령의 쇠고기와 30개월 미만의 내장 수입을 요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런 미국의 입장은 최근 미국광우병 발생으로 잠시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나 창자는 전 연령의 소에서 SRM임을 고려할 때 한국인의 식문화와 더불어 미국쇠고기에 의한 광우병 유입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은 지금도 결코 개선된 것이 아니다.

대만이 한국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미국쇠고기 수입을 결정하자, 정부는 국민들과 약속했던 미국과의 재협상을 추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대사관을 찾아가 대만에 압력을 넣어 한국과 유사한 조건으로 쇠고기 협상을 해달라고 미국에 하소연하는 행태가 보고되어 있다.

4) 돌이켜 볼 내용들

가. 미국의 입장과 한국 정부

자국민의 안전성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 현 정부와 더불어 과학적이거나 국제기준도 아닌 내용으로 자국쇠고기에 대한 전면 개방을 내세운 미국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내장을 섭취하는 한국인에게 굳이 국제적으로 SRM에 해당되는 창자마저 적극적으로 수출하려는 이유는 다음 표에서 보듯이 전적으로 미국 목축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의 미

국 쇠고기 수출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생긴 소 창자 수출 금지에 따른 손실액은 약 9천 6백만 달러에 이른다. 물론 이 금액이 한국의 수입액만을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저렴한 소 창자는 식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기에 소의 양과 더불어 대창도 식용으로 하는 한국과 더불어 동일한 아시아권의 한국주변국의 소비는 결코 적지 않다.

Table 1. Summary of Selected Costs to the Beef Packing Sector for the Year 2004 Associated with BSE Regulations[1].

Area	Low	High	Weighted Average[2]
Increased Employment	N/A	N/A	$14,715,000
Decreased Employment	N/A	N/A	($33,354,000)
HACCP, SSOP, Verification (ongoing)	N/A	N/A	$327,000
Lost Products			
Brains, Eyes, etc. in OTM Cattle	$0	$0	$0
Small Intestines from All Cattle	$84,366,000[3]	$107,910,000[3]	$96,138,000[3]
Bone-in Cuts from OTM Cattle	$22,890,000	$32,700,000	$27,795,000
Reduced AMR Product (UTM)	$2,197,440[4]	$8,789,760[4]	$5,493,600[4]
Reduced AMR Product (OTM)	$8,542,575[5]	$40,284,500[5]	$24,463,688[5]
Non-ambulatory Cattle[3]			
Fed	$2,485,200	$2,485,200	$2,485,200
Non-fed	$62,130,000	$62,130,000	$62,130,000
Total	$64,615,200	$64,615,200	$64,615,200
Net Industry Impact[6]	$164,299,515	$110,192,460	$206,193,488

2003년도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 미육류 업계의 손실 상황

미국의 소 창자 수출 금지에 따른 손실액만 해도 약 9천 6백만 달러에 달한다.

2011년도 Wikileaks에 의해 밝혀졌듯이 2008년도 한국 정부가 주장했던 '조만간 한국 주변국도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 주변국 모두 WTO에 제소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실제로는 한국 정부의 의견이 아니라 미국의 주장이었다. 미국 주장을 한국 공무원들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마치 한국 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말했던 내용이다. 결국 미국은 위와 같은 주장으로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 쇠고기 문호를 개방시킨 후 이를 빌미로 반대로 한국주변국에도 동일한 압력을 행사하려던 양동작전을 펼치려 했던 것이 밝혀졌고 이에 한국이 앞장을 선 셈이다.

물론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 행태를 가능하게 한 것은 현 정권의 한미FTA 타결을 위한 선결조건의 무조건 수용이라는 전제가 있었고, 현 대통령의 뼛속까지 친미인 성향에 바탕을 두어 자국민의 입장보다는 현 정권의 미국에 대한 정치적 유대관계가 더욱 중요시 된 결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 쇠고기 문호를 개방시킨 후 이를 빌미로 반대로 한국주변국에도 동일한 압력을 행사하려던 양동작전을 펼치려 했던 것이 밝혀졌고 이에 한국이 앞장을 선 셈이다.

2009년도에 이미 북미 FTA가 발효되어 있는 바로 옆 나라인 멕시코와도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로 타결한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시점에 전 연령으로 타결된 수입위생조건에 항의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과학을 더 배워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버시바우 당시 미국대사의 오만한 태도는 결국 이런 굴욕적 수입조건을 '미국으로부터의 선물(민동석 협상단장)'이라고까지 표현해야 했던 한국정부의 저자세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하다.

나. 한국사회에 남은 상처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취한 현 정부의 굴욕적 자세는 결국 미국쇠고기 수입협상 졸속 타결에 따른 여러 사회적 비용을 한국사회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정부 내지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WTO 피소당한 것은 한국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미국쇠고기를 수입하는 주변국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캐나다에 의해 한국이 제소 당했다. 미국과의 수입조건을 과학적이라고 주장했던 한국정부의 원죄로 인해 결코 유리할 것이 없던 한국정부는 과학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캐나다와의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해야 했다. 또한 앞으로 한EU FTA 타결에 따른 EU로부터의 쇠고기 수입 요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08년도 한국정부의 주장은 장차 있을 EU회원국과의 협상 과정 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정부의 졸속 협상 타결에 의해 치룬 무엇보다도 큰 사회비용은 한국 사회의 분열과 더불어 많은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로 전락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현 정권은 정당한 요구로 시위현장에 있던 일반인들마저 사법처리로 대응했고, 경찰은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시민들을 향하여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압에 나섰다. 물대포는 물론 방패와 경찰봉에 의한 폭력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위대를 과잉 진압한 것은 국제 엠네스티 조사단의 시찰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기에 이 글에서 반복은 하지 않지만, 이번 쇠고기 사태에서 보여준 경찰의 범죄에 가까운 폭력행위는 용산 사태와 쌍용차 진압과정과 마찬가지로 우리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부분은 한국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장차 반드시 냉정하게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한편, 4년 전 당시 종편사업의 미끼가 던져진 상황에서 광우병 사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철저한 언론 길들이기는 사회 퇴행의 전형적 모습이었다. 정부 실책에 대한 탐사보도를 방영한 PD수첩에 대한 고소마저 이어져 대법원까지 진행되는 소모적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결국 중세기도 아닌 21세기에 과학적 사실에 대한 옳고 그름을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PD수첩에 대한 대

그러나 정부의 졸속 협상 타결에 의해 치룬 무엇보다도 큰 사회비용은 한국 사회의 분열과 더불어 많은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로 전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원 판결문에서 보면 '비록 PD수첩에 대한 무죄 확정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중에 129번 MM유전자형의 비율이 높은 한국인이 vCJD 발생에 취약하다는 보도를 허위로 본다.'고 판시하였다.

비록 소수의견은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미 학계에서는 상식적인 과학적 사실에 대하여 허위라고 판단한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들었다. 먼저 129MM 유전자를 가졌다고 해서 vCJD에 반드시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질병이란 어느 특정 유전자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두 가지 다 타당한 이야기지만 맥락을 착각했다.

첫 번째 논리는 전형적인 사법논리다. 무고한 피해자 발생을 위하여 예외가 있을 때에는 일단 '무죄 추정'하는 사법논리가 적용된 것이다. 형벌을 부과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논리이지만, 과학에서 특히 생명과학에서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는 점과 더불어 검역과 방역에 있어서 질병으로부터 무고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하여 '유죄 추정'을 한다는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두 번째 근거인 질병이란 어느 특정 유전자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특정 유전자가 질병 발생에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둘 다 맞는 이야기이며, 전자는 질병을 기준으로 언급한 것이고 후자는 유전자를 주어로 하여 유전자에 대하여 언급한 것일 뿐이다.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쪽 이야기가 맞으니 다른 표현은 허위라는 흑백논리가 적용되었다. 이는 이미 학계에서 연구되어 실제적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특정 질병과 유전자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유전자 진단법 개발이나 질병내성 유전자를 강화한 육종개량 연구 자체가 사법부에 의해서 허위로 판시되는 황당한 희극적 상황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셈이다.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유전자 진단법 개발 연구 사업이나 품종개량 연구 사업 모두가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유전자 진단법 개발 연구 사업이나 품종개량 연구 사업 모두가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3. 광우병 사태의 본질과 한국 사회

살펴 본 바와 같이 2008년도 한국 사회를 뒤흔든 미국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조건은 단순한 과학 논란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의도적인 정치경제적 개입이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부의 변명과정에서 등장한 언론과 사법적 상황이 뒤얽힌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난 4월 그토록 안전하다는 미국에서 또다시 광우병이 발생하자 한국정부는 '현재 30개월 미만 미국쇠고기를 수입하고 있고, 광우병은 99%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으로 맞는 말이지만,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조건은 정부가 미국과 공식적으로 맺고 있는 수입조건이 아니라 촛불 시민에 의해 얻어 낸 한시적 조건이다. 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광우병이 창궐할 때에 비해서 99%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도 인정했듯이 그동안의 과학 연구에 힘입어 질병 발생이 99% 감소하고 있다면, 이 질병에 대한 방역에 있어서 과학 논란의 여지는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밝혀진 과학사실에 근거해 정책을 실시하면 99%의 질병발생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 쇠고기 수입논란은 일반인들이 착각과는 달리 과학적 논쟁거리가 아니라 단지 수입조건의 문제일 뿐이다.

이를 간단히 비유하자면 한국이 돈을 주고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할 때 옆에 보니 광우병을 99%나 감소시킨 EU의 검역 기준과 정책이 있기에 그런 좋은 조건으로 쇠고기를 사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허나 미국과 사전 교감이 있던 정부는 자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수출국인 미국이 제시한 충분조건이 아닌 겨우 체면만 유지할 정도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검역 권리마저 포기한 채 수입을 결정한 셈이다. 그러고서는 안전성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는 자국민들에게 미국을 대신하여 미국의 주장을 강변하고 심지어 언론, 검찰, 사법부마저 가세하여 자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자국의 건강한 언론 및 과학자를 폄훼한 상황이다. 정부만 국민 편에 서서 제대로 역할 해준다면 광우병과 같은 특수한 질병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관심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광우병은 과학으로 통제되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실제 상황 속에서 광우병 통제와 관리에 성공한 EU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한다. SRM의 철저한 제거, 강화된 사료조치, 그리고 전수 검사이다. 또한 철저한 이력추적제 실시 등을 포함한 광우병 발생에 대한 대응지침(매뉴얼)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지침을 거의 지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한 경제적 접근이기 때문이다. SRM 기준도 EU에 비해 느슨하고, 강화된 사료조치를 뒤늦게 실행한 것은 물론 실시되고 있는 사료조치 자체도 EU 권고보다 엄격하지 못하다.

특히 잠복기가 긴 이 질병의 특성 상 외양은 건강하지만 실제로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많은 상황에서 광우병고위험군의 소만이 아니라 도축되는 일정 연령의 소를 전부 검사하는 전수 검사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제적 이유

광우병 통제와 관리에 성공한 EU는 SRM의 철저한 제거, 강화된 사료조치, 그리고 전수 검사 등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한다.

를 표명하면서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시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보다는 기업의 이윤추구에 초점이 맞혀져 있다 보니 광우병 발생을 감시 통제할 국가 예찰 체제도 매우 부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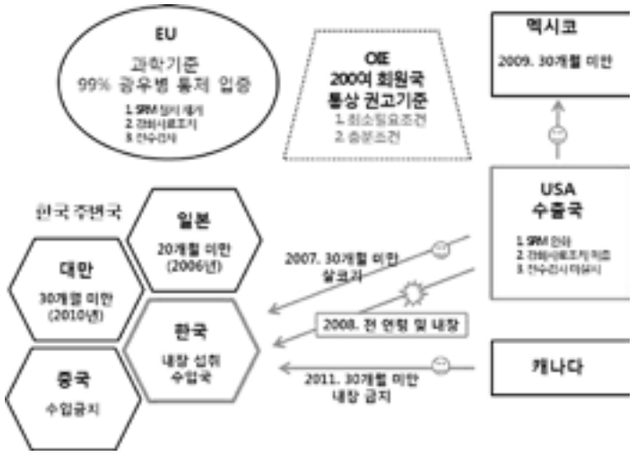

국가별 미국쇠고기 수입조건 진행과 한국

그동안 현 정권은 미국쇠고기에 대하여 국민 건강과 OIE의 권고사항마저 무시하는 초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국민을 기만해 왔다.

미국에서 연간 3천4백만 마리의 도출 과정에서 광우병고위험군인 기립불능소가 15~19만 마리가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정부는 일부 고위험 군을 포함하여 단지 4만 마리만을 무작위 광우병 검사를 할 뿐이다. 이번에 발견된 미국의 비정형 광우병 소도 사체재처리 공장에서 처리되기 직전에 발견되었을 뿐이다.

그동안 현 정권은 미국쇠고기에 대하여 국민 건강과 OIE의 권고사항마저 무시하는 초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국민을 기만해 왔다. 그러나 미국쇠고기만이 예외가 될 수 없다. 2008년도 당시 시민들이 가졌던 불안은 단순히 미국 쇠고기가 위험하다든지 좌파적 반미 의식의 발현도 아니고, 수입개방에 따른 식품 안전성에서 비롯되었음은 현 정권의 미국 쇠고기 확대 수입결정 이전인 노무현 정부 때 이미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 살코기 수입에 대해서 국민들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으로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여전히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어도 최근에 타결된 내장 수입 금지와 더불어 30개월 미만 캐나다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성숙한 국민들의 식품안전 의식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국 광우병 발생에 있어서 정부가 취한 행태를 보면, 2008년도 졸속 협상 때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미국쇠고기 수입조건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눈에 뜨인다. 미국으로부터 광우병 발생 소식이 전해지자말자 정부는 즉시 고령 우에서의 비정형광우병이기에 사료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없으며, 병원성도 없어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은 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다시 수입국인 한국정부가 근거 없는 내용으로 수출국인 미국을 변호하며 감싸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사료가능성도 없고 안전하다는 자체 결론을 미리 내린 정부는 형식적인 조사단을 대국민 홍보 목적으로 파견했고, 조사단의 예상되었던 결론을 끝으로 모든 상황을 서둘러 종료시켰다.

하지만 미국에서 발생한 유형의 비정형광우병은 일반광우병보다 감염력이 더 강하다는 연구도 있고, 특히 미국은 광우병 발생 농장을 격리하고 한 달 동안 역학조사를 한 후에야 비로소 이번 광우병 발생에 있어서 사료가능성을 배제하면서 격리조치를 해제했다. 농장 의 격리조치는 국가로 치면 수출입 금지조치다. 한국정부는 미국으로부터의 광우병 발생 통보만으로 안전하다면서 수입을 계속한 것과는 달리 미국은 잠정적으로 수출입을 금지시키고 사료 가능성을 한 달여 조사한 셈이니 수입국이 수출국보다 미리 알아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주장한 셈이니 여기서도 한국정부의 굴욕적 대미 자세가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이런 정부의 미국 대변인 역할은 만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정부의 기자회견장에 광우병전문가라는 이를 등장시켜 2008년도 주장했던 것처럼 일반 광우병은 사라졌고 고령 우에서 발생하는 비정형광우병만이 발생한다는 당시 정부 괴담을 또 다시 당당하게 연출한 모습에서도 잘 나타난다. 단 하루 만에 허구로 밝혀진 이런 비과학적 억지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심지어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를 정파적 주장이라고까지 왜곡했다. 더욱이 친정부 주요언론 매체들은 2008년 때처럼 보도 내용의 형평성이라는 구실로 정부 괴담을 과학적 반론과 대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지금도 여전히 과학논쟁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몰아갔다.

이번 미국 광우병 발생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미국과의 쇠고기 조건 변경 재협상을 통해 2008년도의 정부 실책을 바로 잡을 기회였다. 직접적인 광우병 피해를 받았기에 이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EU의 광우병 관리 체제는 이제 국제적인 실증 사례가 되어 전 세계의 광우병 발생 감소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어서 광우병에 대한 검역조건이나 정책은 더 이상 과학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불행히도 한국은 현 정부의 굴욕적 대미자세로 인해 일본이나 대만과도 달리 이미 고령 우나 정체불명의 쇠고기가 섞여있을 분쇄가공육과 더불어

2008년도에 내장은 수입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공허한 말장난이 되었고, 잠복기가 긴 이 질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SRM으로서 폐기되어야 할 소의 대창이 수입되고 있다. 한시적 조건으로 그나마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는 최소한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지만 2008년도에 내장은 수입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공허한 말장난이 되었고, 잠복기가 긴 이 질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도 타결한 위생조건인 쇠고기 월령 제한 폐지와 EU라면 폐기 처분되는 내장을 수입하는 조건은 과학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쇠고기 수출국인 미국 요청에 부응한 정부 작품일 뿐이다. 당시 상황으로 인해 치룬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마음 아픈 상처가 되었다. 제대로 된 정부 역할이 있다면 2008년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이 굳이 광우병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부의 의지가 없는 한 광우병은 여전히 한국 사람의 안전과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다. 촛불시민들에 의해 확보한 현재의 한시적 30개월 미만 쇠고기와 내장 수입금지는 이제 재협상을 통해 양국의 공식 수입조건으로 명문화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Bruno Latour, 'From the World of Science to the World of Research?' Science, Vol 280, Issue 5361, pp. 208–209, 1998,
- Ackerman F, Johnecheck WA. , 'Mad Cows and Computer Models: The U.S. Response to BSE' New Solut. 18(2):145–56, 2008.
- Harvard Center for Risk Analysis(HCRA), revised in 2003
- TAFS, TAFS Position Paper on Specified Risk Materials. Swiss, 2009.
- The BSE Inquiry. UK Stationery Office, UK. (http://www.bseinuiry.gov.uk/report), 2001
- Kerstin Dressel, A.P., Giuseppe Ru, Wim Van Wassenhove, TSE Roadmap – A comparative study of the risk perceptions and risk communications of stakeholders within European countries. the NeuroPrion project, Brussels, EC, 23rd, Nov, 2009.
- D.C. Phillips, 'Philosophy, Science and Social inquiry' pp. 102–114, Pergamon Press, 1987.
- '이명박 정권에 의한 미국산 쇠고기 졸속 수입과 왜곡된 진실', 『이명박 정부 2년 백서 – 무너진 인권과 민주주의』, 우희종,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모임, pp124-154, 2010.
-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와 과학문화 –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과학 사기사건' 우희종, 한국과학기술학회 전기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0년 6월.
- '신종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의 프리온 질병' 우희종,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KSBMB) 웹진 3월호, pp. 1-14, 2010.
- '기술지식의 불확질성과 기술위험: BSE(광우병)를 중심으로' 성지은, 한국과학기술학회 후기 학술대회, pp. 45-71, 2007.
- '광우병 원인체인 prion 연구시설 방문기 – 방역 기관인 미국 농림성 산하 NADC 및 prion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UCSF의 Prusiner 교수 연구실 방문' 우희종, 분자세포생물학뉴스, vol 15(1), pp57-60, 2001.
- '그들은 아는 우리만 모르는 – 위키리스크가 발가벗긴 대한민국의 알몸' 김용진, 개마고원2012.
- Wikileaks에 있는 한미FTA 관련 2008년 쇠고기 협상 및 촛불 관련 문서.

http://wikileaks.org/cable/2008/01/08SEOUL112.html (최시중, 현인택)
http://wikileaks.org/cable/2008/02/08SEOUL343.html (버시바우/미국무부장관)
http://wikileaks.org/cable/2008/05/08SEOUL952.html (박근혜)
http://wikileaks.org/cable/2008/05/08SEOUL1045.html (이회창)
http://wikileaks.org/cable/2008/05/08SEOUL1058.html (송민순)
http://wikileaks.org/cable/2008/05/08SEOUL1087.html (이상득)
http://wikileaks.org/cable/2008/06/08SEOUL1122.html (촛불시위 격화)
http://wikileaks.org/cable/2008/06/08SEOUL1144.html (한나라당 보궐선거 촛불민심)
http://wikileaks.org/cable/2008/06/08SEOUL1145.html (한나라당 미대사 면담)
http://wikileaks.org/cable/2008/06/08SEOUL1153.html (촛불시위 지속, 청와대 고민)
http://wikileaks.org/cable/2008/06/08SEOUL1174.html (촛불시위 상황평가)
http://wikileaks.org/cable/2008/06/08SEOUL1204.html (격동의 MB, 재기여부)
http://wikileaks.org/cable/2008/06/08SEOUL1273.html (박진)
http://wikileaks.org/cable/2008/07/08SEOUL1490.html (한나라당 지도부)
http://wikileaks.org/cable/2008/08/08SEOUL1524.html (정세균 대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대법원확정판결에 대하여

글 _**문헌웅** 회원

1. 들어가며

2009. 6. 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합니다) 집행부는 '교사 시국선언-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하 "1차 시국선언"이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쇄신을 촉구하는 내용이었고, 전교조 소속 교사 1만7,189명이 시국선언에 서명했다. 이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라며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시·도 교육청에도 중징계를 요청했다. 전교조는 1차 시국선언 한 달 뒤인 7. 19. 1차 시국선언 관련자 고발·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민주주의 수호교사 선언'(이하 "2차 시국선언"이라 합니다)을 한다. 이와 같은 1, 2차 시국선언에 대하여 검찰은 전교조 간부들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적용해 기소했다. 전국 법원에서 여러 건의 시국선언 재판이 동시에 진행됐는데 법원마다 유·무죄가 나뉘었고, 지난 4. 19. 하급심 판결들을 하나로 정리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 3명의 상고심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동'에 해당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2.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요지(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과 관련한)

가. 다수의견의 요지

위 판결에서 다수의견의 요지는 ①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임을 규정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특정한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②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비단 교육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교육현장 외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특히 아직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정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미성년자들을 교육하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활동은 그것이 교육현장 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중등학교의 교원은 교육현장 외에서의 활동도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결국 피고인들이 다른 전교조 간부들과 공모하여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한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그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라 할 것이다.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1, 2차 시국선언의 기획 및 추진 목적, 그 시기와 경위, 그 내용, 초·중등학교 교원 지위의 특수성, 추진 방식과 그로 인한 영향 등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들이 다른 전교조 간부들과 공모하여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한 행위는 뚜렷한 정치적인 목적 내지 의도를 가지고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사 내지는 비판적인 영향력을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그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라 할 것이다.

나. 소수의견의 요지

위 판결에서 소수의견의 요지는 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수의견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나오는 의무의 하나를 규정한 것이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려면 우선 그것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 여기서 '공익에 반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포괄적·추상적·상대적이어서 법 집행기관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그러한 측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둔 취지도 이러한 제한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존재는, 당해 집단행위가 국민전체와 공무원 집

1, 2차 시국선언은 유사한 시국선언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특정 사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 등에 대한 비판 내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개선을 요구한 것이거나 그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단 사이에 서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민주적·직업적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③ 1, 2차 시국선언은 유사한 시국선언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특정 사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 등에 대한 비판 내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개선을 요구한 것이거나 그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는 그 자체로 헌법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한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이고,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임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따라서 이는 시국선언의 주체인 '전교조 교사들이나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며, 시국선언이 나오던 시기의 사회상황이나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에 비추어 보아 그것이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민주적·직업적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④ 1, 2차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집단이나 정파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개별 공권력 행사에 반대하거나 그것을 비판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그 개선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그것이 일부 정치집단이나 세력과 의견이 같아 보이더라도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규탄이나 지지를 위해 행해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국가공무원법은 제66조 제1항과 별도로 제65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운동' 또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면서 제84조에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사가 피고인들의 시국선언 관여행위를 이러한 '정치운동' 또는 '정치적 행위'로 기소하지 않은 것도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법이 별도의 규정으로 공무원의 '정치운동'이나 '정치적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는 점, 나아가 '교원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따로 금지하고 있는 점(참고로 같은 법률에서는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같은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수에게는 다양한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 2차 시국선언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볼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금지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정치운동'이나 '정치적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⑤ 이처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는 개념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둔 취지에 따른 내재적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는 또 다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라 할 수 없다. 그런데 1, 2차 시국선언은 교육현장 밖에서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교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서명운동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을 상대로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무슨 갈등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1, 2차 시국선언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교사들의 직무수행 등 교육행정에 지장치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실질적인 침해나 지장뿐 아니라 추상적인 침해나 지장의 우려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1차 시국선언이 발표되기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국선언 참여 자제요청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1차 시국선언에 어떠한 위법요소도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단순히 그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전념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⑥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기관을 통하여 형성되는 국가의 의사가 진정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국가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공론의 장은 국민이 각기 처한 상황이나 이해관계 혹은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하여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공적 논의를 풀어가는 자발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제도화된 언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는 대의민주주의가 올바로 작동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1. 2차 시국선언은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국정 운영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교원들이 자신들의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은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데 있으므로, 민주주의 국가라면 마땅히 공론의 장으로 받아들여야 할 주장이며 행위이다. 그럼에도 단지 그 표현의 주체가 공무원인 교원 집단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것이 공적 논의에 관한 것인 바에는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정치적'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필연적인 성격을 들어 이를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는
"특정 정치집단이나 정파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헌법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상 보호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기 그지없다.

3.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대한 평가

가.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1) 다수의견은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특정한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비단 교육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교육현장 외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설시한다. 소수의견도 '1, 2차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집단이나 정파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개별 공권력 행사에 반대하거나 그것을 비판하는 의사를 표현하고'라는 설시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는 "특정 정치집단이나 정파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헌법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일반적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은 공적 개인으로서는 집권세력의 정책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되(즉 복종하되) 그것이 기존의 법과 규정 특히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어긋날 경우 비판하거나 불복종할 수 있고 사적 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이 '공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은 공적 개인으로서는 집권세력의 정책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되(즉 복종하되) 특정 정치집단이나 정파로부터 독립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면 기존의 법과 규정 특히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어긋날 경우 비판하거나 불복종할 수 있고 사적 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다수의견이 '초·중등학교의 교원은 교육현장 외에서의 활동도 잠재적

다수의견은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정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미성년자들'이라는 전혀 실증되지 않았고 막연한 논거(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위 의견이 실증된 의견임을 전혀 알지 못한다)를 바탕으로 교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하지 않다.

교육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힌 것은 검증되지 않는 논거로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사적 개인으로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교원에게는 일반 국민에게 부여되는 기본권을 향유하는 데에 있어서도 늘 교육의 관점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수의견에 따른다면 교육현장 및 일반 사회 영역에서 금연 교육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교원의 경우 늘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현장 외에서의 활동도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여야 함으로 교원은 흡연할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수의견은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정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미성년자들'이라는 전혀 실증되지 않았고 막연한 논거(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위 의견이 실증된 의견임을 전혀 알지 못한다)를 바탕으로 교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하지 않다.

나. 시국선언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는지

(1) 이 사건 시국선언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소수의견은 '특정 정치집단이나 정파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개별 공권력 행사에 반대하거나 그것을 비판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그 개선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 시국선언은 소수의견이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개별 공권력 행사에 반대하거나 그것을 비판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그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다수의견도 이 사건 시국선언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였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소수의견은 그러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에 따를 경우 기본권의 최대한의 보장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라는 헌법 이념과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즉 다수의견은 소수의견이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부 정책의 비판은 공적 논의에 관한 것인 바에는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정치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비판에 동조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한 정파적이고 당파적인 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필연적 성격을 도외시 한 채 그것도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규탄이나 지지를 위해 행해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에게 정부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 내지 박탈하는 것이어서 기본권의 최대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에 배치된다. 다수의견에 따른다면 초·중등 교원의 경우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한 교원이 바람직한 교원일 것인데 이와 같은 교원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3) 또한 소수의견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기관을 통하여 형성되는 국가의 의사가 진정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국가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공론의 장은 국민이 각기 처한 상황이나 이해관계 혹은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하여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공적 논의를 풀어가는 자발적인 공간'이어야 하고 '이러한 공간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제도화된 언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는 대의민주주의가 올바로 작동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은 헌법학계에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정리된 의견인바, 이 사건 시국선언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다수 대중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은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데 있으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에 충실하고자 하는 주권자의 아주 바람직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다수의견에 의한다면 이러한 주권자의 아주 바람직한 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고, 또한 주권자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여야 하는 책무를 방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현저하여 다수의견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라는 헌법이념에도 배치된다.

또한 주권자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여야 하는 책무를 방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현저하여 다수의견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라는 헌법이념에도 배치된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시국선언은 정부정책을 비판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주권자의 바람직한 행동이라 평가할 수 있고, 그러한 행동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 다소 정파성, 당파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권의 최대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에 입각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서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다수의견과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여 정파적 이익에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같은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수에게는 다양한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국선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 항이 금지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복무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1) 이 사건 시국선언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시국선언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소수의견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이 사건 시국선언이 다수의견의 판단과 같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다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 위반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것인바(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이와 같이 공무원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는 유형의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검사가 그와 같이 이 사건 시국선언에 관련된 피고인들의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 위반죄로 기소하지도 않은 또는 못한 상황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에서 규율하는 '정치운동'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부당하게 확대하여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은 제66조 제1항과 별도로 제65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운동' 또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면서 제84조에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제2항은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은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처벌되는 공무원의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는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같은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수에게는 다양한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사건 시국선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취지에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4. 맺으며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다수의견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박탈하는 법률해석을 하고 있는바, 그 논거로 들고 있는 교육현장 외에서의 활동도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사실상 교원의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어떤 경우에는 전혀 행사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부당하고, 이 사건 시국선언은 정부정책을 비판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주권자의 바람직한 행동이라 평가할 수 있고, 그러한 행동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 다소 정파성 및 당파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권의 최대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에 입각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서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서 다수의견과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여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며, 가사 이 사건 시국선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다 할지라도 법체계상 그리고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은 또는 못한 상황에서 그리하여 공무원의 정파적 이익의 복무 유형을 열거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형사법규에 포섭되지 않은 시국선언과 관련된 행위를 다수의견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동법 제65조에서 규율하는 '정치운동'을 동법 제66조에서 부당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어떤 집회가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 6294 판결에 대하여

반올림의 회원들 몇몇은 2010년 4월 2일 오전 10:3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고 박지연씨의 죽음은 삼성에 의한 타살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노동자 생명 앗아가는 삼성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고,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의 3회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글 _**장종오** 회원

1. 사건의 배경

가. 삼성백혈병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배경"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누군가는 집회 참가자들을 '전문 시위꾼'라 쉽게 부르기도 하지만, 자신이 없다. 오래 만나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알 수 있는, 인간 행위의 이유를 요약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이었고, 망인의 사인이 다수 "백혈병"이었던, 그래서 이른바 "삼성백혈병" 판결이라고 불리는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1149 판결)의 일독을 권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집시법 위반의 배경 설명을 갈음하고자 한다.

나. 박지연씨 사망

애초 위 판결의 원고들 중에는 박지연이라는 여성이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한지 3년째 되던 2007년 7월 하얀 방진복에 하혈이 있었다. 의사는 그녀에게 '화학약품 만지느냐'고 물었다.[1] 최종진단은 백혈병이었다. 그 즈음 그녀가 만난 사람들이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회원들이었다. '꼭 이겨내자'는 뜨거운 응원이 있었으나 그녀는 2010년 3월 31일 숨졌고, 회원들은 서울성모병원의 장례식장을 3일 동안 지켰다.

다. 이 사건 집회

그녀의 운구가 떠나는 날인 4월 2일, 반올림의 회원들 몇몇은 사건 공소사실에 이르렀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① 2010년 4월 2일 오전 10:3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고 박지연씨의 죽음은 삼성에 의한 타살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노동자 생명 앗아가는 삼성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고, ② 같은 날 12:30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에 삼성본관 앞에서 재집결하여 박지연의 영정사진 및 위 피켓, 현수막을 소지한 채 시위를 계속하고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의 3회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①에 대해서는 미신고집회 개최(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②에 대해서는 해산명령불응(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이 각 적용되었다.

2. 사건의 경과

가. 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2. 선고 2010고정 4126 판결

①, ②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1) 2010. 3. 29.자 시사인 '꿈의 공장에서 죽어가는 또 하나의 가족'

나. 2심 판결[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노4708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위 ①에 대하여는 '고 박지연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침묵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에 해당하여 집시법 제15조에 의한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추모적 성격과 추모 이외의 성격이 혼재해 있을 경우에는 주된 성격을 일시, 장소, 내용, 관계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위 기준에 비추어 보면 주된 성격은 추모에 있었다'는 것이고, 위 ②에 대하여는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각자 1인 시위를 하다가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 집시법 소정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한 바 없다',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나 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은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 판단

이에 위 법원은 위 ①에 대해서는 '집시법 제15조의 명문규정[3]에 따르면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옥외집회'일 뿐 '시위'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켓을 들고 열을 지어 행진을 한 것은 '시위'이고, 집시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또 1심이 적시한 사실들을 들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위 ②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켓 등을 들고 열을 지어 행진한 행위는 단순히 1인 시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집시법에서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켓 등을 들

2) 필자는 2심부터 이 사건 변호를 담당하였다.

3)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에 관한 시위'는 법문에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추모의례가 아니라며
미신고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고 일반인이 통행하고 있는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개진한 행위는 집시법에서 말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또 '집시법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집회 또는 시위 자체가 평화롭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 또는 시위인 이상 집시법 소정의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심에 불복하며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상고이유를 밝혔다.

3.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과 그 의의

가. 판결의 요지

(1) 위 ①에 대하여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추모의례가 아니라며 미신고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간략히 인용해 본다.

>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장례에 관한 집회가 옥외의 장소에서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회에 관해서는 사전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예컨대 그 집회참가자들이 망인에 대한 추모의 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제 등을 위한 이동·행진의 수준을 넘어서서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는 경우에는, 이미 집시법이 정한 시위에 해당하므로 집시법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할 것이 요

특히 집회의 해산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등을 든 채 일렬로 장례식장 앞에서 서울성모병원 정문까지 행진한 행위는 망인에 대한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이용하여 망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서서 … 이는 이미 집시법이 정한 '시위'에 해당하여 집시법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위 ②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은,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가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서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면, 그 집회 또는 시위 자체가 평화롭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 또는 시위인 이상 집시법이 정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하여 시위를 비롯한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장제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에 속한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듯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역시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으며, 특히 집회의 해산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앞서 본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잇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

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의 집회 및 시위가 미신고 집회 및 시위인 이상 집시법이 정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피고인들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심리·판단한 다음, 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해산명령에 불응한 행위가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판결의 의의[4]

1) 이 사건 법리의 시초 :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판결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 또는 해산(명령)의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소의 설시는, 신고하지 않은 죄수복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행진하려 하자 즉 신고범위일탈(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 위반)로 볼 여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경찰이 미신고[5]를 이유로 해산하자, 집회 참가자들이 국가배

4) 파기환송의 이유가 된 ② 부분에 대한 의의만을 서술하고, ①은 이번 글의 주제가 아닌 관계로 '후기'에서 소감만을 간략히 밝히고자 한다.

5) 현행법이라면 제20조 제1항 제5호를 해산의 근거로 삼았겠으나, 위 사안의 행위시 구법(1999. 5. 24. 법률 제5985호로 개정되기

재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 이전에는 원심의 법리가 잘못되었음에도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판결은 원심의 집회 해산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그대로 파기환송을 한 첫 번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파기환송이 곧바로 이 사건 삼성본관 앞에서의 집회(②)가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만큼, 환송심에서의 사실관계에 대한 이 부분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2009도 13846판결의 소수의견이 지적하듯이 "다수의견이, 그 내세운 해석상의 법리와는 달리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는 위험 발생의 개연성만으로도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이후의 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 하급심에서는 해산명령 직무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에서 해산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신고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 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해산명령은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집회이거나 관할경찰서장이 금지할 수 있는 사유인, 그 집회 또는 시위가 ①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경우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하는 경우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군사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고단6053판결)

아직도 우리 법원은
어떤 집회가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 있다

위 하급심의 기준으로 대법원의 2009도 13846판결과 2009도 13846판결을 검토해 보면 과연 대법원이 판시한대로 법리오해에도 불구하고 각 원심들의 결론은 정당한 것일까. 한편, 제8조 중복집회로 금지통고되었음에도 선신고 집회가 유령집회이거나 실제로는 양 집회간의 평화적 병존이 가능한 경우에도 위 하급심의 기준인 대로 "금지된 집회"라는 이유로 해산명령이 발령되는 것이 적법한 것일까.

위 2009도 13846 판결의 소수의견이 지적한대로 "대법원이 선언하는 법리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 분쟁의 해결기준으로 실제로 적용될 때에만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보자면 아직도 우리 법원은 어떤 집회가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 있다 하겠다.

4. 후기

이 사건 판결 중 "…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장례식장에서 서울성모병원 정문까지 행진한 행위는 망인에 대한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이용하여 망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서서…"라는 부분은 몹시 유감이다. 누군가에게 장례를 이용하여 시위를 한다고 말하는 '자신감'과 '능력'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오늘날에도 유족만이 추모를 할 수 있고, 시신의 존부가 추모의식인지 판단의 기준이 될까. 할 말이 적지 않으나, 보다 직업적인 방법으로 말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

7) ①은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하여 절대적 금지 ②, ③, ④는 제8조 제3항의 각 제1, 2, 3에, ⑤는 제12조에 해당하여 금지통고 가능한 경우이다. 다만 집시법의 다른 주요한 금지 또는 금지통고 사유인 제8조(중복집회에서의 목적동일, 상호방해), 제10조(야간시위), 제11조(금지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

글 _이혜정 회원

I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경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난 4월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은 가히 온 나라를 충격에 휩싸이게 하였다. 여성에 대한 끔찍한 범죄였다는 것뿐 아니라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은 지금도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당시 경찰은 범인 검거 이후 자신들의 공적 알리기에만 급급했고 치부는 꼭꼭 숨겨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 축소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경찰의 위치정보 수집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민변은 위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경찰은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물리력과 권한강화를 확대하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현재의 제도를 개선, 보완하면서 개정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하였다.

그 이후 위 법률 개정안은 많은 여론의 힘을 얻어 18대 국회의 마지막에 통과되어 11월 15일부터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될 개정법은 경찰의 오남용 통제방안으로 112신고가 걸려온 경우에만 위치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경찰이 위치정보를 조회할 경우 위치정보 주체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정보주체의 열람, 복사, 확인에 대한 의무규정과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위치정보 조회 시 그 내역을 6개월 단위로 경찰과 위치정보 사업자는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민변이 위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가졌던 우려를
공유하기 위하여 제출한 의견서를 아래에 첨부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한 의견서

- 경찰의 위치정보 수집 권한 부여와 관련해 유괴, 납치 등 긴급한 상황에서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 받는 것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다만, 영장주의 위반, 인권침해 및 경찰의 위치정보 오남용 등, 경찰의 권한남용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즉, GPS 위치추적은 현재 경찰이 소방방재청과의 협약에 따라 현재도 실시간으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정보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로서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통신회사로부터 방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 따라서 현행법의 활용과 경찰의 수사 관행 및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 우려의 경계선 상에서 경찰에 대한 위치정보의 제공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 하여야 하며,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아울러 마련되어야 합니다.

- 개정안은 인권침해 소지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본인의 긴급구조 요청에 대해서는 경찰로 하여금 위치정보를 획득할 권한을 주되, 납치, 유괴 등 긴급한 상황 및 범죄 대상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본인에게 위치정보 수집사실을 통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본인이 아닌 목격자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른 위치추적의 경우, 현행법과 기존의 소방방재청과의 협약 및 업무지원을 우선 활용하고, 112신고시스템의 개선을 검토하거나 법원의 수색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여 경찰의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29조 제6항에서 '위치정보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 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지의 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아닌 수사기관이 되어야 하고, 위반시 벌칙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제29조 제8항에서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 제29조 제8항에 더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음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제29조 제9항에서는 '경찰관서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위치정 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 같이 의무적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수집한 위치정보는 목적 달성시 즉시 파기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위반 시 벌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사후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즉시 파기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

한국의 보수, 그리 만만하지 않다

글 _**구영식** 〈오마이뉴스〉 기획취재팀장

몇 년전 '한국의 보수와 대화하다'라는 6개월 장기기획물을 맡은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당시 대학과 노동, 종교, 언론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수인사들을 적지 않게 만났다. 그 때의 취재인연으로 신지호 등 뉴라이트 핵심인사들과 친분도 생겼다. 그래서 누군가는 필자에게 "뉴라이트 전문기자"라는 애칭까지 붙여주었다. 당시 필자의 관심은 온통 '한국 보수의 진화'에 쏠려 있었다. 한국의 보수가 진화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보수의 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알고 싶었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보수와 대화하다'는 진보가 먼저 보수에게 말을 거는 작업이었다.

필자는 당시 취재를 통해 한국의 보수가 진화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느꼈다. 당시로서는 뉴라이트의 출현이 대표적이었다. 그들만 하더라도 대화가 가능한 합리적 보수로 느껴졌다. 옛날에는 보수라고 하면 한물간 60~70대가 주축이 됐지만, 이제는 교수, 의사, 변호사, 시민운동가 등 젊은 전문가 그룹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상적 논리를 갖춘 전향그룹도 대거 등장했다. 특히 랭키닷컴 인터넷신문분야 20위권에 보수성향 인터넷신문들이 5~6곳이나 포진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새롭다.

이들은 과거 진보세력처럼 종횡으로 결집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집은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한 강한 열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당연히 지난 10년간 지속된 민주파 정부의 집권을 저지하겠다는 현실적 목표가 설정됐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해 보수파 정부로 정권을 교체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총선에서는 한국 보수의 진화를 주도했던 뉴라이트 세력의 일부가 국회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신보수시대'가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신보수시대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1년차인 지난

지난 2008년 총선에서는 한국 보수의 진화를 주도했던 뉴라이트 세력의 일부가 국회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신보수시대'가 열리는 듯했지만 신보수시대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1년차인 지난 2008년 몇 개월간 지속된 광우병 촛불집회로 인해 종언을 고하기 시작했다.

2008년 몇 개월간 지속된 광우병 촛불집회로 인해 종언을 고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 내내 치명적인 트라우마로 작용했다. 이후 총리실을 통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루어지는 등 그동안 소외받아왔던 공안세력의 목소리가 커져갔고,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이 질식당하거나 억압당했다. 서구사회에서 20세기 초에 마무리됐던 '자유권 논쟁'이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다시 재현되는 퇴행이 진행됐다. 심지어 '이명박 독재정권'이라는 구시대 운동권의 언어까지 등장했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가 자멸할 듯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자멸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보수는 '몰락'이 예상됐던 19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얻으며 기사회생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이러한 '보수 기사회생'의 뒤에는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있었다. 하지만 진보진영은 박 전 위원장을 '독재자의 딸'로만 치부해왔다. 한국사회에 짙게 드리워진 '박정희 향수'로 권력을 얻었을 뿐이지 '자수성가형 정치인'은 아니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유신공주'니 '수첩공주'니 하며 경멸적 시선으로 박 전 위원장을 쳐다봤다. 야당의 대선주자 중 한명인 손학규 전 민주통합당 대표는 최근 "박근혜가 집권하면 신공포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두려움을 동원해 자기 정치세력의 문제점을 피해가는 수법이다. 필자는 이런 식으로만 박 전 위원장을 바라보는 진보진영에서 '치명적 한계'를 강하게 느낀다.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진보개혁진영은 한목소리로 "이제는 박근혜를 잡아야 한다"고 얘기한다. 물러가는 이명박 정부 비판에 목매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반MB' 혹은 'MB심판론'에 경도돼 있던 진보개혁진영이 뒤늦게마나 이런 정세판단을 내놓은 것은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박정희 비판 프레임'만 가지고 박 전 위원장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이다. 이는 진보진영이 여전히 '민주 대 반민주'라는 낡은 구도에 집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의 과거가 그의 현재를 만드는 데 작용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과거에만 매몰된 채 그의 '현실'과 '미래'를 새롭게 해석해 공략하지 않는다면 올 대선도 어렵다. '신보수파 정부 2기'가 들어설 수도 있다. 민주파 정부 10년 동안 끊임없이 진화해온 한국의 보수가 그리 만만하지 않다.

'미래'를 새롭게 해석해 공략하지 않는다면 올 대선도 어렵다. '신보수파 정부 2기'가 들어설 수도 있다. 민주파 정부 10년 동안 끊임없이 진화해온 한국의 보수가 그리 만만하지 않다.

한미FTA 투자자국제분쟁(ISD)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글 _민변 외교통상위원회

민변은 한미 FTA 투자자 국제분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해당 자료(대법원의 검토의견)를 제공 받았다. 그 경과와 해당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내용: 대법원이 2006년 한미FTA투자자 국제 분쟁(ISD)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 (12.4.17)

정보공개 부존재 통지서

정보부존재사유: 현재 법무부는 귀하가 정보공개 청구한 의견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법원에서 법무부에 위 의견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기 바랍니다. (12.4.25)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재통지 공문(정보공개통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재답변

- 법무부는 위 의견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2012.4.26 대법원이 위 의견서 사본을 뒤늦게 발견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이에 법무부는 문서접수번호 등을 통하여 재확인한 바, 2007.1.12 대법원에서 위 의견서를 송부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최초 의견서 보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법무부가 대법원에 의견을 조회한 날짜(2006.6.22)와 회신받은 날짜(2007.1.12)의 차이가 크고, 문서가 전산으로 관리되지 아니하여 검색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청구내용도 2006년 대법원이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공개청구였습니다.
- 보도를 통하여 위 의견서 문서번호를 확인 후, 제출된 의견서를 발견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이를 공개합니다. (2012.5.1)

–한·미 FTA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와 관련한 검토의견–

– 법원행정처 –

Ⅰ 투자분쟁해결절차 관련 주요 내용

1. 「투자자 국제 제소제」 도입

- 체약국의 개인 투자자는 다른 체약국이 협정상 투자규정 및 국영기업에 관한 관련 규정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체약국에 대하여 이로 인해 입은 손해나 손실을 배상·보상하도록 하는 국제중재청구를 할 수 있는 「투자자 국가 제소제」를 도입.

- 요건
  - 당해 투자자가 그 위반사실과 이로 인한 손해나 손실의 발생을 처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분쟁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의 제소에 앞서 먼저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할 것이 요구됨.
  - 분쟁 투자자 개인은 ① 협정에 따른 중재에 서면으로 동의하고, ② 당해 청구와 관련한 다른 행정심판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의 구제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할 것이 요구됨.

- **절차**
  - 분쟁 투자자는 중재 회부 90일 전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분쟁 당사국에 통지하여야함.
  - 분쟁 투자자는 분쟁 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중재청구를 할 수 있음.
  - **중재기관** : 한미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동 협약에 의 하여 설치된 ICSID(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가 중재기관이 됨.

2. 실체 규정 마련

- **「투자자 국가 제소제」를 위한 실체 규정 마련(초안 '투자' 제6조, 부록B)**

- 수용(expropriation)의 요건 및 제한
- 수용에 대한 보상

- 보상의 대상이 되는 수용의 범위를 '수용 또는 국유화와 같은 조치(measures equivalent to expropriation or nationalization)로 제한

  ※ 북미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NAFTA에서는 수용의 범위를 '수용 또는 국유화와 유사한 조치'(measures tantamount to expropriation or nationalization)로 모호하게 규정하였다가 수용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등 여러 해석적 논란을 야기하였음.

- 직접 수용(명의 이전, 압류 등)이나 간접 수용(명의 이전, 압류 없이 직접 수용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는 것)시 국가는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반영한 가액을 보상하여야 함.

- 국가의 행위가 간접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별로 심사하여 판단
  - 정부 조치의 성질이나 경제적 영향
  -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 침해 정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보건, 안전, 환경 등 공공복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약국의 합법적이고 비차별적인 조치는 간접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함.

Ⅱ 검토 의견

1. 「투자자 국제 제소제」에 대하여

가. 의의

- FTA 체약국간 분쟁해결절차와는 별도로 투자자 대 국가간 투자분쟁해결절차(투자자 국가 제소제도)를 두는 것은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의 사유 재산이 투자 유치국 정부의 부당한 차별 대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① 투자 유치국 국내법원이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② 정부간 교섭에 의한 분쟁해결은 외교적 고려가 우선되어 손해가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고려에 따른 것으로서, 외국 투자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투자자 국가 제소제」는 국제투자 분쟁분야에서 대두된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절차인바, 이로 인하여 해당 분쟁에 대한 투자 유치국 국내법원의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포럼(Forum)과 관련하여 새로운 선택권을 추가로 보유하게 하려는 것임.

나. 장점

- **분쟁해결의 공정성 확보 가능**
  - 투자 유치국 정부와의 분쟁에서 분쟁 당사자인 해당국의 국내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심리 및 결정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국내법원이 아닌 국제법정에서 투자분쟁 해결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 형식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투자 유치의 활성화 및 자국민 보호 가능**
  - 국가는 해외에 투자를 하는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고, 외국 투자자의 자국내 자본유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기존의 국가 대 국가간 분쟁이 초래하는 정치, 외교적 파급 및 비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음.

다. 문제점

(1) 주권의 침해 가능성

- 「투자자 국가 제소제」의 도입으로 국제중재기구가 투자 유치국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규제 조치에 간섭하고, 이러한 분쟁에 관하여 국내사법부가 관여할 여지가 없게 되어 국가의 주권 또는 사법권이 침해될 수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약은 조약의 인준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가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에 따르는 것으로, 국가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주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 또한 「투자자 국가 제소제」를 두는 경우 외국인이 자국민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게

되어 평등권에 위배될 우려(소위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과거에는 남미 등 개발도상국이 국제법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에 반대하여 이러한 견해를 취하였지만, 현재에는 오히려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 역차별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미국 연방의회는 2002년 무역촉진권한법(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을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보다도 더 큰 권리를 외국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일이 없이 행정부가 투자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제약을 두었음.

(2) 중재청구 대상에 사법부의 재판이 포함되는 문제

- 「투자자 국가 제소제」 하에서는 국내사법부의 재판도 중재청구의 대상이 됨으로써 법적 불안정 및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최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투자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미국의 재판 절차 또는 판결이 중재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정한 사례(Loewen v. United States 사건 등) 가 있음.
  - 위 Loewen 사건 이후 미국 NGO나 의회 내에서도 NAFTA의 분쟁해결기관이 미국 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음.

- 사법부의 재판이 무차별적으로 중재청구 대상이 될 경우에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판을 중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나 대상을 제한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3) 국가의 공공정책 왜곡 문제

- 「투자자 국가 제소제」 하에서는 국제중재재판부가 투자 유치국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규제 조치에 대한 평가 및 심리를 하게 되는바, 정부의 각종 정책 등이 국내사법부가 아닌, 중재재판부에 의하여 판단됨으로써 정책이 왜곡되거나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최근 미국에서도 NAFTA 관련 투자분쟁해결절차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연방의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정부의 향후 FTA 체결 협상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였고, 그 후 체결된 미·칠레 FTA에서는 공중건강, 안전 및 환경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은 간접 수용을 구성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게 됨.

  ※ **미국·칠레 FTA** :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중 건강과 안전 및 환경 등과 같이 공공복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약국의 합법적이고 비차별적인 조치는 간접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한미 FTA 초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미·칠레 FTA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됨으로써 「투자자 국가 제소제」 로 인한 국가의 공공정책 왜곡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임.

(4) 중재절차의 투명성 문제

- 종래 NAFTA의 투자분쟁해결절차는 서면 또는 구술심리 절차가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 이러한 지적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NAFTA의 중재 절차의 투명성의 문제는 각 체약국 사이에 중재재판부의 결정 및 심리절차 공개 등을 합의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음.

- 최근 중재절차의 투명성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으로는 제3자의 절차 참가, 상소 문제 등이 있음.

- 미·칠레 FTA에서는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법률의견서 제출 권한 부여.
  - 당사자의 제척, 기피신청 제도 도입
  - 심리절차 및 제출된 모든 서류의 공개
  -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각 체약국은 중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할 상소 기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구를 설치할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

- 한·미 FTA초안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미·칠레 FTA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됨으로써 중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 될 수 있다고 보임.

(5) 기타

- 한·미간 투자액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자 국가 제소제」는 주로 미국투자자들의 보호장치로 기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라. 검토

- 미국은 2006. 3. 현재 47개국과 양자투자협약을 협상하여 현재 40개국과 사이에 그 협약이 발효 중인바, 그 40개국에서 제기한 「투자자 국가 제소제」에 따른 소송은 없음. 미국에 대하여는

오로지 NAFTA에 따른 「투자자 국가 제소제」에 의한 청구만이 있을 뿐이고, 그것도 모두 캐나다 투자자가 제기한 것임.

- 다른 국가 투자자의 소송제기건수가 적은 이유는 그 협약 대부분이 개발도상국가와 체결한 것이고, 개발도상국가의 투자자들이 미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여건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임.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한미간 FTA의 투자분쟁해결절차에서 미국 투자자의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중재청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제소에 따른 대응 등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미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재청구 대상에 사법부의 재판을 배제할 수 없다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임.

- 반면 「투자자 국가 제소제」의 도입으로 한국은 해외에 투자를 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외국 투자자의 자국내 자본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세계각국이 체결한 FTA에서 「투자자 국가 제소제」가 대부분 도입되어 있는 상황 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

- 결론적으로, 한미 FTA에서 「투자자 국가 제소제」의 도입 여부는 도입할 경우의 장점 및 문제점, 한미간 거래 규모 및 상황, 외국의 FTA체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투자자 국가 제소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중재청구 대상에서 사법부의 재판은 배제하는 등 중재청구의 대상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미연에 그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고, 「투자자 국가 제소제」에 따른 분쟁해결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2. 실체 규정에 대하여

- 초안은 「투자자 국가 제소제」를 위한 실체 규정으로 수용(expropriation) 또는 국유화(nationalization)의 종류, 요건 및 제한, 수용할 경우의 보상 기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각종 조약례는 간접 수용을 직접 수용과 함께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간접 수용에 대한 보상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양자투자협정이나 칠레, 싱가포르, EFTA등 5개국과 체결한 FTA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내용임.

- 특히 초안은 보상 대상이 되는 수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공공보건, 안전, 환경 등 공공복리에 관한 규제적 조치를 간접 수용에서 제외하는 등 수용의 범위나 요건 등을 좀 더 구체화하였음.

- 북미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NAFTA)이 수용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터잡아 그 후 체결된 미·칠레 FTA, 미·싱가포르 FTA에서는 수용의 범위나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외국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에서 국가의 책임이 완화된 측면이 있었음.

- 간접 수용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되기에 충분하지는 않으나, "공공보건, 안전, 환경 등 공공복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약국의 합법적이고 비차별적인 조치는 간접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것은 종래 국제중재재판소 등의 판례와 학설에 부합하는 것으로 발전적으로 판단되고, 다만 공공복리의 목적에 열거된 위 사항이 예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위 한미 FTA 초안은 NAFTA 규정을 개선하여 반영한 미·칠레 FTA, 미·싱가포르 FTA 규정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된 것으로서 대체로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 다만 수용보상 대상이 확대되는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용에 대한 보상체계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글 _**강지웅** MBC 노동조합 사무처장

들어가는 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5월 28일 부처님 오신 날) 기준으로 MBC 파업이 120일째입니다. 지난 1월 30일 MBC 공영성 회복과 김재철 사장 퇴진을 내 걸고 MBC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간 지 무려 넉 달이 지난 것입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파업 100일째를 맞아 MBC 구성원들은 과거 불공정 보도로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것을 반성하는 한편 100일간의 파업으로 제대로 된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죄하는 의미로 모두가 땅바닥에 엎드려 100배를 드렸습니다. 현재 여의도 공원에서는 MBC 뿐만 아니라 KBS, YTN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투쟁중입니다.

MBC를 비롯해 KBS와 YTN, 연합뉴스 등 국내 유수의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총파업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요구는 똑같습니다. 정권이 심어놓은 낙하산 사장들을 몰아내고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파업 100일을 넘긴 지금 이 시점에 저희들은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권의 낙하산 사장들이 망가뜨린 언론사들을 되살릴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언론 노동자들이 왜 월급도 못 받고, 징계와 소송의 실제적인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싸울 수밖에 없는지. 지난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소위 공영방송과
언론사들에서 벌어졌는지 모두 똑똑히 기록되고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MBC 노동조합이 처음 파업에 돌입했을 때 저희들을 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냉소적인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정치적인 지형 변화에 편승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정치파업'이 아니냐는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MBC의 공정성을 망가뜨리는데 앞장섰던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들, 일부 부역 간부들도 우리의 파업이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이롭게 하려는 '정치파업'이라며 마타도어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진 것은 오직 진정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KBS, YTN, 그리고 연합뉴스의 언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파업 100일을 넘긴 지금 이 시점에 저희들은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권의 낙하산 사장들이 망가뜨린 언론사들을 되살릴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언론 노동자들이 왜 월급도 못 받고, 징계와 소송의 실제적인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싸울 수밖에 없는지. 지난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소위 공영방송과 언론사들에서 벌어졌는지 모두 똑똑히 기록되고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여기 이 기고문은 앞으로 바로 잡아져야 할 무수한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과거 2년간의 사태들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왜 MBC의 언론 노동자들이, 기자와 PD들, 경영과 기술 직종의 노동자들까지 이 긴 시간을 인내하며 투쟁하는 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비적인 기록입니다.

PD수첩의 무력화

지난 2년간 PD수첩의 역사는 3가지 키워드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보복인사입니다. 두 번째는 사전검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불방조치입니다. 이 세 가지 수단으로 정권의 낙하산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들은 정권의 눈엣가시처럼 여겨졌던 PD수첩 무력화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도표를 보시면 지난 2011년 PD수첩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011년 상반기 PD수첩 아이템	KBS 〈추적 60분〉 주요 아이템
3/01 구제역 파동	
3/08 전세금 사기	
3/15 서울대 음대교수 상습 폭행 사건	
3/22 르포 전세대란	
3/29 한국원전 안전한가?	
4/05 태안기름유출 사고 쥐꼬리 보상	
4/12 사랑의 교회 신축 관련 논란	
4/19 쌍용 해고자 2년	
4/26 뉴타운, 출구는 없는가	
5/03 재향군인회 불법 수의계약	
5/10 패스웨이 유학 프로그램 분석	5/11 등록금 투쟁, 반값 등록금
5/17 프랜차이즈 창업 허와 실	
5/24 불 방	
5/31 부산저축은행	
6/07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파주 운정지구 개발중단	
6/14 건설사 PF 부실	
6/21 위기의 중소기업	
6/28 사립대 법인카드 사용 문제	7/06 고엽제 파문의 진실
7/05 지자체 세금 낭비 백태	7/13 긴급점검, 4대강 안전한가
7/12 교회매매 실태	
7/19 재벌의 일가친척 밀어주기	7/27 유성기업 파업과 야간노동의 문제
7/26 병 키우는 군병원	
8/02 면죄부 받는 교사 성폭력	
8/09 상가 재계약의 함정	8/10 희망버스와 한진중공업
8/16 병원 영리법인화의 문제	
8/23 한강변 개발 문제	9/07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
8/30 링스헬기	

PD수첩 제작진이 모두 11명이므로 11명 중에서 6명을 갈아치운 것은,
그것도 중견PD들을 교체한 것은 거의 프로그램의 막을 내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2011년 상반기 PD수첩 아이템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단히 미시적인 아이템에 머물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정부 여당, 검찰 등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노동운동에 대한 취재 아이템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KBS의 시사프로그램인 〈추적 60분〉의 경우 그래도 간간이 사회적 이슈를 취재하여 방송에 내보낸 반면, PD수첩에선 사회적 핫 이슈에 대한 방송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PD수첩 탄압사

위에 적시한 PD수첩의 무력화 과정에서 많은 PD들이 강제 인사 조치를 당했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작년 3월 PD수첩을 제작하는 시사교양국의 국장으로 부임한 윤길용 국장은 부임하자마자 PD수첩 팀에서 6명의 PD들을 축출했습니다. 이 중에는 2010년 〈검사와 스폰서〉, 〈4대강〉 취재로 유명한 최승호 PD도 포함돼 있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이 모두 11명이므로 11명 중에서 6명을 갈아치운 것은, 그것도 중견PD들을 교체한 것은 거의 프로그램의 막을 내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파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임의로 진행한 조직개편으로 시사교양국이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파업 중인 시사교양국 PD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정말 무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사 대상 PD들 중 아무도 PD수첩을 떠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고 그 누구도 자신의 의사를 피력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윗선'의 전격적인 결정으로 단행된 기습 인사였습니다.

시사교양국 PD들은 이 인사를 'PD수첩 죽이기 인사'로 규정하고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윤길용 국장은 이에, 최승호 PD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PD수첩 구성원들이 원하면 PD수첩으로 복귀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난 4월 30일자로 시사교양국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파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임의로 진행한 조직개편으로 시사교양국이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파업 중인 시사교양국 PD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정말 무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작년 5월 이우환, 한학수PD가 프로그램 제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제작 부서로 강제 전보 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명백히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이 자신들의 방침과 지시를 거부하면 어디든 보내버리겠다는 무언의 협박을 가한 셈입니다. 두 PD의 전보조치와 함께 예정됐던 PD수첩 방송은 불방처리 됐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취재하려 했던 서정문PD는 결국 취재를 중단당하고 타 부서로 전보됐습니다. 'MB 무릎기도 파문'을 취재하려 했던 전성관PD도 취재를 중단당하고 타 부서로 전보됐습니다.

PD수첩 불방 아이템 목록

- 남북경협 중단 1년 점검
- 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 무릎기도 파문
- 한상대 검찰총장 의혹 점검
- 복수노조 시대, 삼성 노조 간부 해고 파문
- 후쿠시마 원전과 국내 원전
- 한진중공업 사태
- 미군 고엽제 파문
- 4대강 공사현장 잇따른 사망 사고

작년 9월 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무죄판결과 관련 '사과 방송'을 하고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것은, 정권의 낙하산 김재철 사장이 PD수첩 탄압의 정점을 찍은 일이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경영진과 국장의 제지로 김영호PD가 취재한 '한미 FTA 문제'가 불방처리 되었습니다. 파업 기간중이었지만 김영호PD는 비조합원 신분으로 취재를 해서 방송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불방지시를 내렸습니다.

작년 9월 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무죄판결과 관련 '사과 방송'을 하고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것은, 정권의 낙하산 김재철 사장이 PD수첩 탄압의 정점을 찍은 일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언론자유의 측면에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해주었음에도, 김재철 사장은 사과방송을 강행한 것입니다.

MBC는 사고(社告)에서 〈문화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당시 문화방송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고 얘기함으로써, PD수첩의 신뢰도에 금이 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봄 정부의 부실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규탄하기 위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난 '촛불시위' 시민들을,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부화뇌동한 어리석은 군중으로 도매금으로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김재철 사장이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함을 본인이 직접 입증한 극명한 사례입니다.

게다가 PD수첩 제작진들을 '정직' 등의 중징계에 처함으로써 MBC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당시 뉴스데스크 사과방송을 보도했던 기자가 그 후 게시판에 자신의 심경을 올린 글입니다.

... 며칠 전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정직과 감봉이란 중징계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처음 듣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제가 동의한 것은 '시청자들의 신뢰회복' 이었지,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중징계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MBC보도와 관련해 해마다 몇 건씩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을 내리지만, 그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중징계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그 날의 제 뉴스데스크 리포트는 일각의 주장처럼 '시청자를 위한 사과'가 아니라 '권력을 향한 구애'로 낙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社告를 정리해 리포트하는 저 같은 기자가 ...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김재철 사장과 MBC 경영진은
작년 7월 '고정출연제한심의' 규정을 신설하여
MBC에 출연하는 모든 출연자들(사내 구성원들 포함)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고정출연제한심의 규정 제정

김재철 사장과 MBC 경영진은 작년 7월 '고정출연제한심의' 규정을 신설하여 MBC에 출연하는 모든 출연자들(사내 구성원들 포함)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한 마디로 표현하면,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자기 견해를 표명했던 모든 사람들은 만약 MBC에 출연하고자 한다면 MBC의 심의와 검열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측의 일방적인 심의와 검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출연이 거절되거나, 이미 출연중일 경우는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규정입니다.

고정출연제한 심의 규정 2011년 회사가 만든 최초 안

제56조(판단기준)
④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하는 발언이나 행위

이 규정의 신설은 MBC 출연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식 퇴출을 사후적으로나마 정당화하고, 앞으로 제작진들이 출연자 섭외나 선정 시에 알아서 자기검열토록 하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MBC 제작진들은 출연진 선정에 있어서 이 규정 때문에 심한 위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그들 중에는 MBC 출연거부를 선언한 이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규의 제정은 라디오 MC였던 김미화씨의 퇴출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시사교양국에 이어 라디오본부 PD들에게 가해졌던 무자비한 탄압은 정권이 불편해하는 출연자들을 강제 퇴출시키려는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들의 무리한 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작년 4월 26일 MBC 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C를 맡고 있던 김미화씨가 강압 사퇴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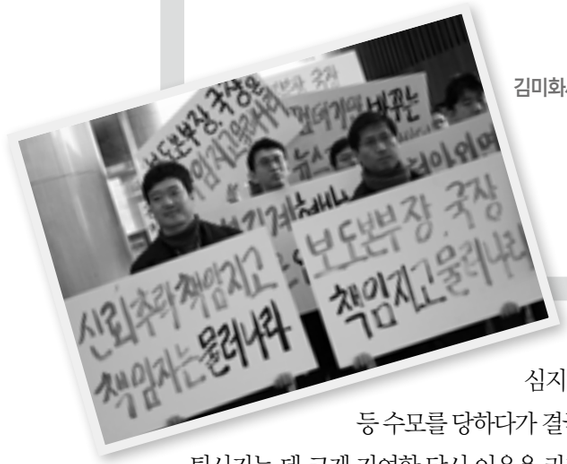

김미화씨를 사퇴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당시 이우용 라디오본부장은
"KBS 블랙리스트 파문에 따른 신뢰도 저하"가
교체 시도 이유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미화씨는 김재철 사장에게 직접 사퇴 권유까지 받는 등 수모를 당하다가 결국 자진하차 형식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김미화씨를 사퇴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당시 이우용 라디오본부장은 "KBS 블랙리스트 파문에 따른 신뢰도 저하"가 교체 시도 이유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작년 5월 시사평론가 김종배씨가 퇴출당했습니다. 김종배씨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방송 1회 출연부터 시작해서 무려 10년이 넘게 출연한 핵심 출연자입니다.

김종배씨의 교체 이유에 대해 당시 이우용 라디오본부장은 "조선일보 관련 오보 소송(1998년 미디어오늘 재직 당시의 기사)"과 "프레시안 기고활동"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관련 오보 소송은 2006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매체인 프레시안이 '진보언론'이라는 이유로 기고활동을 문제 삼은 것은 김종배씨의 교체사유가 철저히 '정치적'임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 7월 김여진씨가 출연이 내정돼 있다가 앞에 언급한 〈고정출연제한심의〉규정의 적용을 받아 출연이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여진씨는 지난 6월 27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진보 vs. 보수 토론 코너의 참여자로 제작진에 의해 선정됐고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됐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인 6월 29일, 임원회의에서 김여진씨 출연을 무산시키기 위해 "보도자료가 잘못 나간 것"이라고 발표하고, 7월 1일 잘못된 홍보의 책임을 물어 라디오 및 홍보실 책임자를 경징계했습니다. 이후 2주간 이우용 라디오본부장은 김여진씨의 하차를 제작진에게 강요했고, 7월 13일, 〈고정출연제한심의〉 사규가 발표되자, 사규를 들어 김여진씨를 공식하차시켰습니다.

김여진씨의 경우는 출연 예정됐던 코너의 성격이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인 논객들이 나와서 각자 진보와 보수를 대표해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따라서 자기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줘야 하는 코너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퇴출압력과 사규 적용으로 끝내 퇴출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진중공업 사태 관련 발언 등 평소에 김여진씨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을 활발히 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 퇴출 이유는 짐작이 갑니다.

김여진씨의 퇴출로 〈고정출연제한심의〉 규정이
시민사회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규정을 일명 김여진 법 또는 '소셜테이너 법'이라고 불리며
MBC의 조치에 크게 항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윤도현씨가 하차했고 김어준씨도 진행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불과 6개월여 사이에 라디오에서 퇴출된 진행자와 출연자가 5명이나 됩니다. 모두 '좌파'라는 낙인이 찍혀 퇴출당했습니다.

김여진씨의 퇴출로 〈고정출연제한심의〉 규정이 시민사회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규정을 일명 김여진 법 또는 '소셜테이너 법'이라고 불리며 MBC의 조치에 크게 항의했습니다. 결국 소셜테이너법 제정 이유가 김재철 사장과 MBC 경영진의, 더 나아가서 청와대와 정부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인들은 아예 방송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속내을 분명히 드러낸 좋은 사례인 셈입니다.

소셜테이너법 제정 이후 이 조치에 반발하는 시민 사회단체와 지식인 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를 포함한 수십 명의 지식인들이 MBC 출연거부를 선언했고(조국, 공지영, 김창남, 고재열, 김작가, 김용민, 김규항, 여균동, 지승호, 탁현민, 김조광수, 선대인, 진중권, 우석훈 등), 언론노조와 MBC 노동조합이 준비 중인 소셜테이너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 원고인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이외수, 공지영, 김여진, 문성근, 강풀, 노정열, 홍세화, 고재열, 김조광수, 고영재, 제정임, 최영묵, 김창남, 홍성태, 임옥상, 김용민, 김규항, 지승호, 김작가, 변정수, 탁현민, 우석훈, 여균동, 손혁재, 김정환, 황진미, 정철, 김종배, 안도현 등).

김재철 사장의 연임이 확정된 후 부임한 이우용 라디오본부장. 그가 부임하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이 민요전문PD로 그 분야에 일가를 이룬 최상일 PD를 라디오본부에서 쫓아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일 PD는 MBC 노동조합 초창기 창립멤버로 MBC 공정방송 사수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은 〈고정출연제한심의〉 규정에 약간의 윤색만 가한 후 지금까지도 이 사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본부 탄압사

작년 3월. 김재철 사장의 연임이 확정된 후 부임한 이우용 라디오본부장. 그가 부임하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이 민요전문PD로 그 분야에 일가를 이룬 최상일 PD를 라디오본부에서 쫓아낸 일이었습니다. 1981년에 입사해서 정년이 몇 년 남지도 않은 PD를 "조망도 하고 새로운 트렌드도 배우고, 돌아와서 PD로 마지막 불꽃을 태워보라"는 황당한 이유를 들이대어 타 부서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자신과 입사 동기이지만 성향이 맞지 않아서 라디오본부에서 전횡을 일삼는 데 걸림돌이라고 느낀 게 이유일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 입니다. 왜냐하면 최상일 PD는 MBC 노동조합 초창기 창립멤버로 MBC 공정방송 사수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김재철 사장의 공영방송 망가뜨리기의 정점은 〈뉴스데스크〉 무력화일 것입니다.
지난 2년간 김재철 사장 치하에서 보도가 누락되거나
왜곡 축소된 사례는 큰 건만 취합해도 40여 건 가량 됩니다.

그리고 뒤이은 라디오본부 정기인사에서 주요 시사프로그램에 시사프로그램 연출경험이 전무한 80년대 초반에 입사한 고참 PD들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이후 김미화씨부터 시작한 출연자 퇴출 소동이 이어지면서 라디오 프로그램 경쟁력 약화와 공영성 후퇴를 염려한 라디오 PD들의 저항이 거세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 8월 경력직 공채를 통해 갑자기 3명의 경력직 사원들을 뽑았습니다. 여기에 계약직 1명과 장애우 특채자 1명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5명의 신규 충원이 이뤄진 것입니다. 평소에 1년에 1명 남짓 공채로 뽑아 오던 관행으로 보면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라디오 PD들은 경력직 공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순수한 충원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저의가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영진에 반발하는 기존 라디오 PD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메우려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돼 버렸습니다.

작년 8월 이우용 라디오본부장은 합당한 근거 없이 2명의 PD에게 최저 평가등급을 부과했습니다. 두 PD 모두 청취율 수위를 다투는 프로그램의 연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의 한 PD(김현수 PD)는 결국 라디오본부에서 축출되어 타 부서(심의실)로 전출돼버렸습니다.

라디오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횡에 대해 반발하는 PD들 중 소위 '주모자급'들을 추려내 라디오본부 밖으로 모두 쫓아내겠다는 게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의 생각인 듯 싶습니다. 지난 4월 30일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들이 파업 와중에 단행한 무리한 조직개편에서 〈라디오본부〉는 그동안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라디오제작국〉으로 격하되면서 〈편성제작본부〉에 소속돼버렸습니다. 김재철 사장의 라디오본부 구성원들에 대한 몽니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MBC 뉴스 왜곡 보도 사례

지금까지 PD들에 대해 행해진 탄압사례들에 대해 열거했지만, 김재철 사장의 공영방송 망가뜨리기의 정점은 〈뉴스데스크〉 무력화일 것입니다. 지난 2년간 김재철 사장 치하에서 보도가 누락되거나 왜곡 축소된 사례는 큰 건만 취합해도 40여 건 가량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후배들이 어떻게 취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보수단체 집회에서도 천대받고, 진보단체 집회에서도 쫓겨나니
이제 우리는 어느 한쪽에도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언론사로 거듭난 것입니까?

작년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 크레인 장기농성사태. 뉴스데스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큰 화제를 모았던 〈희망버스〉도 뉴스데스크에서는 단신으로 처리됐습니다. 위키리크스 보도도 뉴스데스크에선 누락됐습니다. 대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판결을 왜곡 보도한 것은 다시 언급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특히 작년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자행된 왜곡 보도는 가히 뉴스왜곡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당 측 후보에게 불리한 이유는 누락 시키거나 지연 보도됐고,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사안은 침소봉대됐습니다. MBC 노동조합 민실위 보고서에 따르면 양적으로도 중립성을 상실했습니다. 여당 후보인 나경원 후보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157초 방송된 반면 야당 후보인 박원순 후보에 대해서는 3배가 넘는 469초 가량 부정적인 보도가 행해졌습니다. 당시 MB 내곡동 사저 문제가 불거졌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스크의 판단으로 의혹 제기는 없이 단순히 청와대 해명을 전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기자가 작성해서 송출한 기사의 중요 문구를 데스크가 임의로 삭제하는 일도 자행됐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소방관과의 전화통화 해프닝과 관련해서는 기자가 취재를 마치고 기사를 송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스크가 보도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타사가 녹취된 음성파일을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MBC 뉴스에선 기사를 찾아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파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총선 기간에도 왜곡 보도는 여전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부산에서 손수조 후보를 돕기 위해 카퍼레이드를 한 것은 부산 MBC가 영상을 특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누락시켰습니다. 총선의 가장 핫 이슈였던 〈민간인 사찰〉 이슈도 MBC 뉴스에서는 축소 누락 보도됐습니다.

작년 11월 한미FTA 관련 보도는 우리 기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날치기 처리로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했지만 MBC 뉴스에서는 한미FTA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만 보도했고, 반대 집회와 시위는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결국 MBC 로고를 붙이고 취재하던 영상취재기자들이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욕설을 당하고 쫓겨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음은 한 기자가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이 숱한 오욕의 기록들을 접하면서 나는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했나,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말에 의존해 해결하려 했고, 행동이 뒤늦었다는 비판.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 분위기는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제 취재한 선후배들이 가져갔던 카메라가 밀쳐지고 트라이포드(삼각대)는 걷어차였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 걷어차이고 맞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젯밤에는 우리 회사 로고가 새겨진 ENG카메라를 들고는 도저히 취재가 불가능하여 아예 로고 없는 6mm 소형캠코더를 들고 가서야 근접 취재가 가능했습니다.
회사 차량은 시민들의 항의때문에 근처에 못 대고 (차량기사)형님께 아예 시청에 숨어계시라 했고요. 딱 5개월 전.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KBS 취재기자가 폭행당했다는 글이 보도국 내부게시판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이러다간 곧 맞으며 쫓겨난다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요지의 글을 썼다가 올리진 못하고 텍스트만 저장해두었었죠. 그저 등 뒤로 쌍욕 얻어먹는 수준으로, 이대로 끝나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정말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보도본부장님, 보도국장님, 보도국 보직부장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후배들이 어떻게 취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보수단체 집회에서도 천대받고, 진보단체 집회에서도 쫓겨나니 이제 우리는 어느 한쪽에도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언론사로 거듭난 것입니까?

위 글은 게시판에 게시되자마자 보도국장의 지시로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기자회를 중심으로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의 경질 요구가 나왔습니다. 29기(1995년 입사 기자) 이하 평기자 125명 가운데 불신임 108표, 신임 9표, 기권 8표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불신임이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무시로 일관했고 결국 기자회는 제작거부를 결의하고 단행한 것이었습니다.

아래 글은 당시 제작거부를 앞두고 박성호 기자회장이 기자회보에 올린 글입니다. 박성호 기자는 MBC 아침뉴스 앵커를 맡고 있다가 제작거부 사태로 앵커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후 사측으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MBC 기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쌓여 있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파업에 돌입하면서 MBC 노동조합은 이번 파업의 슬로건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MBC,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정권의 방송, 부역하는 방송에서 진정 국민과 시청자의 이익에 복무하는
참 공영방송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의 표현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행동, 느닷없습니까?”

먼저 참회합니다. 이 숱한 오욕의 기록들을 접하면서 나는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했나,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말에 의존해 해결하려 했고, 행동이 뒤늦었다는 비판.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비판, 안에서 후배들로부터 받는 것 당연하고, 밖에서 시청자들로부터 받는 것 당연합니다.
허나, 회사 측이 특보를 통해 밝혔듯 ‘느닷없이’라고 한데 대해서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실린 내용들이 처음 보시는 것들입니까? 대부분 제가 구두로 혹은 기사 스크랩 들고 찾아가, 걱정 어린 눈빛으로 안타까움으로 답답함으로 토해냈던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회사는 ‘느닷없이’라고 합니다.
그 특보를 쓰신 분은 사정을 잘 모르셨나 봅니다. 혹시 임원 분들, 보도부문이 아닌 분들, 그리고 업무에 바쁘신 사장님, 정녕 모르셨나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보에 실린 불공정 사례들을 찬찬히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없습니까? 억지입니까?
기자 한 명이 잘못된 판단이나 큰 낙종을 하면, 선배로부터 데스크로부터 편집회의로부터 그야말로 준엄한 성토를, 때로는 책임 추궁을 당하는 게 우리 조직입니다. 보도 조직은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1년 내내 단순한 실수나 오판으로 보기 어려운, 의도된 외면과 왜곡이 이어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참다 참다 기자들이 일어나 책임지라고 했더니,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냐면서 외려 기자들에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장님, 그토록 사내 질서에 엄정하시다면,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여론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사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애청자들을 실망시킨 죄도 징치하셔야 마땅한 게 아닙니까?
입사 이래 이렇게 총체적인 불공정 보도는 처음 봅니다. 언론인으로서 속된 말로 ‘좌빨’이 문제이듯 ‘수꼴’도 문제입니다. 지금 이념편향적인 보도책임자와 부장, 데스크가 여럿 있습니다. 기자들은 다 압니다. 어린 후배들도 알고 20년 넘게 다닌 선배들도 그것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확신범과 예스맨으로 운영을 하니 뉴스가 잘 되겠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숱한 선배들의 얘기입니다.
기자들 기사 물 먹으면 책임 물으십시오. 마찬가지로 MBC뉴스라는 배를 이렇게까지 침몰시키고 있는 선장도 책임 물으셔야 합니다. 지도자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곳에서는 어떠한 리더십도,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그렇게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한 문책 없이 무슨 소통을 말하겠습니까?
“다음에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후배들이 나가라고 그러면 그냥 연판장을 다 돌려서 나가라고 그러십시오” 사장님, 작년 11월 3일 공방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적쇄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엄한 선배와 똑똑한 후배들로 와글거리는 보도국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업무방해, 손해배상, 가압류, 명예훼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등.
해고자 3명에 정직 이상 중징계자 29명.
지난 5월 18일 집행부 5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습니다.
더 많은 시련이 남아 있겠지만, 공영방송 MBC의 공정성 회복과 그를 위해 정권의 낙하산 김재철 사장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MBC 구성원들의 결의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파업 100일이 넘었습니다.

파업에 돌입하면서 MBC 노동조합은 이번 파업의 슬로건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MBC,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정권의 방송, 부역하는 방송에서 진정 국민과 시청자의 이익에 복무하는 참 공영방송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의 표현이었습니다.

파업에 처음 들어갈 적엔 이렇듯 오랜 기간 동안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번 파업의 가장 주동자는 '김재철 사장'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합니다. 힘들어서 타협하고 싶어질 때마다, 나약해질 때마다 채찍으로 저희들을 담금질해준 분이 바로 '김재철 사장'입니다.

지난 2년. 그가 MBC에 재직하고 있었던 기간 동안 MBC 조직문화는 한 마디로 '비합리'와 '몰상식'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절차마저 무시됐습니다. 언론자유라는 말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자존감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어린 후배들은 정신적으로 깊은 내상을 입었고, 선배 동료들은 이 기가 막힌 현실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지난 100일의 파업 기간 동안에도 되풀이됐습니다. 파업 기간 중에 조합 집행부에게 가해진 민 형사 소송들. 하도 많아 조합 자문 변호사마저 헷갈려하곤 합니다. 업무방해, 손해배상, 가압류, 명예훼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등. 해고자 3명에 정직 이상 중징계자 29명. 지난 5월 18일

집행부 5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사법부도 MBC 파업이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돼왔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검찰 측에선 MBC 파업의 폭력성을 드러나게 하려 애썼지만 불행하게도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MBC 노동조합과 구성원들의 요구가 정당하기에 그 표현방법도 언론인으로서의 자존감과 명예에 벗어나지 않게 행동하려고 애써왔던 결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측의 대응은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5월 16일 권재홍 보도본부장의 해프닝이 이에 해당됩니다. 퇴근길에 기자들이 차를 막고 대화를 요청했을 뿐이었는데, 이를 폭력행위를 당한 것처럼 기자들을 매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MBC 9시 뉴스데스크 첫 머리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해 사실무근임이 밝혀졌지만, 그 후에도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정신적 충격' 운운하며 병원 입원 소동을 벌였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이게 MBC의 현주소입니다. 파업이 100일을 넘어가도, 월급 통장에 0원이 찍혀도, MBC 구성원들이 파업을 접을 수 없는 MBC의 본모습입니다. 우리가 파업을 통해 타파하고 극복해야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이 남아 있겠지만, 공영방송 MBC의 공정성 회복과 그를 위해 정권의 낙하산 김재철 사장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MBC 구성원들의 결의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업일지

1월 30일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공영방송 MBC 정상화와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 돌입
2월 03일	〈공영방송 MBC 노제〉 개최. 명동에서 '공영방송 MBC의 사망'을 알리는 노제 퍼포먼스 개최
2월 07일	〈공정방송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발족 – MBC, KBS, YTN 노조가 참가한 투쟁위원회 발족
2월 08일	김재철 사장 공개 수배 전단 배포 – 파업 이후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김재철 사장을 찾기 위해 전단을 만들어 서울 시내에 배표
2월 09일	〈제대로 뉴스데스크〉 1회 공개 –저화질 공정방송을 추구하는 〈제대로 뉴스데스크〉 첫 공개
2월 10일	회사, 〈김재철을 찾아라〉 전단지 배포건으로 명예훼손 고소 (정영하 위원장, 이용마 홍보국장)
2월 14일	회사, 〈업무방해〉등 가처분신청(민사)
2월 16일	보도국 보직부장 3명, 보직 사퇴 후 파업에 참여
2월 17일	파업콘서트 〈으랏차차 MBC〉 장충체육관에서 개최
2월 21일	20년차 이상 고참 사원 135명 김재철 사장 퇴진 요구 서명
2월 23일	뉴스데스크 최일구, 김세용 앵커 보직 사퇴
2월 24일	김재철 사장, 파업 25일만에 회사 첫 출근 – 확대간부회의에서 강경대응 방침 천명
2월 27일	조합,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7억 사용 의혹 제기 – 명품가방, 화장품, 귀금속, 상품권 등 구입내역 공개 – 특급호텔 2년간 188회 이용 – 회사, 조합 집행부 16명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
2월 28일	회사, 〈법인카드〉 관련 명예훼손 고소
2월 29일	박성호 기자회장 해고
3월 05일	이용마 홍보국장 해고 / 회사, 조합과 조합 집행부 상대로 33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3월 06일	조합, 김재철 사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남부지검 고발
3월 09일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 "(청와대) 임명권자의 뜻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겨레 폭로. 김재철 사장 청와대 낙하산 확증
3월 16일	MBC, KBS, YTN 낙하산 사장 퇴진 축하 파업 콘서트 여의도 광장 개최
3월 21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3인, 김재철 사장 해임안 제출
3월 26일	예능본부 보직자 4명 보직사퇴. 누적 보직사퇴자 30명
4월 02일	정영하 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해고

파업일지

4월 04일	회사, '투표 독려 방송' 외면 결정. – 4월 11일 총선 당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방송 개시 결정. – 국정원, 연예인 김미화씨 사찰 의혹 보도한 〈제대로 뉴스데스크〉에 대해 '소송 하겠다'고 공언
4월 05일	'무한도전' 파업 특별판 공개
4월 07일	파업 기금 마련 벼룩시장 행사 개최
4월 09일	회사, 조합 집행부 등 16명 무더기 징계. 총파업 특보 51호 – '총선보도, 이보다 더 편파적일 수 없다' 발간
4월 12일	집행부를 위한 헌정공연 '으랏차차 정영하' 진행
4월 17일	무용가 J씨 특혜 폭로 기자회견
4월 18일	MBC 기자회, 임시직 기자 무더기 채용 항의 무기한 보도국 농성 돌입.
4월 19일	본사 본부장 및 계열사 임원 선임
4월 20일	회사, 시사교양국 폐지, 라디오본부 국으로 강등 등 보복성 조직 개편 단행.
4월 21일	김재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영등포경찰서 출석조사
4월 24일	보직간부 86명 인사 발령.
4월 25일	조합, 무용가 J씨 특혜 몰아준 김재철을 영등포경찰서에 업무상 배임으로 추가 고발
4월 30일	임시직 기자 채용 면접 실시
5월 01일	이상호 기자의 〈손바닥뉴스〉 폐지
5월 03일	김재철, 무용가 J씨 오빠 해외 지사장 특채 폭로.
5월 08일	**파업 100일**
5월 09일	아나운서 조합원들 홍대에서 1일 호프
5월 17일	뉴스데스크 첫 머리에 '권재홍 앵커' 조합원들에 의해 물리력 행사 당한 것으로 보도. 다음 날 현장 촬영 동영상 공개로 허위사실임이 밝혀짐
5월 21일	집행부 5명(정영하 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편제부위원장) 영장실질심사. 영장 기각
5월 22일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와 충북 오송 인근 아파트 3채 공동 투자 조합에 의해 폭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소 예정.

소수자인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글 _**염형국** 회원

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2011년 제24차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신생 위원회이다. 2012년 4월 30일 현재 총 38명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위원회로 자리잡았다.[1] 1988년 5월 51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민변은 주로 시국사건 변론을 통해 진보적 법률가단체로서의 활동을 하여왔다. 그 동안 민변은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감시, 입법청원과 제안, 사법감시와 공익소송,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 국제연대 등 활동에 매진해왔다. 민변은 사법개혁과 과거청산, 표현의 자유 확대와 시국사건 변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소수자·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문제와 인권침해 문제는 덜 다뤄졌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몇몇 회원들은 2010. 6. 18. 1차 준비모임을 통해 위원회의 대상 주제를 '소수자'로 한정하기로 하고, 준비모임 기간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구를 우선 진행하여 위원들의 소수자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 후, 각 소수자 부분에 대한 연구 및 연대로 그 활동을 확장해가기로 하였다. 3차~6차 모임에 걸쳐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쉽지 않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1차~2차 준비모임에 주도적으로 참석하였던 위원 분들이 회의에 오시지 않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 추대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다.

2차 모임에서 6차 모임에 걸쳐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안에 대한 법안의 틀을 잡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외에도 각 소수자 부분에 대한 연구 및 연대 확장이 필요하였다. 7차 모임 이후 각 부분별 소수자활동가 간담회를 진행하여 소수자의 여러 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부문별 단체와의 연대와 관련연구 및 활동이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회성 간담회가 아니라 각 부분별로 지속적 연대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활동제고가 요청되었으나, 위원들의 회의 참석율 저조로 간단치는 않았다. 그렇지만 정기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을 점차로 확대함과 동시에 회의 후 이어지는 뒤풀이를 통해 결속력을 다졌다.

정식 위원회 인준과 활동

2011년 5월 민변 제24차 총회에서 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모임은 정식 위원회로 승인을 받았다. 정식위원회 승인을 자축하고, 위원들 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2011년 6월 강촌으로 위원회 엠티를 다녀왔다. 이 엠티모임은 소수자위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자리였으나, 희망법의 창립멤버가 확정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희망법의 창립멤버인 서선영·조혜인·류민희·김동현·김재왕·한가람, 이들 6명은 소수자위 회의 뒤풀이와 엠티를 통해 단체창립의 도원결의를 할 수 있었고, 결국 이듬해인 올해 1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공익인권변호사단체로서 출발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공익인권변호사단체의 창립은 비공식적으로 소수자인권위원회의 최대의 성과이자, 소수자인권위원회의 존재가치를 드높인 사건이기도 하였다.

제24차 연도에도 각 소수자 분야별 활동가 초청 간담회를 진행(2011. 12.까지)하였고, 연구 활동으로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발간한 「유럽 反차별 핸드북」(Handbook on Non-Discrimination in Europe)을 위원들이 직접 번역하여 매달 정기회의 때마다 사례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또한 출중한 소수자위 담당 인턴들의 노력에 힘입어 소수자인권 관련 언론 모니터링과 입법 모니터링 그리고 사법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고 정기회의 때마다 검토하였다. 민변에서 주최한 2011 한국인권보고대회에 소수자인권분야 발표를 맡아 진행하였고, 2012 개혁입법과제 중 소수자인권분야에 관한 과제정리에 참여하였다.

위원들의 활동도 점차 활발하여졌는바, 2011년 7월에는 나누리+단체와 연대하여 장서연 위원을 중심으로 세계 에이즈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AIDS)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어서 장서연 위원은 2011년 8월 부산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에이즈대회에 참석하였는데, 대회 참석자들은 대회장인 BEXCO 실내에서 한미 FTA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행진을 하였다. 그런데

1) **소속위원 명단**: 공수진, 김도윤, 김동현, 김석준, 김성진(로1), 김수정, 김재왕, 김영민, 김재왕, 김전옥, 김정아, 김지미, 김한내, 류민희, 류제성, 박은영, 박주민, 박현우, 서선영, 안지훈, 엄태섭, 염형국, 유지은, 유창진, 윤종우, 임애리, 임자운, 장서연, 정소연, 정연순, 조덕상, 조현주, 조혜인, 좌세준, 최정규, 최지은, 한가람, 홍지은 (총 38명)

물론, 이분들이 모두 정기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혹시 본인이 소수자인권위 소속인 줄 모르는 분이 있으셨다면 확인해주시고, 정기회의 때 참석하지 않으셨던 위원님들이 계시다면 한번쯤 소수자위 위원임을 상기 시켜주시기 바란다.

이를 사복경찰이 불법적으로 채증을 하였고, 한 참가자가 항의를 하자 사복경찰들이 그 참가자를 강제 연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 옆에 있던 장서연 위원이 변호사로서 연행이유를 묻자 이번엔 장서연 변호사를 강제 연행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연행하는 경찰에게 연행이유를 물어도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관할서인 해운대경찰서에서 조사하는 형사도 왜 장서연 변호사를 연행했는지 모르겠다며 당황해하면서, 물어볼 것도 별로 없다고 참고인조사만 하고 3시간 만에 풀어주었다. 소수자위에서는 UN이 주관하는 국제회의에서 변호사와 활동가를 연행하는 한국 경찰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2011년 10월부터는 도가니 열풍에 힘입어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의 해결과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염형국 위원과 이소아 위원이 함께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각 정당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다투어 발의하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논의가 무르익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통과시킬 예정이었는데, 2011년 11월 22일 여당이 기습적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 처리하여 국회가 파행되었다. 소수자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물 건너갔나 하고 낙담하였으나, 다행히 12월말에 국회가 다시 열렸고, 결국 2011년 12월 29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설생활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2011년 12월 19일에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였는데,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차별사유 중에 임신·출산 및 성적 지향을 삭제하라고 하는 지속적인 반대가 있어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 쉽지 않았다. 조혜인 위원과 한가람 위원, 장서연 위원 중심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위해 관련 단체들과 함께 노력하여 결국 원안대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는 쾌거를 얻어냈다. 그러나 교육부 측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조례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희망법에서 이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

제25차 년도는 소수자인권위원회의 2년차 활동이 진행되는 시기로 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재정립하고 소수자인권 분야별로 위원들의 전문성 및 활동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소수자인권단체와의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소수자 관련 이슈에 대한 시의적절한 의사표명과 현안대응 활동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내에 차별금지연구팀과 인권조례팀, 장애인권팀을 신설하여 팀별 활동을 강화하려고 한다.

차별금지연구팀은 국내외 반차별 법제·판결 및 진정 모니터링,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상시적인 연대 활동, 소수자 차별 이슈에 적극적인 연대 및 대응활동을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그간 진행해온 「유럽 반차별 핸드북」 사례 스터디를 마무리 짓고, 한국판례에 드러난 반차별법리와의 비교분석, 한국에서의 시사점에 관한 정리 및 연구를 통해 “유럽 반차별 사례연구서”를 2013년 2월 발간할 예정이다. 인권조례팀은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어온 인권 관련 조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인권헌장 제정 작업에 참여하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한 매뉴얼 작업 및 기획진정을 진행하려고 한다. 장애인권팀은 2011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한 기획소송을 진행하며, 장애인법 연구모임 참여를 통한 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을 할 예정이다.

소수자인권위원회의 자랑과 바람

앞서 서술하였듯이 올해 1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공익인권변호사단체가 창립된 것은 소수자인권위원회의 최대의 자랑이다. 앞으로도 소수자인권위원회가 매개가 되어 위원들이 서로 연결되고, 의기투합하여 제2의, 제3의 공감과 희망법이 탄생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바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내가 알기로는’ 노동위와 민생위를 빼고는) 민변 위원회 중에 신입회원이 가장 관심을 갖는 위원회이고, 신입회원 비중이 가장 높은, 민변에서 가장 젊은 위원회이기 때문이다. 기본적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소수자 인권보장과 차별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민변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소수자 인권과 차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겠으나, 관심을 넘어서 직접 참여하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회원이 있다면 누구든지(나이, 성별, 장애유무, 성적지향, 학력, 전과 유무도 전혀 묻지 않는다. 우리는 ‘소수자인권’위원회이므로) 언제든지 환영이다.

김진숙 지도위원과 함께 하는 월례회

정리 _**최현오** 회원 / 녹취 _**소환욱, 김가람**(민변 인턴 8기)

사회자 |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변 3월 월례회입니다. 오늘 김진숙 님을 모셨는데요.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9시 10분에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100분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사회자가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소개도 필요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최근에 김진숙 지도위원님을 소개한 글 중에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신문기사를 소개하는 걸로 김진숙 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한정숙 교수님이 쓰신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녀는 생각보다 자그마했다. 호리호리해서 가냘프기까지 해보였다. 동의하시면 박수쳐주세요.(박수) 85호 크레인의 여인 김진숙 씨가 진분홍빛 스카프를 역삼각형으로 두르고 대학생들을 위한 강연 단상에 섰을 때 내가 받은 첫인상이었다. 전투적으로 활짝 웃는 사진이 주곤 했던 강인하고 억세 보이는 이미지는 실제모습과 다른 것 같았다. 푸른 스웨터 색깔 때문에 그녀를 수국꽃이라 불러야 하지 않을까, 잠시 생각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멋있는 목소리로, 그렇게 감동적으로, 그렇게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로 강연을 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 이건데요. 지금 바로 그 옆에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셔서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김진숙 | 반갑습니다!(환호) 내 자랑에 취해가지고 한참 듣고 있었네...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1월6일 날 크레인에 올라갔는데 그날이 부산이 영하 13도 이었습니다. 아주 젠장 뒤지게 춥더라고(하하) 부산은 영하로 내려가는 날도 잘 없어요. 아휴~ 그날 진짜 그 추위를 평생을 못 잊을 것 같아요. 아휴~ 오들오들오들, 하루 종일 떨어가지고 이게 아귀가 아파가지고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나왔었어요. 진짜 솔직히 하루 종일 후회했습니다. 내일 올라올걸.(하하하하) 그것도 하필 새벽3시에 막, 6시에나 올라갈 걸... 거기가 조종실인데요. 기사아저씨 혼자 일하는 공간입니다. 가니까 나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더니... 아가씨가, 대선 소주 아가씨가 달력에,(웃음) 그 추운데 홀딱 벗고 망사스타킹을 신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뻘쭘 하더라고 그런데 계속 쳐다보니까 정들었어요. 그래서 친해져가지고 넘기지를 못하고 계속 1월 달로, 2011년도 1월 달 달력이 걸려있는 크레인을 내려와서 1년 4일만에 집에를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깐 2011년도 1월 달 달력이 여전히 집에 걸려있었습니다. 전 1년 동안 무얼 했을까요? 어디서 무얼 하다 왔을까요? 전 하여튼 제 생애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안든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힘든 것만큼 얻은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랬는데. 저는 309일이라는 날짜를 내려와서 확인을 했어요. 제가 올라가고 나서 며칠이 안돼서 결혼한 친구가 있었는데 내려오니깐 '아'를 낳아 놨더구먼? 우리가 가족대책위 대표 아들이 올라갈 무렵에 100일이었어요. 지손가락 빨아먹고 이렇게 버둥거리던 놈이 내려오니깐 뛰어 댕기는 거예요. 그 크레인이 24시간이 흔들립니다. 계속~.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토하고 멀미를 심하게 했었어요. 그거 한 두어 달 걸리더라고 적응하는데. 내려오니까 땅멀미가 그 배타고 내리면 땅이 잠시 흔들리는데 그게 계속 흔들리는데 맨땅에 헤딩하고 가다가 주저앉아서 토하고 엘리베이터 타는 거 다 까먹고, (함께 크레인에 올라갔던 우리 동료 중에) 한명은 가스레인지 불 안 끄고 나와 가지고 119출동하고 교통사고 내고 저도 유리에 부딪혀가지고 다 깨지고 막 거기 유리 없었거든 거기는 이거 징역 살고나온 것 보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더 걸 리더라니깐요. 저는 사회 부적응자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건 사고 돈 안내고 기냥 나오고 막(웃음) 그랬었는데, 인제 사람 꼴을 좀 갖추고, 아휴 진짜 속세는 복잡해 죽겠어요. 혼자 고요히 살다가 내려오니까 어찌들 불러대는지, 나 없을 때는 어떻게 사셨어요?

9살 짜리 콩단이

저는 못 내려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려온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신변정리를 다 하고 갔었어요. 52년을 살고 뭐뭐뭐 이렇게 저렇게 딴 거 다 놔두고 대표적으로 아까운 게 제가 생각보다 참 쪼잔 합니다. 제일 아까운 게 새로 산 등산화가 있었어요. 그것도 몇 달을 별러서 산 고어텍스

저는 사회 부적응자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건 사고 돈 안내고 기냥 나오고 막(웃음) 그랬었는데, 인제 사람 꼴을 좀 갖추고, 아휴 진짜 속세는 복잡해 죽겠어요. 혼자 고요히 살다가 내려오니까 어찌들 불러대는지, 나 없을 때는 어떻게 사셨어요?

를 내 생애 처음 신어보는 고어텍스였거든. 근데 신발을 이걸 못 신는다고 생각을 하니깐, 실감이 확~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것을 주고, 그 카메라를 100만 원짜리 새로 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살면서 제일 크게 질러본 것이 그 카메라였는데 그것을 왜 샀냐 하면은 전 제가 살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한 것이 그 일인데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9살짜리 콩단이라는 아이하고 결연을 맺었습니다. 아주 귀한 인연이에요. 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근데 이 아이가 9살인데 부모님이 안계세요. 그니까 아빠가 돌아가시고 야 3살 때 엄마가 태국에 돈 벌러 간다고 하고 6년째 소식이 없는 거예요. 갸가 혼자 사는데 캄보디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난하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구걸을 하거나 성매매를 합니다. 여자아이들이... 야가 사는 마을이 뽕이뻣(?)이라고 태국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놈들이 아휴~변태새끼들이에요. 하룻밤에 1달라에 요만한 아이들을 사는 거야~ 저는 콩단이 하고 말 한마디 안 통하고 피한방울 섞인 것이 없지만, 아이가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야한테 제가 한 달에 30만 원도 아니고 3만원씩 보내줘요. 이 돈을 가지고 야는 구걸이나 성매매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한 달에 20kg씩 쌀을 사먹고 하루에 한 개씩 우유를 마셔요. 재작년에 제가 이 아이를 보러 갔을 때는 아가 막 꼬질꼬질 하이 막, 아홉 살짜리 딸내미라니깐 분홍색 티셔츠를 사갔는데 이게 원피스더구먼, 못자라가지고 그래서 반바지를 하얀 것 사가지고 그날은 하얀 옷이 필요가 없는데, 그래 사가지고 갔더만 딸내미 9살짜리라니깐 머리띠 사고 머리꽂핀 수 만원 어치를 사가지고 갔더만 머리가 없더구먼? 아홉 살짜리 공주를 상상하고 간 거여, 그랬더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재작년에 갔다 오고 작년에 가기로 하고 못 갔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갔었는데 일 년 사이 아가 막 수수깡처럼 커가지고 뽀~예 가지고 땟국물이 다 빠졌어요, 진짜! 돈 삼만 원에 아이의 미래와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그랬더랬는데 재작년에 야를 보러 가보니까, 집도 없어요. 쓰러져가는 움막에 그냥 막 아무도 돌보는 사람, 그 가족이 없으니까. 초가지붕에 밑에다가 항아리 놓을 공간도 없고, 초가지붕에는 빗물이 떨어지면 썩은 물이자 나요? 그걸 받아가 씻고 먹고 이러고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뽕이뻣이라는 마을을 가보니깐 땅 덩어리 넓더라고요~ 근면 성실한 한국인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게으름의 소치야! 저 넓은 땅에다가 감자도 심어서 먹고 고구마도 심어서 먹으세요! 왜 아이들을 굶깁니까! 그리고 보니까 아고 어른이고 발목이 없는 사람들 천지에요. 지뢰들 때문에 미국이 거 갔다가 막 지뢰를 갔다가 퍼부어가지고, 부지런한 사람 발목이 하나도 없더라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책을 보니까요 한 놈이 집을 1200채를 가지고 있더라니만요? 얀~어어어~ 부동산 업자도 아니에요. 야는 집사기가 취미활동, 무슨 지나가다 담배 사듯이 집사는 놈이 한 놈 있는 거예요! 집을 매점매석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깐 집! 없지요!

니까 진짜? 농사지으러 갔다간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더라니까, 그 가난의 책임을 아이들도 고스란히 대물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내려오고 나니깐 야를 돌봐주시는 수녀님이 한분 계시는데 콩단이 한테 집을 한 채 지어주는 게 어떻겠냐고, 재작년에도 집을 한 채 지어주자고 그랬더니, 그때는 동부슈퍼라는 기숙학원에 보낼 생각을 하시더라고 근데 언니가 있었던 거야, 가출했던 언니가 임신을 한 채 돌아왔어요, 집이 필요하자나? 그 집을 지어줍시다. 흔쾌하게 동의를 했더만, 세상에 일주일 만에 땅을 사고요 집을 다 짓고요, 그래가지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신 거야! 284만 원에~ 나는 그 나라 물가에 비하면 그게 얼마만한 돈인지 모르겠지만 상상이 됩니까? 284만원에 집을 한 채 짓는다는 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집값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이 있으시요들? 집이 있는 사람도 그게 자기 집입니까? 그게? 신한은행집이고 농협집이지.(웃음) 나는 뭐! 저는요 노동자들 한 태는 집한 채들 한 채씩은 줘야 돼~ 그지? 이게 뭐냐고 평생 일한 노동자가 집 한 채를 장만 못하고 그게 필생의 업처럼 되어버리는! 근데 보니깐 주택은 남아 돈다매요? 그 주택 보급률은 점점 더 올라가더라고? 나는 진짜 서울사람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디 다들 저녁때만 되면 찾아 들어가는 거만 보면, 근데 남영동은 집값 싸더만요. 18평짜리 원룸이 3,000만원이라며? 어~ 남영동에 손수 지어 놓은(웃음). 그래서 제가 진짜 언제 철들지는 모르겠는데 남영동에 집구하러 갔었어요. 제가 서울에 왔다갔다 찜질방에서 자고 이러니까, 3,000만원이면 하나 구해보고 싶다 싶어서 남영동에 갔더니만~ 웬걸! 요만한 방 하나에 7,000만원씩 하더라니 까요? 그랬더랬는데,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책을 보니까요 한 놈이 집을 1,200채를 가지고 있더라니만요? 얀~어어어~ 부동산 업자도 아니에요. 야는 집사기가 취미활동, 무슨 지나가다 담배 사듯이 집사는 놈이 한 놈 있는 거예요! 집을 매점매석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깐 집! 없지요! 그러는데 걔 콩단이를 작년에 보러가서 예쁘게 사진을 찍고 올라고 카메라를 100만 원짜리를 쳐 샀네! 야한테 100만원을 그냥 줬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잘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환상이야 환상. 그게 실제하고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래 가지고 그 카메라도 못썼지. 그래 가지고 이걸 줬는데 이건 진짜 아깝더라고, 올라가기 전날 줬어요. 마지막까지 망설이다가. 줬는데…. 이걸 받은 친구가 몇날 며칠을 울었다. 올라가서 안 내려 오니까 이게 뭐 유품처럼 되어 버린 거예요. 다행히 안 썼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야기가 이 친구 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친구가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아놔 답답해 죽겠네. 돌려주겠지 그지??(웃음) 돌려받아야 돼.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비자발적으로 해고든지 도산이던지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일 년에 얼마나 합디까? 200만 명.
이런 뭐. 이런 웃기는 일이 있어요.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비자발적으로 해고든지 도산이던지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일 년에 얼마나 합디까? 200만 명. 이런 뭐. 이런 웃기는 일이 있어요. 제가 내려오고 나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엄청~! 나는 연예인들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 대전역에 화장실 앞에 매점에 있는 아줌마가 저를 알아보실 정도로, 309일을 크레인에 있다가 내려오면 여러분들 생각에 뭐가 제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응? 목욕! 저는 정리해고 철회보다 절박 했던 게 바로 목욕이었습니다. '어떤 날에 몰래 내려가서 목욕이라도 하고 올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내려오자마자 사실 목욕을 가려고 했는데 병원에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오던지, 목욕을 못가는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열흘 만에 꿈을 이루었는데, 어휴~ 탕 안에 할매 넷이 나란히 앉아 있더라고. 할매 1호. '저 한진 중공업 크레인에 올라갔던 사람 아이가?' 할매 2호. '김진숙이?' 할매 3호. '가가 말라꼬 목욕하러 이까지나 왔겠노?' 거 병원이 신평이였거든. 할매 4호 '우리 아자씨가 거를 안다더라. 어데 사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시장에 가니까 어떤 채소 파는 아주머니가 저를 잡고 다짜고짜 우시는 거에요. 자기 남편이 20년을 일하던 공장에서 짤렸답니다. 사장이 죽었데요. 젊은 놈이 지가 사장이라고 아들이 공장을 차고 앉은 거에요. 지가 뭘 했다고. 그래 가지고 늙은 노동자들은 다 잘라내고 젊은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쓴 겁니다. 20년 일한 노동자가 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폐인이 되는 거에요. 영혼이 다 파괴되는 거에요. 노동자들에게 해

시장에 가니까 어떤 채소 파는 아주머니가 저를 잡고 다짜고짜 우시는 거에요. 자기 남편이 20년을 일하던 공장에서 짤렸답니다. 사장이 죽었데요. 젊은 놈이 지가 사장이라고 아들이 공장을 차고앉은 거에요. 지가 뭘 했다고. 그래 가지고 늙은 노동자들은 다 잘라내고 젊은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쓴 겁니다. 20년 일한 노동자가 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폐인이 되는 거에요. 영혼이 다 파괴되는 거에요.

고는 살인이라 그러는 게 존재를 부정당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못 견뎌요. 그러는데, 아저씨가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노다지 술이나 퍼먹고 마누라나 뚜들겨 패고 막 인제 이러고 사나봐. 절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저씨 공장에도 아지매 같은 사람이 하나만 있어가 크레인에 올라갔으면 마' 제가 무슨 크레인 농성 전문입니까? '건 아저씨가 올라가셨어야지?' 라는 말이 요까지 올라왔다가 막.

영도 이야기

왜 하필 85크레인이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03년도에도 한진중공업이 650명의 정리해고를 했어요. 그때 회사가 사상최대 흑자를 기록을 했어요. 650명을 자르겠다니까 노조가 2년을 싸웠어요. 노조가 2년을 싸우면 여러분들 안 해본 짓이 있겠습니까? 삭발부터 해가 막, 2년 만에 천막을 걷는데 천막이 다 삭았더라고요. 그렇게 싸워서 노동청장까지 중재를 해서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합의한 안을 회장님이 번복을 했어요. 그날 밤에 새끼가 셋이 딸린 애비가 그 85호 크레인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129일 동안 어떤 언론도 어떤 정치인도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129일 만에 그 크레인에서 목을 매었습니다. 밥을 매달아 올렸던 밧줄에 목을 매었는데요. 그 크레인에 있으면 그런 것이 참 일입니다. 밥을 밧줄에 매달아서 올려야 되는데 뭐 먹고 다시 올라 올 수도 없고 시켜 먹을 수도 없고, 도르래를 매달아서 밧줄로 이렇게 올리는데, 제가 올라갔을 때도 이놈의 밧줄을 여기다 그냥 넉넉하게 해가지고 놔두면 다음에 그거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되자나요? 이걸 노다지 끄잡아 내리는 거야. 그럼 다시 묶어야 되거든. 농성보다 그것이 더 힘들었어요. 밧줄 끄잡아 올리는 일이. 놔둬라 좀! 그 밧줄을 한 번도 못 놔뒀습니다. 309일 동안. 또 목매달까봐. 근데 저는 올라가는 날 밧줄 짊어지고 올라갔거든요. 그 배낭을 하여튼 50번을 쌌다 풀렀다 했을 거 에요. 밧줄을 넣을 것인지, 내복을 넣을 것인지, 시너를 넣을 것인지, 등산 양말을 넣을 것인지. 이건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결국에는 밧줄과 시너를 넣고 올라갔는데요. 지회장의 시신이, 크레인에서 내려오지도 못했습니다. 2주일 동안 사측의 태도는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2주일 만에 '곽재규'라는 노동자가 도크바닥에 몸을 던졌어요. 곽재규 동지는 해고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싸우지 않아서 지회장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두 사람이 죽고 나서야 정리해고는 철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한꺼번에 묻고..., 제가 21살 때 김지욱 지회장이 20살 때 한진중공업에서 만나 같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같이 배 만들고 같이 노조 세우고 그 노조 지키려다가 징역 같이 갔다 오고 그랬던 사람 둘을 한꺼번에 땅에 묻었습니다.

두 사람이 죽고 나서야 정리해고는 철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한꺼번에 묻고..., 제가 21살 때 김지욱 지회장이 20살 때 한진중공업에서 만나 같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같이 배 만들고 같이 노조 세우고 그 노조 지키려다가 징역 같이 갔다 오고 그랬던 사람 둘을 한꺼번에 땅에 묻었습니다. 합동 장례식을 치르고 오니까 11월 말입디다. 추우니까 저도 모르게 보일러에 손을 데다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동지들 둘을 한꺼번에 땅에 묻고 와서 너는 그래도 뜨뜻한 방에서 자겠다고 보일러를 키냐?', 그리고 8년 동안 한 번도 보일러를 못 틀고 잤는데, 손발에 동상이 걸렸습니다. 아~손하고 귀에. 부산사람들은 동상자체를 몰라요. 한사람 딱 알아봤어요. 자기 군대에서 귀에 동상이 걸려봤데. 왜 부산에서 동상이 걸렸습니까? 저는 찬물로 머리 감았습니다. 8년 동안. 이이야기를 한 번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2010년도에 다시 432명을 자르겠다는 거야. 그때도 3,000억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때도 사실 크레인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겁나더라고. 그리고 그때는 이미 크레인이 용역에 넘어가서 우리 소관이 아니었어요. 아니 2003년도 같은 일이 일어나면 정리해고를 안하던지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길 아닙니까? 크레인에 못 올라가게 매인거야. 야들은. 그래가지고 크레인에 이따 만한 자물쇠를 매달아가지고 그걸 쇠사슬로 몇 번을~ 쇠사슬도 이만해요! 진짜. 기자들이 첫날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이었냐고 했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어요. 진짜 춥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 쫌 제발 빨리 잘라져라. 절단기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 시간을 넘게 그것을 자르고 결국에는 올라갔는데, 겁났어요. 그래 가지고 크레인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단식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단식이요, 저 지율스님이 백 몇 십일씩 이딴 식으로 단식을 해버리니까(웃음), 아~ 24일 단식한 것은 다이어트더구먼. 내 배만 고프지. 그러고 2011년도에 또 삼 사백 명을 자르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마음속으로는 다 똑같았어요. 이제 크레인에 올라가는 것 밖에 길이 없다. 그때 난 딴 놈이 올라갈 줄 알았거덩. 옆에 놈을 자꾸 쳐다보니까 글 마들은 나만 쳐다보더라고. 전 이상한 경험 했던 게요. 거기가 이제 중간지점까지는 계단으로 올라 갈 수 있어요. 중간지점부터 제가 있던 지점까지는 통을 통과해야합니다. 원통을. 그 제가 2003년도에 김주익 지회장의 시신을 확인하러 올라갔던 게 사전 답사였던 택이여. 거기가 얼마나 어두운지 알거든. 진짜 빛이 한 점도 없어요. 크레인에 동력선 자체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사다리도 없어요. 거기는, 벽에다가 철근 하나씩 이렇게 붙여 놨는데 간격도 엄청 떠요. 배낭을 무겁게 짊어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배낭 지고 입에다 랜턴을 물고 거길 막 기를 쓰고 올라갔다가 어

김주익 지회장의 시신이 뉘여 있던 공간에서 309일을 지내다 저는 그래서 살아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올라갈 때 저는 두가지 숫자에 가위가 눌려 있었던 게, 하나는 129이고 하나는 60이라는 숫자였는데, 60이라는 숫자는 김주익 지회장이 129일 만에 마지막으로 보고 간 조합원들의 숫자가 60명이었습니다.

느 난간을 잡았는데, 그게 오른손이었어요. 소름이 쫘~악 끼치는 거야. 그 느낌이 일주일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시신을 제일 먼저 확인을 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위에서 몇 번째 난간 아니니? 맞데요. 누나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 그 자리를 8년 만에 직감으로만 확인을 했는데요. 그 한을 다 못 풀었던 거 같아. 그 사람이. 저는 그랬는데, 김주익 지회장의 시신이 뉘여 있던 공간에서 309일을 지내다 저는 그래서 살아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올라갈 때 저는 두가지 숫자에 가위가 눌려 있었던 게, 하나는 129이고 하나는 60이라는 숫자였는데, 60이라는 숫자는 김주익 지회장이 129일 만에 마지막으로 보고 간 조합원들의 숫자가 60명이었습니다. 처음에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할 때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때 한진의 조합원이 2,500명이었는데 지금 800명 남았어요. 2,500명이 똑같이 시작했어요. 결사항전! 끝까지 간다! 배신하면 직이뿐다이! 그지요? 근데 싸우다보면 뭐 징계 떨어지지요. 뭐 가압류 떨어지지요?

거기다 쌍차나 한진 같은 경우는 해고가 절망일 수밖에 없었던 게 대부분이 사원아파트에 살았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해고되는 순간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지. 공장에서 쫓겨나는 순간 집에서도 쫓겨나는 거 에요. 자기네들은 공장에서 노숙한다고 있는데 마누라들은 애들하고 집에서 있는 거 에요. 새끼들하고 길바닥에 나 앉을래? 이런 저런 압력과 회유로 2,400명 넘는 조합원들이 파업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그 2,500명이 처음에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면 김주익, 곽재규는 살아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 60명은 데드라인이었어요. 2003년도에 60명이 남기까지 129일이 걸렸는데 그 절망의 시간이 끝까지 다가오는데. 노조 임원이라는 핵심간부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야. 파업하다가 그러니까 이놈아들은 계속 희망퇴직으로 조합원들을 정리 하는 거야. 그놈아들이 싸웠으면 제가 올라갈 군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고 자꾸 조합원들이 회사하고 그래서 저라도 올라 간 건데. 이놈아들이 도망가서 노조 집행부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복수노조입니다. 그래서 한진에 복수노조가 만들어져있는데. 여기 500명이 넘게 가입이 되어있어요. 지금 아마 600명이 넘을 거야. 그러니까 이 노조는 지금 4년 동안 임금 단체협상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고용불안이 상시적으로 있어요. 그런데다가 여기 가입하면 연말에 성과급을 천만원을 주고 임금도 올려준대. 한진은 일부러 수주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을 일이 없다는 핑계로 휴업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 가입하면 휴업을 안 보낸다는 거

이놈아들이 노조 간부들이 다 도망가니까 조합원들이 그 주말에 2/3가 빠져 나간거야. 위에 있으면 조합원들이 나가는 게 보이는 거야. 절망의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데. 4월 27일 날 이미 5개월이 다 된 시점이었지. 공장에 김여진과 날라리 외부세력이 왔어.

야 그러니까 일로 다가지. 저들은 다 가입해놓고 웃기는 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오지 말고 거기 그냥 있으라고.. 왜? 이 노조를 유지하는 유일한 근거는 저 민주노조를 깨기 위한거야. 저기 깨지면 이걸 지탱할 이유가 없는 거야. 파업하다 도망간 놈들인 거 다 아는데, 30년을 겪어봤는데, 그놈아들 성향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나는 여기 있고, 너는 거기 있어!'. 이것이 바로 조합원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놈아들이 노조 간부들이 다 도망가니까 조합원들이 그 주말에 2/3가 빠져 나간거야. 위에 있으면 조합원들이 나가는 게 보이는 거야. 절망의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데. 4월 27일 날 이미 5개월이 다 된 시점이었지. 공장에 김여진과 날라리 외부세력이 왔어. 김여진씨 알죠? 연예인이 파업하는 조선소에 올 거라는 걸 파악도 못했어. 사람이 오기는 부담스러운 데지. 크레인 농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결연하고 처절하고 참담한 투쟁입니까. 와도 할 것도 없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까 하다못해 차 한 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쌩 깔라면 껄쩍지근하고 트위터로 묻더라고요. '고매가 필요합니다. 고구마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해남 고매가 왔어. 사과가 오고 라면이 오고 그런 거는 와 근데 진짜 필요한 사람은 안 오는 거야. 사람들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분들이 오는데 오면 노다지 울어. 저들이 밑에서 쳐다보면 답답하거든요. 사람이 죽어 내려온 크레인에 올라가서 기약도 없이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다시 크레인에 올라가면 울지 마세요. 저들은 울고 가면 되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감정처리 안된다니까.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근데 이 김여진과 날라리 외부 세력은 와서 우는 게 아니라 고매 구어 먹고 지짐 뒤벼 먹고 쑥국 끓여 먹고, 탤런트가 왔다니까 우리 조합원 아새끼들이 싸인 받아가고, 막.. 우리 조합원 애들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웃어봤어요. 제가 있던 공간이 굉장히 좁았었습니다. 이 탁자만 할까요? 이것보다 조금 더 컸나. 계속 웅크리고 있는데다 제가 있던 크레인이 40년 되어서 쇠 냄새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어서 지금도 이 관절이 변형된 상태인데 김여진씨가 가면서 뭐라고 써주고 갔냐면 '웃으면서

김여진씨가 가면서 뭐라고 써주고 갔냐면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이렇게 싸인 해주고 갔는데 이걸 이렇게 부쳐놨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읽어 보는 거야. 근데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라는데 승질이 확 나는 거야. 진짜 아니 도저히 웃을 수 없는 공간에서 웃을 수 없는 싸움을 하는 사람한테 그것도 끝까지? 너희들이 얼마나 끝까지 해 줄 건데. 근데 그 싸움을 끝까지 해줬던 것들이 그 날라리였어요.

끝까지 함께' 이렇게 싸인 해주고 갔는데 이걸 이렇게 붙여놨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읽어 보는 거야. 저는 징역 2번 살았는데, 재소자 수칙 10가지를 지금도 다 외웁니다. 읽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그때는 달력도 없으니까. 근데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라는데 승질이 확 나는 거야. 진짜 아니 도저히 웃을 수 없는 공간에서 웃을 수 없는 싸움을 하는 사람한테 그것도 끝까지? 너희들이 얼마나 끝까지 해 줄 건데. 근데 그 싸움을 끝까지 해줬던 것들이 그 날라리였어요. 진짜 민주노총보다 치열하게 끈끈하게 싸워준 게 그들이었어. 근데 그걸 보다가 어느 날 번쩍 섬광처럼 스친 것이 무엇이었냐면, '웃으면서 싸워야 함께 싸우고 함께 싸워야 끝까지 싸우겠구나.' 그런 도가 틔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눈물보다도 웃음이 훨씬 강하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카드 빚 때문에 울고, 뭐 실연당했다고 노다지 울고 짜고 해봐요. 술 사주는 것 도 한두 번이고, 하소연 듣는 것도 한 두 번이지. 그러다가 그 친구 번호 뜨면 안 받는다니까. 여러분들 노다지 울고 짜는 연속극은 힘들어서 못 봐요. 근데 개콘은 재밌다 람쥐지지(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눈물보다는 웃음에 가까운.

김여진과 날라리 외부 세력이 왔다 가고 나니까 이것이 인터넷에 뜨고 그러니까 크레인이 이른바 문호가 개방된 거 같아요. '야, 연예인도 왔다갔다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한번은 핀란드에서 트친(트위터 친구)이 온 거야. 이 분은 핀란드에 대학교수였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랍니다. 그때 크레인 벌금이 하루에 100만원씩이었는데, 그걸 3억 900만원어치나 살다 내려왔습니다.

한번은 어떤 청춘남녀가 희망버스에서 눈이 맞았데요. 정말 남녀관계 원칙 없는 거는. 아니 어떻게 희망버스에서 눈이 맞습니다. 맞았으면 지들끼리 맞지, 굳이 크레인 밑에서 언약식을 하겠다는 거 에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와서 해봐라. 그런데, 진짜 왔어요.

'호텔' 85호 크레인

그랬는데 김여진과 날라리 외부 세력이 왔다 가고 나니까 이것이 인터넷에 뜨고 그러니까 크레인이 이른바 문호가 개방된 거 같아요. '야, 연예인도 왔다갔다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서울에서 전주에서 광주에서 오는데, 한번은요 핀란드에서 트친(트위터 친구)이 온 거야. 16시간을 비행기 타고 온 거야. 이 분은 핀란드에 대학교수였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랍니다. 그때 크레인(에 올라간 것 때문에) 벌금이 하루에 100만원씩이었는데, 그걸 3억 900만원어치나 살다 내려왔습니다. 그걸 빗대서 머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냐면, '저는 하루에 100만 원짜리 펜트하우스에 삽니다.' 하고 올렸더니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하고 나하고 같은 클래스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트위터로 물어보더라고, '한국에는 100만 원짜리 호텔이 어디 있습니까?' '85호 크레인 호텔입니다.' 라고 그랬어! (하하 하하하). '그 호텔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 부산영도에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번 가봐야겠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세요!' 했지요. 이분은 어렸을 때 핀란드에 가셨는데 자기가 태어난 조국에서 아무 죄 없는 노동자들이 수백 명이 정리해고로 잘린 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85호 크레인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혹시 라면과 김치가 먹고 싶지 않냐' 고. 그때 크레인 밑에 라면과 김치가 많았거든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보내준다고 주소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신기했나봐. 정리해고 막겠다고 언제 크레인에서 내려올지도 모르는 인간이 남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사는 사람한테 라면을 보내준다니까. 뭐 어떤 인간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보려고 오셨어요. 진짜 여름휴가 때 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크레인이 봉쇄가 되어갖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셨거든요. 저 공장 밖에서 길 건너편에서 이분이 나타나면 표시가 나는 게 물 한 병 딱 들고 등에다 배낭을 딱 붙이고 아침 7시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10시까지 뺑뺑 돌아요. 그 땡볕에서 10시에 퇴근했다가 또 7시에 오시고 그걸 2주일동안 꼬박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가을에 한 번 더 오셨어요. 오사카 출장가는 길에 오셨대요. 무슨 부산 출장 가는 것처럼 오셨어요. 그리고 2번째로 오셨을 때는 노래를 배우고 오셨어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워 본 한국노래라고 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엄청 감동했지. 한번은 크레인에서 제가 제 머리를 제 손으로 4번을 깎았는데 제 머리가 하얗게 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날은 더운데 땀띠가 막 나고, 거울도 없으니까 휴대폰 이렇게 보면서 깎았어요. 근데 제가 봐도 잘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트위터에 올렸지. '생각보다 미인이시네요' 이러는 거야.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지. 그때는.. 하긴 어떻겠어요. 크레인에 올라가서 지 머리를 지손으로 깎고 있으니까, '아 불쌍하십니다! 머 답답하십니다!' 그러겠어요? 또 그 말을 믿은 아주머니가 또 있었다니까요. 진짜 딸래미 데리고 왔었다니까요. 한번은 어떤 청춘남녀가 희망버스에서 눈이 맞았데요. 정말 남녀관계 원칙 없는 거는. 아니 어떻게 희망버스에서 눈이 맞습니다. 맞았으면 지들끼리 맞지, 굳이 크레인 밑에서 언약식을 하겠다는 거 에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와서 해봐라. 그런데, 진짜 왔어요. 서울에서. 공장안에 크레인이 있었고 담벼락이 있었고 담벼락 바로 밑에 인도였는데, 그 인도에는 용역들이 사람들을 못 다니게 했어요. 크레인하고 가까우니까 그랬는지. 우리 조합원들도 못 다녔어요. 우리 조합원들도 8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노숙하고 농성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신도 브레뉴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 아주매들이 욕하고 조합원들이 자는데 물 뿌리고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회사한테 돈을 받아 먹은 거야 우리가 심증은 있었는데 물증이 없었지. 근데 집행부가 바뀌고 보니까 영수증이 나온 거야.

한진에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간 지 300일 날 되는 날 기념집회를 했어요. 그때 우린 그 아주매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 나오면 영수증을 보여줄 거라고. 입주자 대표자 4명하고 한명 아주머니가 그냥 따라왔어요. 이 아주머니들이 '남의 집 앞에서 떠드냐!'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노조원 가운데 한명이 영수증을 막 흔들면서 '아주매들, 돈 몇 푼에 양심을 팔고 그러지?'라고 말했는데, 지손으로 싸인 한 영수증 보니까 얼굴이 흙빛이 되는 거야. 어버버하고 있는데, 따라온 다른 아주머니가 '그게 몬데?' 하고서 보니까, 그 대표자들끼리 나눠서 먹은 거야.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고, 우린 구경하고.

희망버스 올 때 마다 난리를 피웠던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그 분들도 회사한테 돈 받아가지고 별 악담을 다하더니. 어쨌든, 근데 이 청춘 남녀가 비장하게 손을 잡고 오니까 이 용역들도 너무 비장해서 못 말리는 거야. 그래서 크레인 밑에 오더니 지들끼리 반지를 나눠서 끼대. 그게 언약식 인가봐. 그러더니 지들끼리 감동을 해서 울고 끌어안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사진 찍었어. 그러고 있다가 6월 27일날, 이

노다지 싸우던 놈들인데. 그래서 그랬는데 롯데호텔에 새벽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이미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유리가 다 깨지고 최루가스 퍼붓고 천장까지 피가 묻어있고, 밑에까지 피가 절벅절벅했던 그때 당시 임산부가 2명이 유산되었다고 합니다.

미 7개월이 다 되가는 시점에 공권력이 투입 되었잖아요? 안에는 집행부 조끼를 입은 깡패들이 들어오고. 제가 노동운동을 한 30년 하면서 공권력 투입되는 것을 수십 번 봤는데, 가장 끔찍했던 게 서울의 롯데호텔이었어요. 그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것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거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롯데백화점에 가보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어서, 그 백화점 앞에서 천막치고 있더라고. 1,800명인데 정규직이 80명입니다. 1,720명이 비정규직이야. 백화점이나 마트나 자기 사람 안 써요. 업체에서 지원받아서 쓰거나, 대부분 비정규직 쓰거나. 천막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용역들이 까맣게 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더니. 용역이요 '안녕하십니까. 몸은 괜찮으십니까?' 인사를 해요. 제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용역이 '한진에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진에 있던 아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갈라니까 한 놈이 따라오더라고요. '존경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용역이 존경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꽤 부담되더라고요. 노다지 싸우던 놈들인데. 그래서 그랬는데 롯데호텔에 새벽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이미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유리가 다 깨지고 최루가스 퍼붓고 천장까지 피가 묻어있고, 밑에까지 피가 절벅절벅했던 그때 당시 임산부가 2명이 유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게 공권력 투입이었는데.. 한진에서 보니까 밖에 새까만 바퀴벌레같이 오골오골오골... 얘네 들 무장하고 다니는 거 보면요, 바퀴벌레랑 똑같아요. 그 넓은 공장을 닭장차가 이중으로 둘러싸는데, 와! 우리나라 닭장차 주차 신공 아시제? 물 샐 틈도 없어 실리콘으로 붙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놈들이 우리 조합원들을 사지를 들어서 다 끌고 갔어. 그때 회사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게 대우자동차하고 똑같았어요. 해고된 조합원들이 공장 출입 못하게 해달라는 거였고, 법원에서 결정 났던 게 노조 사무실까지 출입은 허용된다는 거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출입이 안 되는 거고, 법이 그렇게 웃기는 거야. 진짜 웃기는 게 용역들이 그때부터 조끼를 벗고 크레인을 둘러싸는 거야. 이제 크레인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접근 못하는 거야.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딱 한사람이 사람이 살아남았었는데, 황희라 동지라고, 이 친구가 30살이었는데 부산지하철 매표소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표를 전에는 정규직 노동자가 팔았죠. 그걸 용역을 줘서 비정규직들이 팔게 됩니다. 그걸 지금은 누가 팝니까? 전국적으로 기계가 팝니다. 아니 서울에 와서 내가 여기 서초역을 오려고 하면, 내가 몇 호선을 타고 어떻게 오는지 물어볼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볼 놈이 없어요. 아니 지하철 표를 사는데 무슨 보증금을 내랴. 나 참, 아니 지하철이 무슨 전세방입니까? 그거 노선 확인하

정규직들이 하던 일을 비정규직들이 하다가 그 일마저도 기계 때문에 다 쫓아버리는, 우리가 의식 못하는 사이에 이미 구조조정의 공범이 되어 가고 있는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끔찍한 단면인데요. 황희라 동지가 그때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해고당하니까 2년을 싸웠어요.

고, 표 끊고 하는 사이에 지하철이 10대가 확 가버려. 저는 그래서 성질나서 밑으로 확 땡깁니다. 저는 지하철 차비가 200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서비스도 안 해주면서 아니 돈을 뭘 받아? 200원은 안 받으니까 밑으로 다녀야지. 여러분들, 고속도로 다니시면서 하이패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이패스 때문에 톨게이트에 있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위협에 있어요. 그거 도로공사 정규직들이 하던데 용역회사에 줬어요. 용역회사가 수백 개입니다. 노조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저는 인터넷뱅킹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빠르지. 그게 금융권 구조조정에 시발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저는 1년의 절반 이상을 기차 안에서 보내는 사람입니다만, 저는 인터넷으로 예약하거나 자동 발권기에서 표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규직들이 하던 일을 비정규직들이 하다가 그 일마저도 기계 때문에 다 쫓아버리는, 우리가 의식 못하는 사이에 이미 구조조정의 공범이 되어 가고 있는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끔찍한 단면인데요. 황희라 동지가 그때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해고당하니까 2년을 싸웠어요. 그 투쟁을 2년 했는데 그때 노숙하면서 친해진 거야. 단식하는데 위를 상해서 밥을 잘 못 먹습니다. 크레인에 있는데 노조 간부들이 계속 밥을 시켜 주는 거야. 밥을 못 먹는다니까 그래도 도시락을 주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황희라 동지가 그때부터 죽을 끓여 준 거야. 조합원들이 사지가 들려서 끌려 나가는 거 보니까 자기가 없으면 '크레인이 굶어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겠구나' 하고 혼자 컨테이너 박스에 숨었어. 그래서 24시간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가고 그 어두운 컨테이너 박스에 숨어 있다가, 결국 제가 인권위와 교섭하면서 딴 거는 다 모르겠고 '황희라 동지의 크레인 출입만은 보장해라' 했어요.

고립감과 단절감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게 세상과의 고립감과 단절감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아무도 없이 용역들한테 둘러싸여서 그놈들이 올려주는 밥을 어떻게 먹겠습니다. 다행히 하루 3끼 식사 때 출입이 허용되었어요. 6월 27일 날 우리 조합원들이 크레인에 뛰어올라 온 거야. 그분들이 사수대를 자처하면서 137일을 있게 되는데, 저는 그 전까지 '공권력이 투입되면 어떻게 할 거냐' 물을 때마다 일관되게 대답했던 것이 '뛰어내리겠습니다!'였어요. 저는 인터뷰 때부터 그랬습니다. 크레인은 퇴로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공권력이 투입되면 어떻게 할 거냐' 물을 때마다 일관되게 대답했던 것이 '뛰어내리겠습니다!'였어요. 저는 인터뷰 때부터 그랬습니다. 크레인은 퇴로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요구 조건을 서른 몇 가지를 가지고 올라갔으면, 뭐, 몇 가지를 양보한다고 하지만, (요구 조건은) 오로지 하나,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라'는 것이었는데 거기다가 공권력을 투입되면 뭐 없잖아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무슨 요구 조건을 서른 몇 가지를 가지고 올라갔으면, 뭐, 몇 가지를 양보한다고 하지만, (요구 조건은) 오로지 하나,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라'는 것이었는데 거기다가 공권력을 투입되면 뭐 없잖아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은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안거에요. 그래서 공권력 투입되는 것을 보면서 저를 지키겠다고 뛰어 올라와서 137을 보냈는데, 309일에 가려서 그렇지 137일도 만만한 날짜가 아니거든요. 저하고 제일 가까웠던 분들인데 309일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전쟁을 같이 치룬 동지들인데 얼마나 애틋하고 마음이 그렇겠어요. 내려오는 날 정말 마음이 북받치더라고요. 내려오면 이 분들을 제일 먼저 만나는 거지요. 정말 저는 끌어안고 울려고 했어요. 근데 내려오니까 냄새가... 어떻게 인간한테서 그런 냄새가... 수염이 자라서 입에서 막 씹히는데, 수염에 머가 주렁주렁 매달려있어서 남자들은 정말 더러워 죽겠어요. 분명히 다 다른 사람이었는데 똑같이 생겼더라니까요. 누가 누군지 다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끌어안고 울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하고 내려오는데, '왜 그렇게 빨리 내려가냐'고 하더라고요. 막 쫓아오는 거에요. (하하 하하하)

트위터와 금속탐지기

6월 27일날 용역들이 크레인을 접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전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크레인이 높은데다가 별다른 안전시설 없이 난간은 굉장히 좁잖나요. 그 위험한데 밤에는 정말 흔들리면 휘청휘청하는데 저는 또 실족사 하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안 나왔어요. 왜 그 위험한 공간에 전기까지 끊었을까요? 바로 그 트위터 때문에. 제가 그때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제가 전국적으로 트위터 영향력 1위더라고요. 85호 크레인이 무슨 트위터 기지국처럼 되가지고요, 그 도표를 보니까 일로 다 와가지고 여기서 다 퍼져나가더라구요. 무슨 일만 있으면 뽀르르 트위터에 올리고 뽀르르 사람들이 찾아오고, 미치지 회사에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밥을 죽을 들고 오자나요. 그러면은 경비실에 금속탐지기로 반찬도 포장을 다 벗겨서 스캔을 다 하는데 반찬을 만들 때는 버섯볶음 감자볶음이 따로 따로 이었을 텐데 올라올 때는 버섯감자볶음이 되어있어요. 그걸 크레인 밑에 와서 용역들이 한번 더해요. 왜? 스마트폰 배터리 보려고. 한진 국회 청문회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동영 의원이 한진 사장한테 묻습니다. '왜 밥을 금속탐지기로 젓습니까? 그거 인권유린 아닙니까?' 한진 사장이 청문회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건 상상도 못했지. (한진 사장이) 얼떨결에 뭐라고 대답했나면, '밥에 볼트를 섞을까봐요.'. 미친 놈 아냐? 지들은 볼트를 섞어? 배터리 때문에 그랬거든요. 저는 크레인이 아니었으면 트위터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이었을 겁니다. 올라오고 나서 한 달 쯤 되었나? 스마트폰이 올라오는데 난 그때 처음 봤어요. 켜는데 한 30분 걸렸잖아. 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키니까 안 되더라고. 트위터 계정이 돼서 올라오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제 계정을 찾아 들어오니까요, 이미 응원한 글이 수백 개가 올라와요. 힘내세요. 같이 싸우자는 글은 없더라고요(하하 하하하). 트위터가 재미있어요. 중독성도 있고, 이거 한 30분 안 해 봐요, 그 사이에 이명박이 죽어있을 거 같고 그렇거든. 저는 새로 켤 때 마다 그 꿈을 가지고 켭니다. 꿈은 이루어지겠지요.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아침 먹고 운동하다가 신문보고 책 좀 보고..' 다 뻥이었습니다. 22시간을 트위터를 했어요. 하루에! 신문도 못 올리게 하죠, 책도 못 올리게 하죠, 저는 세상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트위터였습니다. 판사가 판결하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전 제가 무슨 물의를 일으켰는지 몰랐어요. 신문도 못보고 TV도 못 봤거든. 그냥 위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먹고 잔 자료가 이만큼이더구먼? 그랬더랬는데요. 제 이야기를 세상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도 트위터였드랬습니다. 아~ 이게 끊어지니깐 미치겠는 거예요? 막 불안하기도 불안하고 금단현상도 엄청 심하고, 그때 밖에서도 어지간히는 답답했었나봐. 적들에게 둘러쌓인 크레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땐 일반전화도 다 끊겼어요. 소통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니까 즈그들끼리 짱구를 굴린 거야. 어떻게 하면 85크레인에서 트위터를 재개하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하나는 900만원을 주고 모형 헬기를 샀습니다. 날라리들 엄청난 사람들이여. 그래서 헬기가 들 수 있는 만큼 배터리를 샀어요. 문제는 이것을 구해 놓고 너무

트위터가 재미있어요. 중독성도 있고, 이거 한 30분 안 해 봐요, 그 사이에 이명박이 죽어있을 거 같고 그렇거든. 저는 새로 켤 때 마다 그 꿈을 가지고 켭니다.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아침 먹고 운동하다가 신문보고 책 좀 보고..' 다 뻥이었습니다. 22시간을 트위터를 했어요. 하루에! 신문도 못 올리게 하죠, 책도 못 올리게 하죠, 저는 세상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트위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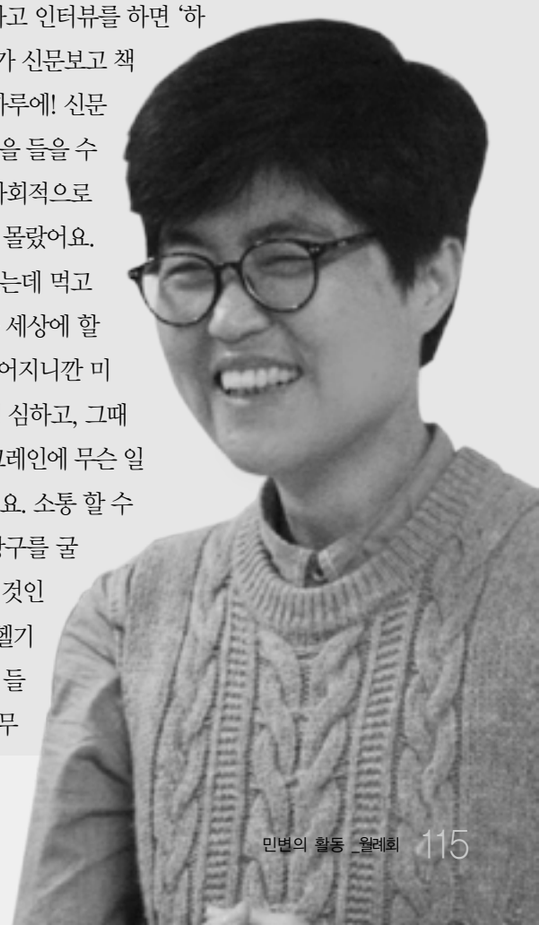

제 이야기를 세상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도 트위터였습니다. 아~이게 끊어지니깐 미치겠는 거예요? 막 불안하기도하고 금단현상도 엄청 심하고, 그때 밖에서도 답답했었나봐. 그땐 일반전화도 다 끊겼어요. 소통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니까 즈그들끼리 짱구를 굴린 거야. 어떻게 하면 85크레인에서 트위터를 재개하게 할 것인가?

너무 기쁜 나머지 인증샷까지 트위터에 올려 버린 거야! 이게 또한 날라리들의 한계에요. 우리 트위터 하다 보면 그런 착각이 들어요. 이거 우리만 본다고. 제가 체포영장이 떨어진 상태였잖아요? 내려오자마자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었거든. 글마들 이거 다해요! 그저께도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나를 팔로우 했더라고.(웃음) 그래서 왜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죄송하다' 그러고 갔어요. 경찰들 이거 다하는데 아마 내 팔로워 중에 많은 부분이 그 새끼들일 거야 아마.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올려놨어요. 어느 날 용역들이 이따 만한 작대기에다가 갈고리 하나씩 다 걸어가지고 전부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헬기 뜨면 걷을라고. 그건 날라 갔죠. 헬기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식빵을 사가지고 안을 다 팠어요. 거기다가 태양열 충전기를 넣는 거야. 근데 이걸 그냥 넣으면 스캔에 걸려요. 그럼 황희라 동지 죽습니다. 어떤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PD가 안을 낸 건데, 먹지로 쌓아서 넣으면 괜찮답니다. 싸서 넣고 식빵껍질을 본드로 다 붙였어요. 문제는 일반전화도 다 끊어진 상태니까. 그거 충전기 들어있고 본드로 붙여 있으니까, 먹지마란 소리를 못한 거야. 음식이 들어오면 먼저 사수대가 받아서 저한테 다시 올려주거든요. 사수대가 받은 거야, 이걸. 몇 달 만에 빵을 본 사수대 박모 동지께서, 안 그래도 왔다리갔다리 하는 이성을 그날 완전히 잃으십니다. 이게 웬 빵이냐! 들고 몰래 화장실이라고 요만하게 비닐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 앉으셔서 이 빵을 쳐드셨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자리에서 우웩! 보니까 충전기가 들어 있던 거예요. 그게 저한테 올라왔는데 충전기를 보니까 눈물이 다나는 거예요 진짜. 밖에서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이게 들어갔는지, 들어가다 걸려서 황희라가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자나? 그러니까 제 글이 올라오기만, 트위터만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제가 벌벌벌 떨면서 트위터에 글을 올렸더니, 나는 진짜, 박지성이 한골 넣은 줄 알았어요. 밖에서 와!소리가 나는 거예요. 85크레인에서 트위터는 그렇게 재개되었습니다. 우리 이거 글 올리는거 일도 아닌데요. 거기서는 누군가의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황희라는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야가 포커페이스를 잘못해가지고 분명히 충전기 들어 있는 거 알면 걸음을 제대로 못 걸을 것이다. 표정도 이상하고 그러면 들킨다. 아예 모르는 걸로 했단 말이야. 비밀로 했단 말이야. 근데 야가 넣었다고 용역들이 야를 노다지 끌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뛰어 들어오고, 용역들은 어디서 욕 전문 학원을 댕기나봐.

회사는 그랬거든요. 노조하고 순조롭게 희망퇴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크레인이 발목을 잡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이제 정리하려고, 근데 이게 정리하는 방식이 정리해고 철회가 아니라,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겠다는 의지를 마지막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그랬거든요. 노조하고 순조롭게 희망퇴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크레인이 발목을 잡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이제 정리하려고, 근데 이게 정리하는 방식이 정리해고 철회가 아니라,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겠다는 의지를 마지막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적으로 진압을 하겠다는 의지를 마지막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크레인에 올라오는 계단 난간 폭이 굉장히 좁았어요. 한사람 이상은 절대 못 올라옵니다. 이게 조금만 넓었어도 진압 당했을 거에요. 계단이 거의 직각이잖아요. 지들이 아무리 날고 기는 용역이라고 해도 얘들은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위에 있거든? 올라오는 놈들 마다 파이프 하나씩 들고. 사람들이 대소변을 어떻게 처리를 했냐고 처리를 했는지 물어볼 때 참 난감했던 게 그건 처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폭탄이었다니깐요? 이것만 들면 용역들이 환장을 합니다. 아 제발제발제발! 이건 방패도 소용없어요. 방패를 탁대는 순간 효과가 막 백배가 됩니다. 냄새도 냄새지만 모기 때문에. 내려오는 날까지 모기가 있었어요. 똥 먹고 큰 영도모기 울트라 캡숑짱! 작업복 바지를 뚫고 물었다니깐? 우리는 긁고 마는데 사수대 박성호 동지는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데다가 살성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 막 그 이만한 손톱으로 긁어대니깐, 진물이 막 (나오고). 야 피부병 때문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런데도 약을 안주더라니까?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내려오라는 거야. 저는 한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음식을 내리고 올릴 때는 사수대하고 사인이 잘 맞아야 되요. 빈 그릇을 내리는데 사수대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내리는데 안 잡고 있을 때 제가 빈 그릇을 내려버리니깐 이게 쫙~내려가는 거예요. 높이가 있으니까. 바로 밑에 황희라 동지가 서 있더라고, 그거 맞으면 즉사자나? 크레인 농성하다가 빈 그릇 맞고 즉사하면 열사인지 아닌지 가지고 두 달 동안 회의해야 돼요.(웃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막 밧줄을 손으로 두 손으로 확! 그게 쓸려 내려가면서 그냥 (손이) 다 까져 버렸어요. 이 가운데 손가락은 뼈가 다 보이더라니깐. 그래도 약을 안줬어요.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내려오라는 거야. 이게 물을 페트병에서 들고 오자나요? 그러면 용역들이 밑에다가 비닐봉다리 딱 대놓고 이렇게 하면 침 퉤! 뱉고. '왜 쳐다보냐?' 이러고. 그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니깐, 김명호 교수를 같은 재소자가 성폭행을 하더라고요. 그게 기를 꺾는 거거든. 모멸감을 주면서 기를 꺾는 방식이잖아요? 어휴 그럼 진짜 힘들어요. 뭐 침 뱉는 거 보고 그거 올라온 물 마시고 그러면서 아휴 이걸 진짜 먹여야 하나? 근데 먹어야 되잖아? 우리는 버티는 게 싸우는 거니깐, 그지요? 아~ 그랬더랬는데, 이 새끼들이 그냥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이야기를 또 한동안 했었어요. 84호 크레인을 특공대들이 면밀하게 정찰을 하고 갔어요.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85호 크레인하고 똑같은 데를 가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다 했대요. 84호 크레인이 85크레인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크기도 똑같고 구조도 똑같고, 그 같은 레일을 이렇게 쓰니깐, 84크레인

그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니깐, 김명호 교수를 같은 재소자가 성폭행을 하더라고요. 그게 기를 꺾는 거거든. 모멸감을 주면서 기를 꺾는 방식이잖아요? 어휴 그럼 진짜 힘들어요. 뭐 침 뱉는 거 보고 그거 올라온 물 마시고 그러면서 아휴 이걸 진짜 먹여야 하나? 근데 먹어야 되잖아? 우리는 버티는 게 싸우는 거니깐, 그지요?

을 이렇게 당겨서 붙이면 붙어요. 85크레인하고, 그럼 별다른 노력 안하고 85크레인으로 건너올 수 있어요. 특공대 애들 한 두 놈만 넘어와도 저 같은 거 진압하는데 1분도 안 걸릴거야 그지?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있는 공간에서는 84크레인이 안보입니다. 다가오는 걸 몰라요. 근데 그 왜 이제 크레인이 다가오려면 15분쯤 걸립니다. 근데 크레인이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소리만 보고 있는 거에요. 오면 나는 이제 붐대에 뛰어올라가겠다. 붐대가 뭐냐 하면 그 삐쭉 이렇게 에펠탑처럼 솟은 게 있어요. 그게 105m거든요? 거기 올라가면 세상없어도 떨어집니다. 거기 올라가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때부터는 딸랑딸랑 소리에 곤두서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자고 붐대밑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비가와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와~ 그때 진짜 10분도 못 잤습니다. 그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여름에 찍힌 제 사진을 보니까 비쩍 골았더라고요. 아우 그때는 정말 막(꿀꺽꿀꺽). 어느 날 새벽에 보니깐, 아무 소리가 안 났거든요? 근데 84크레인, 붐대가 높으니까 하늘에 제일 먼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붐대가 이렇게 오는거에요! 나는 그 새끼들이 크레인에 소리를 제거했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더랬습니다. 그래가 기겁을 해서 뛰어올라가니깐, 사장하고 밑에 관리자들이 이미 새까맣게 다 와 있고, 제가 뛰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 시도는 저지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크레인을 바닷가로 끌고 가서 진압한다고, 그게 도로가에 있으니깐 사람들이 노다지 쳐다보고, 우리 조합원들도 노숙하는 거 보면요. 새벽에 이렇게 한 번씩 내려다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전부 똑같은 자세로 자요. 전부 크레인을 쳐다보면서 잡니다. 그니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거에요! 술에 아무리 떡이 되어도 똑같아요. 자는 자세가. 그러는데, 조합원들이 노다지 지키고 있고. 뭐 기자들도 지키고 서있고, 그러니깐 부담스러운 거예요. 진압하기가. '이걸 끌고 가서 바닷가로 가서 배타고 진압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85크레인의 브레이크 핀 4개를 다 뺐어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와이어로프를 다 걸어 놨습니다. 그 땡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크레인에 브레이크 핀을 빼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바람 불면 크레인이 넘어가요. 근데 그런 짓을 했어요. 왜? 무당한테 물어보니깐 김진숙이 안 죽는다고 그랬댜. 어후~아놔~ 내가 그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시티 85라고 써 있었던 간판 있자나요? 그거 제가 내려오자마자 떼어 가지고 무당이 시킨 자리에 가져다가 파묻어 버렸어요. 더 웃기는 거는 이 크레인을 끌고 가고 싶어서 환장을 했더랬잖아? 근데 한 번도 못 끌고 갔거든요? 제가 내려오자마자 이제 크레인을 끌고 바닷가로 갔어요. 근데 무당이 끌고 가면 안 된다 그랬댜. 그

어유~ 우리 조합원들이 마지막에 94명이 남았었는데, 그 94명의 일 년 연봉을 다 합쳐도 34억이었습니다. 근데 용역들한테 가져다준 돈이 60억이 넘었다 아닙니까? 저런 새끼들이 기업을 경영해요~!

래서 다시 끌고 왔어요(하하하).

보이지 않는 진실

그러는데, 어유~ 우리 조합원들이 마지막에 94명이 남았었는데, 그 94명의 일 년 연봉을 다 합쳐도 34억이었습니다. 근데 용역들한테 가져다준 돈이 60억이 넘었다 아닙니까? 저런 새끼들이 기업을 경영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 기업이라고 하면 아주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고! 삼성전자! 대한민국! 초일류기업! 맞습니까?! 또~옥 같은 공장에 있던 노동자가 46명이 죽었습니다! 자~ 24살짜리가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 자리에 22살짜리 황유미가 일하다가 두 달 만에 백혈병으로 또 죽었습니다! 그럼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계속 은폐하는 거예요. 삼성이. 그걸 계속 은폐하는 거죠 삼성이. 결국, 며칠 전에 장례식을 또 치렀어요. 삼성의 그 기름 유출사고. 대법 판결에도 아직도 보상 안했다네요. 거기다가 그 강정의 구럼비 바위, 그것도 삼성이 하는 짓이에요. 삼성건설은 없습니다. 아시죠? 그 몇 년 전에 구포역 탈선사고 나가지고 사람 백 몇 십 명, 167명인가가 죽었어요. 그걸 삼성건설이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삼성건설은 없어요. 삼성물산이 합니다. 그러는데, 얍삽한 새끼들이지 진짜. 저런 기업을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제일가고 싶어 하는 기업 1위. 이게 대한민국의 모순입니다. 그러니 저 새끼들 지가 최고인줄 알지. 안 바껴요. 그러면서도 삼성 냉장고 쓰고! 삼성차 타고! 삼성 카드 쓰는데! 지네들이 뭐가 아쉬워서 바꾸겠습니까?!

희망버스

그러는데, 여러분들 강정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신 분들, 꼬~옥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셔서 눈으로 직접 보세요. 제가, 강화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미군기지가 있었어요. 미군기지가 들어오면 마을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저는 어려서부터 봐왔습니다. 지금이야 치욕으로 기억하지만, 미군들 쫓아 다니면서 '헬로, 기브미, 초콜릿, 껌.' 그 마을을 파괴했던 놈들에게 그러고 살았어요. 어렸을 땐데, 애들이 막 뭐가 있다는 거야. 쓰레기장에 가보니깐, 까만 아기가 시멘트 포대에 싸인 채, 그 겨울에 살얼음이 덮여 있는 아이가, 그때는 재래식의 화장실이니까, 여러분들 미군기지가 들어오면

우와~ 처음에 희망버스가 온다니깐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희망버스가 뭐냐고. 낸들 아나?
2011년도 인류는 희망버스를 탄 사람과 안 탄 사람으로 나눠지는데요, 희망버스를 탄사람 끼리도, 담을 넘은 사람과 안 넘은 사람이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담을 넘었던 사람들은 담을 안 넘은 사람을 마치 희망버스 안탄 것 취급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벌금 대박 맞고 있죠.

기지촌이 제일 먼저 들어 오자나요? 그대로 막 변기 화장실 퍼낼 때마다 그땐 다 퍼세식이니깐, 뭐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발전한다? 진해는요? 부산은? 자살률 제일 높고, 부도율 제일 높고, 실업률 제일 높은 도시가 부산입니다. 한 번씩 미군들 훈련한다고 풀리면 수천 명이 풀려요. 그럼 지하철에서 이 새끼들 술 처먹고, 마~악 소리 지르고. 그럼 한국 사람들 전부 찌그러져서 이러고 있고. 윤금희씨 살해 사건 이런 거 생생하게 다 기억하시죠? 사람 죽여 놓고 자궁 안에다가, 우산대 꼽아 놓고, 맥주병 꼽아 놓고.

자 여러분들 한진중공업은 그렇게 희망버스가 5차까지 왔었는데요. 우와~ 처음에 희망버스가 온다니깐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희망버스가 뭐냐고. 낸들 아나? 거를, 저는 민주노총버스가 위장하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민주노총 버스였으면 이름이 길었을 거예요. 뭐뭐를 위한 뭐, 뭐뭐를 위한, 누구를 위한, 뭐뭐의, 무슨 무슨 버스 이래가, 이름만 한차를 실고 왔을 거예요. 근데 달랑 희망 버스 이렇게 오는데, 2011년도 인류는 희망버스를 탄 사람과 안 탄 사람으로 나눠지는데요, 희망버스를 탄사람 끼리도, 담을 넘은 사람과 안 넘은 사람이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담을 넘었던 사람들은 담을 안 넘은 사람을 마치 희망버스 안탄 것 취급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벌금 대박 맞고 있죠. 그래가지고,(하하하하) 1차 750명 정도가 왔었어요. 그때가 제가 157일차 되어가는 날인데, 무언가 희망이 보이는 그때 진짜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아~무 뭐, 그냥 시간만 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2차 185일차 되어가는 날

저녁 6시만 되면 와서 100배 성원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바닥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절을 해요. 부디 살아 내려오십시오. 저녁이면 미사를 보는 수녀님 신부님들. 크레인에 무슨 일 만 있다고 하면 비행기타고 KTX타고 날아오는 날라리들. 제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 얼굴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보고 싶었어요.

2차가 왔어요. 12,000명. 그때부터는 차벽치고. 뭐 물대포 쏘고 최루액 쏘고, 연행하고. 우리 같은 선수들은 보면 물대포차 빼고 총 이렇게 들고 이러면, 알자나 그지요? 그러면 편의점에 뭐 사러가는 척 하고 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기 가서 이렇게 내다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던 친구들이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다가 뭐, 어? 물이 쏟아 지내? 최루액을 그대로 다 덮어 쓴 거예요. 그랬는데도 3차가 15,000명이 왔던 거 아닙니까? 그걸 기적이라는 말 외에 달리 어떤 표현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크레인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트위터, 얘는 DM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둘밖에 못봐요, 국정원 하고(하하하 웃음). 트위터가 DM이 온 거야. 근데 이분은 운동을 하시는 분 같애. 그러니까 제가 팔로우를 했을 거거든? 팔로우를 해야 DM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이 말을 하기까지 한 달을 망설였다는 거야. 70년대에 그 암흑의 군사독재 정권 시절을 밝혀냈던 것은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을 횃불처럼 밝혔기 문이다. 80년대에는 박종철 열사가 횃불처럼, 이제는 당신이 횃불이 되어야 할 차례이다. 전 세계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아 근데 그때 진짜요. 아 이제 횃불이 되나보다. 아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이게 힘든 게 노다지 싸우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걸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때 이미 200일이 넘었는데도, 교섭이 되던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 점점 탄압은 심해지고, 우리 조합원들 나날이 불안해하고. 그게 눈에 보였거든요? 밤에도 잠도 못자고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진짜 누가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니깐 사람이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못살겠더라고. 횃불이 될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밑을 내다보면요? 저녁 6시만 되면 와서 100배 성원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면 그 젖은 바닥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절을 해요. 부디 살아 내려오십시오. 저녁이면 미사를 보는 수녀님 신부님들. 저는 천주교 신자도 아닙니다. 크레인에 무슨 일 만 있다고 하면 비행기타고 KTX타고 날아오는 날라리들. 제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 얼굴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얼굴조차 확인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눈을 보고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8년 전 제가 당했던, 8년을 제가 당했던 고통들을 누군가한테 다시 물려줄 수는 없

아직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재능도 그렇고,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고. 저 박물관에서 만찬을 벌이는 저 인간들도 그렇고 하루하루는 빠른데 4년은 이다지도 길까요? 그지요? 아휴 난 쟤들은 지겨워 죽겠어요. 적이 무서워야 되는데 지겨워 죽겠다니까요?

겠다고 생각했었어요. 1주일을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나 죽으세요.' 한번은 트위터에 그 무슨, 그분은 지금도 운동해요. 며칠 전에 백기완 선생님 팔순에 가니까 왔더라고. 너무 뻘쭘해 하데. 뭐라고 지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냐 하면? 김진숙 동지가 5년만 더 크레인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제연대가 완성될 것 같다. 이런! 씨! 아니 이미 300일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그니깐 운동한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수단으로 생각하는거여!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간절하고 애틋하고.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아서 보냈어요. '우리 교대합시다! 그러면'(하하하하).

에필로그

아직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재능도 그렇고,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고. 저 박물관에서 만찬을 벌이는 저 인간들도 그렇고 하루하루는 빠른데 4년은 이다지도 길까요? 그지요? 아휴 난 쟤들은 지겨워 죽겠어요. 적이 무서워야 되는데 지겨워 죽겠다니까요? 그러는데,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자살을 했습니다. 이이야기를 들은 어떤 청소용역 노동자가 저한테 물어요. '정규직이 왜 죽었습니까?' 이분의 질문은 '왜 죽었습니까?' 가아니라 '정규직이?' 제가 대답했습니다. '현장통제 때문이었다고 합디다' '현장통제가 뭔데요?'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러 가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노조활동을 하다가 찍혀가지고 그걸 일일이 관리자가 통제를 했다고 합디다.' '그만한 일 가지고 사람이 죽습니까? 우린 그럼 수백 번도 더 죽었게요? 우린 그렇게 일해서 연봉 1000만원이 되는 돈으로 새끼들하고 살겠다고 아등바등 되는데, 정규직은 그만한 일에 죽습니까?' 이 처절하고 안타까운 죽음마저도, 같은 노동자인 비정규직에게 설득 되지 않는. 이미 정규직 비정규직은 삶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정규직들은요 솔직히, 여기서 그냥 막 때 되면 직책 올라가고, 봄 되면 임금 올라가고, 그것도 지들이 싸워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교섭 잘해서 올라가고! 반면에 비정규직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정규직이 되는 거에요. 그니깐 정규직들은요,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꺼 지켜야 되니까. 요즘 같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누가 비정규직과 같이 해서 싸우겠어요? 더군다나 처자식 있고 애들은 점점 커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얼마 전에 MBC노조가 파업 들어갈 때, 성명서를 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자주 보실 거예요. 보건의료 노조나, 철도나 지하

비정규직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정규직이 되는 거에요. 그니깐 정규직들은요,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꺼 지켜야 되니까. 요즘 같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누가 비정규적으로 해서 싸우겠어요? 더군다나 처자식 있고 애들은 점점 커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철 같은데 그런거 성명서부터 발표하고 파업 들어가요. 우리는 결코 임금인상을 위해서 투쟁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 민주화를 위해서, 철도의 공공성을 위해서 투쟁하지. 마치 임금인상을 위해 투쟁 하는 게 마치 죄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임단협 투쟁을 하면 그걸 제일 반대하는 세력이 누굴까요? 자본일까요? 조중동일까요?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이에요. 마치 이 계급이 적대적인 것처럼 다른 계급인 것처럼, 이렇게 까지 와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정규직 노조가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벌어지기 전에. 쌍용자동차에서는 21명이 죽었습니다. 무슨 전염병이 돌았던 것도 아니고, 연쇄살인마가 휩쓸고 간 것도 아니고. 쌍차 노동자들이 더더군다나 상처가 더 깊었던 게, 나는 공권력에 의한 상처 이런 것들도 정말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일 거예요. 거기다가 노동자들끼리 치열하게 싸우게 만들었거든요? 어느 사업장에나 그런 모순과 갈등들이 있지만, 쌍차는 특히 이게 막. 정리해고 안 당한 노동자들과 당한 노동자들끼리 싸우게 만든 거야. 형제들도 많았거든요? 쌍차는? 그 평택이 지역사회이니까? 그 뭐 과대위들 머리채 잡아가 막 패대기 친 곳도 다 그 사람들 이었거든? 다. 쌍차 노동자들은 '오 필승코리아' 이 노래만 들으면 지금도 소름이 끼친답니다. 아이들이 버스를 못타내. 그래가 아이들이 지내 아빠 지키겠다고 지금도 장난감 총칼을 차고 다닙니다. 그 이야기는 들으셨죠? 평택에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혹시 우리 반에 쌍차에서 해고된 아빠가 있냐고. 그 애들이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깐 손을 못 든 거에요. 8명이나 있었답니다. 교사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반에는 빨갱이 자식이 없네.' 걔 형님은 안 잘리고 형님은 짤린거에요. 동생이 도장 공장에서 지대로 옥쇄파업이라고 하지만 봉쇄되었던 거거든요. 나는 민주노총이 정말, 금속노조가 정말 너무너무 그때는 미웠고 원망스러웠던 게 그것을 한 번도 못 뚫었습니다. 뚫으려는 노력조차 못했어요. 그걸 한번만 뚫었으면 그들의 패배감, 그 열패감들, 그 상처들을 조금은 씻을 수 있었을 거에요 아마. 그렇게 화장실 변기 물을 받아 마시면서 그 여름에 싸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안 잘린 노동자들이 돌을 던진 거예요. '나가라! 니들이 나가야 공장이 정상화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일하고 니들도 복직할 기회가 생길 것 아니냐?' 그게 그들의 논리 이었습니다. 동생이 보니까 형님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죠. 그날 밤에 이친구가 노조간부들 앞에 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기서 나가서 새끼들 하고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형님하고 돌 던지는 짓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자기가 만든 차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죽습니다.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고등학생

저를 살아 내려오게 했던 것은 그 크레인 밑에 와서 손을 흔들어 주던 조합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아마 쌍용차 22번째 사망자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일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텨주세요. 그게 지금으로서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답답하긴 하지만, 그거라도 해야 될 때 인 것 같습니다.

아들내미, 중학생 딸내미가 있었어요. 아주 평범한, 아빠가 야간 노동 주간노동을 번갈아 한다는 것 빼곤 특별히 꿈꾸는 것도 없었고, 그저 이 불안한 시대에 이 일상이 유지되기를 꿈꾸어 왔던 아빠가 잘리면서 그게 다 깨집니다. 왜 잘렸냐? 되는지도 모르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엄마는 우울증에 걸려요. 사원 아파트에 사는데 마트를 갔다 오니까 같은 아파트 아줌마 들이 수군거립니다. '어이요, 502호는 남편이 잘렸다면서 무슨 돈으로 마트를 갔다 와?' 그이야기를 엄마가 다 듣지요. 가깝게 지내던 501호에 아파트 현관문이 닫힙니다. 그 집 남편은 안 잘렸어요. 가족들끼리도 정리되어가는 거야. 애들도 그랬어요. 우울증이 깊어진 엄마가 17층 베란다에서 투신을 하지요. 그걸 아들이 봤습니다. 엄마의 시신을 본 사춘기 아들이 어떻게 맨 정신으로 세상을 건너가겠습니까? 야도 몇 번을 자살을 기도를 해요. 겨우 정혜신 박사님이랑 이렇게 돌봐서 정신과 치료를 하지요? 이제 겨우 치유가 되나보다. 근데 아침마다 아이들 밥을 해주던 아빠가 그날 아침에 일어나질 않습니다. 흔들어 깨웠는데 아빠마저 죽었어요. 아빠는 해고자는 아니었습니다. 무급 휴직자였지. 1년 후에 복직시켜주겠다. 그 약속을 3년이 넘게 배반 당해왔던 무급 휴직자였습니다. 아빠가 세상에 남긴 것은 18,000원이 들어있었던 저금통장, 그리고 쌍용차 작업복이 곱게 다려진 채 시신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 작업복을 끝내 못 입어보고 죽었습니다. 저를 살아 내려오게 했던 것은 그 크레인 밑에 와서 손을 흔들어 주던 조합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었습니다. 아마 쌍용차 22번째 사망자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일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텨주세요. 그게 지금으로서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답답하긴 하지만, 그거라도 해야 될 때 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를 살아 내려오게 해주시고 우리 조합원들을 1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사회자 |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9시 10분차를 타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깐 내려가시는데 심심하시지 않게 트위터에 접속을 하셔서 트위터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실 테고 팔로우도 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질문을 조금 생략을 하고 이제 잠시 우리 8시 10분쯤에 출발을 하셔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했던 희망버스 타고 세상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세상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살아서 내려오게 했던 게 희망버스라고 했습니다.

야 되니까 포토타임을 갖기로 하구요. 마지막으로 우리 제가 트위터를 보고 왔는데 거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드리면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했던 희망버스 타고 세상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세상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살아서 내려오게 했던 게 희망버스라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사회가 절망적인 부분이 많아서 희망버스를 기다리는 부분이 여러 곳이 있을 텐데, 항상 타고 갈 준비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오늘 뜨거운 박수로 박수를 드리고 저희들 사진 찍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집』 - 손석춘. 들녘(2009)

정리 _**좌세준** 회원 / 녹취 _**최유라**(민변 인턴 8기)

일시 : 2012. 4. 16.(월)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참석자 : 김낭규, 김선수, 여희숙, 이승범, 좌세준, 최용근, 한택근 (가나다순)

좌세준 |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공부모임에서 읽은 책들을 쭉 돌아봤는데요, 정통 소설을 읽은 것은 오늘 공부모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등장하는 이현상을 다룬 평전을 저자 안재성씨를 모시고 읽기도 했고, 시를 다룬 책을 읽기도 했는데요. 소설을 읽는 것은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석춘씨를 신문기자나 새사연(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 이런 소설을 쓰신 작가인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시작 전에 이 책이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의문이라는 말을 하신 분이 있었지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저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는데요. 우선 이 책을 추천해주신 최용근 변호사님께서 이 책을 추천한 동기나 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방공간의 주역들, 그들은 왜 양쪽 모두로부터 버림받았는가?

최용근 | 저는 2001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이 책은 저희 과 선배가 선물로 사준 책이었습니다. 선물을 받고 바로 읽진 않고 몇 달 후에 책꽂이에 꽂혀 있는 이 책을 꺼내들고 읽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제가 밥을 굶으면 상당히 곤란을 겪는 사람인데, 이 책은 밥도 안 먹고 한 자리에서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 이 책의 이야기에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개인적으로 현대사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뭐 이건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분이 『아름다운 집』에 대한 서평을 쓰신 게 있는데, 해방공간에서 활동했던 3가지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김구 중심의 임정요인들을 포함해서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고, 둘째는 중국을 주요 무대로 활동한 항일 무장 투쟁 주역들이고, 세 번째는 나중에 남로당으로 분화되는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일제 시기 노동운동 등을 통해 자체적인 해방을 위해 싸운 세력입니다. 첫 번째 세력은 남한의 주축이 되고, 두 번째는 북한의 주축이 되었지요. 하지만 세 번째 세력은 남과 북 모두로부터 버려졌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세력에 대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재평가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 책이 바로 그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이라는 평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했던 평가였습니다.

제가 가장 눈길이 갔던 부분은 이 책의 맨 첫 문장입니다. "나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조선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책은 이진선이라고 하는 개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살로서 삶을 마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서 본 세 번째 세력이 남과 북 모두로부터 버림받았던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으로부터 하나의 위안을 얻었던 것은 이진선이 남긴 두 번째 편지(유고)에서였는데요. "아직 오지 않은 동지에게"라는 이진선의 마지막 글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아직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지 않은 우리 후대의 세대들에게 좀 더 행복하게 뜻을 펼 수 있는 활동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지 않은가? 이 책이 이진선의 자살로만 끝이 났다면 상당히 어두웠을 것 같은데, 작가가 의식적으로 두 개의 유고를 통해서 독자들이 또 다른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세준 | 이진선이라는 인물이 1920년생이고, 일기가 시작된 시점이 1938년 4월이니까, 최변호사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의 나이 정도가 되죠. 이진선이 연희전문 철학과에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꼭 60년, 60년이 지난 1998년 10월 10일에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나이로 보면 18살에서부터 78살까지

> “나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조선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책은 이진선이라고 하는 개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살로서 삶을 마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서 본 세 번째 세력이 남과 북 모두로부터 버림받았던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 이진선은 연희전문 시절 우연히 만난 윤동주와 그의 시를 보면서 ‘상당히 관념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일본에 가는 윤동주와 안타깝게 악수를 하고 바라보는 대목도 나옵니다. 윤동주를 두어 차례 만나고 산책도 하면서 윤동주가 고민했던, 동시대를 함께 한 젊은이로서 느낄 수 있었던 문제를 이진선의 독자적인 사고로 서서히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이고, 딱 60년입니다. 1938년부터 1998년까지인데, 우리나라의 현대사로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배치인 셈인데요. 이 작품 속의 주인공 이진선은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경험하면서 살았고, 소련과 중국도 유학 등을 통해 보게 되죠. 그야말로 우리 현대사를 남과 북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 이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박헌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아까 최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 세력은 도대체 왜 양쪽 모두로부터 배척을 받았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게 됩니다. 사실 남로당의 역사적 운명처럼 이 소설에 나타나 있는 주인공 이진선의 입장은 여전히 남과 북 양쪽으로부터 비난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 책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중에는 이진선, 신여린, 최진이 이렇게 3명의 주인공 말고도 역사적인 실존 인물들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윤동주부터 시작해서 박헌영, 김삼룡, 이주하, 나중에는 황장엽까지.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짤막하지만 등소평을 만나는 장면도 나오지요. 이런 장면에서는 픽션과 논픽션이 교차하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저자가 신문기자이기도 하니까 신문기사를 많이 활용한 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네이버에 가보면 옛날 신문들이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다 검색이 되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사건들이 있었던 날짜의 신문기사를 검색해보면 실제 그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과 함께 이 책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진선, 그가 꿈꾸었던 ‘아름다운 집’

김선수 | 이진선이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직면했던 문제는 허무였는데, 기독교의 교리로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유물론을 통해 답을 얻으려 했다는 선택은 우리 세대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비슷하게 느꼈던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주변에 니체에 푹 빠진 친구들도 봤던 것 같은데, 이진선이 젊은 시절에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사람들이나 철학적 계기들을 접하게 되는 장면들을 보면서는 우리 세대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좌세준 | 이진선은 연희전문 시절 우연히 만난 윤동주와 그의 시를 보면서 ‘상당히 관념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일본에 가는 윤동주와 안타깝게 악수를 하고 바라보는 대목도 나옵니다. 윤동주를 두어 차례 만나고 산책도 하면서 윤동주가 고민했던, 동시대를 함께 한 젊은이로서 느낄 수 있었던 문제를 이진선의 독자적인 사고로 서서히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진선은 젊었을 때 유물론과 함께 불교를 상당히 깊이 경험하게 되는데, 자살로 삶을 마치는 순간에 이르면 다시 만공이 입적할 때 했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그야말로 이진선은 유물론자이면서도 불교의 세계관을 함께 가지고 있던 인물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진선의 삶에 대해 이 소설이 던지는 메시지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용근 | 이진선의 삶은 전쟁으로 인해 커다란 굴곡을 겪게 되는데, 저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과 북 모두 조금은 양심적인 사람들, 중도적인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진선이 북한의 변화를 보면서 계속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개인 우상화의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쯤인가, 선배에게 물어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 동상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김일성이 살아 있을 당시부터 어떻게 동상을 세우고 우상화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게 사회주의 이상에 맞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진 존경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 이런 의문들이 계속 들었던 거죠. 반면 이진선도 잠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인물이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은 개인 우상화라는 점에서만 본다면 북한의 김일성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던 인물이었어요.

사회주의와 우상화, 사상이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상의 자유가 아닌가? 이진선도 말년의 일기 속에서 계속 던지는 의문이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더 존중하는 사회주의였다면 북한이라는 사회가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혁명’과 ‘인간’ 사이에서

김선수 | 이진선이 호치민과 주은래를 직접 보고 얼굴을 평가하는 장면도 인상적입니다. 호치민

사회주의와 우상화, 사상이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상의 자유가 아닌가? 이진선도 말년의 일기 속에서 계속 던지는 의문이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더 존중하는 사회주의였다면 북한이라는 사회가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에 대해서는 "시골영감처럼 포근한 염소수염에 큰 눈이 맑게 빛나던 호동지", "얼굴은 소탈하고 온화했다. 손질하지 않은 염소수염과 색 바랜 옷, 그리고 낡은 고무신을 신은 그의 모습은 얼핏 봉건영주들에 맞선 돈키호테를 연상시켰다.", "따뜻함과 냉철함이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한 얼굴에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주은래에 대해서는 "불굴의 투쟁과 따뜻한 사랑에 세월의 경륜까지 녹아든 얼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 모습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건데요. (웃음) 조그만 일에도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 우리들 모습인데, 혁명가로 단호하게 싸우면서도 어떻게 이런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좌세준 | 호치민은 공산주의자이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한 이상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유물론자이면서도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선도 젊었을 때 유물론과 함께 불교의 세계에 심취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만공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승범 | 맑스주의도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종교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요? 사회주의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나 독점, 숙명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대학 다닐 때 최인훈 선생의 광장을 읽었고, 최근에는 〈화두〉라는 책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사실 〈화두〉는 소설이라기보다 최인훈 개인의 자전적 에세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북쪽으로 넘어간 사회주의자들의 진정한 마음은 이데올로기를 위한 이데올로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책에서처럼 '아름다운 집'을 짓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화두〉라는 작품에서도 냉전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경로를 추적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를, 수입된 이데올로기, 수입된 혁명의 한계라는 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과 유사한 결론을 맺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좌세준 | 사실 이진선도 북한의 사회주의가 왜 그렇게 변질되었는가? 사회주의의 모국인 소련이 왜 붕괴될 수밖에 없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발전단계에 맞지 않은 '이른 혁명' 때문이라는 진단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진선은 실패한 것은 사회주의 자체는 아

이진선은 실패한 것은 사회주의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아직 오지 않은 동지에게'라는 유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세에 올 동지들이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는 '열정의 불꽃'을 다시 밝힐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니라는 것을 '아직 오지 않은 동지에게'라는 유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세에 올 동지들이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는 '열정의 불꽃'을 다시 밝힐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와 인간의 삶에 던지는 의문

김낭규 | 사실 사회주의의 변질은 북한만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사회에서 진보주의가 겪었던 경험들도 예외가 아니지요.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이 권력과 연계가 되면, 그 집단 내에서 어떤 일체의 다른 합리적인 의견이나 토론 자체가 배제되어 버리는 현상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게 많죠. 대학이라고 하는 곳도 사실은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소수라는 이유로 그냥 잘라버렸던 반대 의견들, 소수에 대한 비합리적인 배척,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자칭 진보세력 내에서도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냉철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큰 강령이나 큰 방향성에만 동의한다면 구체적인 실현의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다양성이 보장이 되어야 더 새살이 돋고 발전하는 건데, 그런 다양성이 이런 저런 논리로 깔아뭉개지는 역사를 우리는 최근까지도 목격했던 겁니다.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국가나 다른 조직, 권력과 연계가 되면 본성적으로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라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이승범 |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권력의 문제는 예컨대 〈총·균·쇠〉라는 책에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지적하는 것처럼, 유럽과 중국의 역사를 갈라놓은 계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중국은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문명과 발전을 자랑했는데, 이후 중국이 유럽에 뒤쳐진 이유는 혁신에 방해가 되지 않는 권력분점의 역사가 유럽에는 존재했던 반면, 중국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좌세준 | 권력분점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사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은 해방 이후 중도파의 몰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넘어간 사람이나 남한에 존재했던사람이나, 중도파가 생존할 수

사회주의 국가들이 가장 경계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했던 것은 다수의 독재를 의미하는 '계급'의 독재가 '1인의 독재'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진선이 북한의 1인 우상화를 비판적으로 본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있는 정치적 공간은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노선투쟁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와 같은 중도파의 몰락은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이른바 '진영논리'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해방공간의 '젊은 그들'의 선택은?

최용근 | 통상 사회주의 국가를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계급의 독재'라는 시스템이 '개인의 독재'를 제어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권력이 곧 어느 한 '개인'으로 집중되는 것이죠. 사회주의 국가들이 가장 경계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했던 것은 다수의 독재를 의미하는 '계급'의 독재가 '1인의 독재'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진선이 북한의 1인 우상화를 비판적으로 본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생각하는 것은,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소위 말하는 해방공간에 내가 살았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KBS에서 했던 〈서울 1945〉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후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당시 해방공간을 살았던 사람들의 선택을 평가할 때 굉장히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이진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가 지금 북으로 가는 것이 다시는 남으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간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진선과 같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정치·사회적인 맥락에 따른 필연적 선택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김선수 | 해방 전에 남쪽에서 활동을 했던 남로당계나 좌파들이라면 사실 모두 이진선과 같은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55년 박헌영이 처형될 때, 1960년대 후반부터 김일성에 대한 1인 숭배가 본격화할 때, 김정일이 등장할 때, 이진선의 일기 속에 나오는 생각들을 따라가 보면, 우선 이진선은 젊었을 때부터 자기 생을 바쳐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인데, 김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신뢰를 버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생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사회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신념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가 김정일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진선의 신념이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박헌영이 처형당할 당시

이진선의 일기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은 "개인주의를 거치지 않은 사회주의는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지적입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왕조가 몰락한 이후에 일제 식민지를 거쳤고 해방 후에도 자유주의나 개인주의를 경험할 시간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북한이 곧바로 사회주의로 가버린 것이 북한이 전체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운명이었음을 이진선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진선의 나이는 35세 정도인데, 이진선은 이후 약 40년 넘게 김일성 우상화, 김정일로의 권력 세습,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지켜보잖아요. 과연 이진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북한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이진선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합니다.

좌세준 | 그나마 이 소설 속에서는 박헌영과 남로당 계열에 대한 처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이진선은 소련으로 유학을 가는 것으로 해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이진선으로 하여금 이후 북한 현대사의 변화를 목격하게 하려는 작가 손석춘의 인물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책에서 황장엽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진선은 젊었을 때 만났던 황장엽의 모습과 이후 북한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황장엽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본 황장엽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감을 가졌던 반면, 이후 이진선은 황장엽의 북한에서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황장엽이 항일운동도 안했고 '해방전쟁'에도 참석을 안했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관념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한으로 '도주'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북한 현대사의 또 하나의 비극적인 인물에 대한 이진선의 묘사는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진선의 일기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은 "개인주의를 거치지 않은 사회주의는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지적입니다. 이진선은 북한의 조선로동당 창건 행사에서 5만 명의 청소년들이 벌이는 대집단 체조를 보면서 위와 같은 일기를 적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왕조가 몰락한 이후에 일제 식민지를 거쳤고 해방 후에도 자유주의나 개인주의를 경험할 시간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곧바로 사회주의로 가버린 것이 북한이 전체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운명이었음을 이진선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휴머니즘, 그 두 물길이 만나는 곳

김선수 | 이진선의 인간적인 면이 가장 잘 느껴지는 부분은 최진이의 아들 두산이가 굶주리는 것

결국 이진선의 오랜 갈등이 자살을 통한 삶의 마감이라는 결론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진선이라는 인물은 우리 현대사 중 한쪽인 북한의 역사 속에서, 아니 어쩌면 남과 북 모두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하나의 전형적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을 보고 '70이 넘은 내가 어린 것들 먹을 것을 축내면서 더 살아간다는 것은 죄악이 아닐까'라는 반문을 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 대목부터 이진선은 자신의 삶을 마감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좌세준 | 결국 이진선의 오랜 갈등이 자살을 통한 삶의 마감이라는 결론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진선이라는 인물은 우리 현대사 중 한쪽인 북한의 역사 속에서, 아니 어쩌면 남과 북 모두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하나의 전형적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용근 | 좌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좀 생뚱맞은 생각일수도 있는데,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다면 '이진선 역으로 어떤 배우가 적격일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진선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과감히 싸워 나가는 인물이고, 지식인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지나치게 회의적 성격의 인물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내가 감독의 입장이 되어 이진선의 배역으로 캐스팅을 고민한다면 어떤 배우가 좋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좌세준 | 이진선뿐만 아니라 최진이는 어떤 배우가 좋을까요. 또 박헌영 역으로는 어떤 배우가 떠오르십니까. 이 소설은 상당히 드라마틱한데 영화로 만들더라도 히트작이 되지 않을까요.

여희숙 |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아무래도 제가 여자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게 〈여자전〉이라는 책이예요. 한국 현대사를 살아온 여성들의 삶의 궤적을 인터뷰 형식으로 받아서 정리한 책인데요. 저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일제 때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참담한 시간들을 겪고 돌아온 여성이 남자를 만나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 삶을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만난 남자가 공산주의자였던 거예요. 이 여성이 그야말로 그 남성을 만나 새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남성이 진정한 공산주의자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인가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는 대목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 여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남자가 공산주의자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일 수 있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은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일 수 있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자본의 논리 때문에 희생되는 약자들을 보면서 이 책에 나오는 신여린이나 최진이, 이진선이 꿈꾸었던 좋은 세상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앞서 이 책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책을 읽으면서도 유심히 보는 부분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같은 여성의 입장이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신혼 초에 신여린이 이진선에게 이렇게 묻는 대목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 "저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왜 모두가 고루 잘살자는데 그걸 싫다고 할까요.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들을 청산하자는데, 왜 그걸 반대할까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자신들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인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여린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여성들은 나름대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시대적 상황이나 개인적인 형편 때문에 묻혀버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를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자본의 논리 때문에 희생되는 약자들을 보면서 이 책에 나오는 신여린이나 최진이, 이진선이 꿈꾸었던 좋은 세상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좌세준 | 방금 말씀하신 대목은 '편집자의 군말2'라는 부분에서 인용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 속의 '나'는 바로 아까 여희숙 대표님이 읽어주신 대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그랬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사랑'이었다. 이진선과 신여린, 해방공간의 맑은 젊은이들에게 혁명은 사랑의 방법이었다."

이진선이 보다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던 연희전문 철학과 교수로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갈등할 때 신여린이 이진선에게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작품 속의 '나'이자 저자인 손석춘은 이진선이 사회주의자로서 갈 수밖에 없었던 길과 이진선이 걸을 수 없었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 땅의 역사가 갈 수 있었던 길과, 걸을 수 없었던 길"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벌써 9시가 넘었는데요. 오늘 읽은 책은 상당히 울림이 많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된다면 민변 월례회나 우리 공부모임에 이 책의 저자인 손석춘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및 논평]

종 류	제 목	날 짜
보도자료	변호사 164명,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요청 연명 청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2012-05-01
의견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한 의견서	2012-05-01
취재요청	쌍용차 희생자 추모 및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가단체 기자회견 등	2012-05-02
취재요청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관련 국가배상 청구소송 선고	2012-05-03
공동기자회견	'KTX 민영화 반대 전문가 선언' 기자회견문	2012-05-06
의견서	제주해군기지의 무역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서	2012-05-07
취재요청	'2012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출판과 보고대회 개최_2012. 5.15. 16시/국회 의원회관	2012-05-14
공동보도자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정부-인권시민사회 1차 간담회 개최	2012-05-23
논평	전례 없는 검찰의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검찰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법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2-05-22
공동성명	골든브릿지 사용자는 불법적인 노조탄압을 중지하고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2-05-22
논평	비전향장기수 추모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2012-05-24
논평	일제 강점기 중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12-05-25
공동보도자료	쌍용차 청문회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12-05-31
성명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외면한 대법관 제청을 규탄한다	2012-06-06
성명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법원의 태도를 규탄한다!	2012-06-07
성명	미국은 한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철회하라.	2012-06-08
보도자료	(주)양평환경 소속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양평군청에 송부.	2012-06-08
성명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출방식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2012-06-12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시사쟁점에 대한 민변의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입장, 민변의 활동,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http://www.minbyun.org에서 구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료 : 1년 6회 발행 30,000원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화 문의 : 02-522-7284
메일 문의 : admin@minbyun.or.kr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행일 2012년 6월 22일 **발행인** 장주영 **편집인** 채영호 **편집위원회** 김영준 · 좌세준 · 이재정 · 이지연 · 최현오 · 유신혜 · 장수진 · 소환욱 · 김가람 · 최유라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트위터** @minbyun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byunkorea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값 5,000원 **디자인 · 편집 · 인쇄** 조양애드컴 02-739-9957